우즈베키스탄

정보수정일자: 2011. 04. 08

작성처: 타슈켄트 KBC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국가개요 / 1
정치사회동향 / 2
한국과의 주요이슈 / 9

II. 경제

경제동향 및 전망 / 12
주요 산업 동향 / 16

III. 무역

1. 교역동향
수출입 동향 / 19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 21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수입규제제도 / 23
대한수입규제동향 / 25
관세제도 / 25
주요인증제도 /25
지적재산권 / 26
통관운송 /27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투자환경 / 30
외국기업 투자동향 / 32
우리기업 투자동향 / 33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주요 투자법 내용 / 34
진출형태별 절차 / 38
투자입지여건 / 44

3. 사업관리
노무관리 / 47
조세제도 / 4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 55

V. Business 참고정보

시장특성 / 58
물가정보 / 59
바이어발굴 / 60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 60
이주정착 가이드 / 62
출장가이드 / 71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 86
유관기관 웹사이트 / 87

KOTRA 99개 KBC에서 전하는 Global 정보 실시간 제공 서비스

KOTRA InfoPass 안내

'InfoPass'란? 정보(Information)와 자유이용(Pass)을 결합한 KOTRA 정보 자유이용 서비스로 KOTRA 국가정보의 온 · 오프라인 이용 뿐만 아니라 KOTRA 발간하는 모든 유 · 무료자료를 실시간 받아보실 수 있는 VIP 정보서비스입니다.

1. 국가정보 서비스 (전세계 136개국)

- KOTRA 주재 71개국 및 비주재 관할 65개국 국가정보의 이용 ID부여
  * 비주재국 관할 65개국 국가정보 InfoPass 고객에게 **최초공개**
- 국가정보 (71개국) 전질 인쇄본 무료 제공 (150만원 상당)

2. KOTRA 발간 유 · 무료자료 무료 배송 서비스

- 서비스 이용기간내 발간하는 모든 KOTRA 자료 실시간 배송
  * '09 유 · 무료 자료 (약 180여권) : [유료단행본] '2010 블루슈머', '중국유통지도' 등 21권 / [무료자료] '한-EU FTA 10대 수출유망상품' 등 163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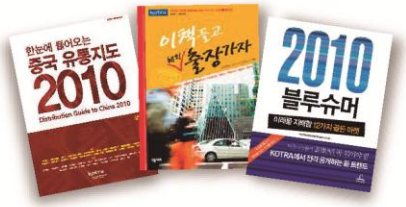

판매가격(VAT 포함)	대상
500만원/年	대기업, 지자체, 연구소, 대학, 유관기관(협회 등)
250만원/年	개인 및 중소기업

*InfoPass ID는 기관내 공유 가능하나 동시접속은 불가 (ID추가시 20% 적용)

✔ 가입방법 : www.globalwindow.org 내
InfoPass 가입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E-mail 송부
✔ 담당자 : KOTRA 구미팀 정은정, 김한나 대리
✔ Tel : 02)3460-7319, 7322 / Fax : 02)3460-7924
✔ E-mail : cocoej@kotra.or.kr (정은정)
hanna@kotra.or.kr (김한나)

kot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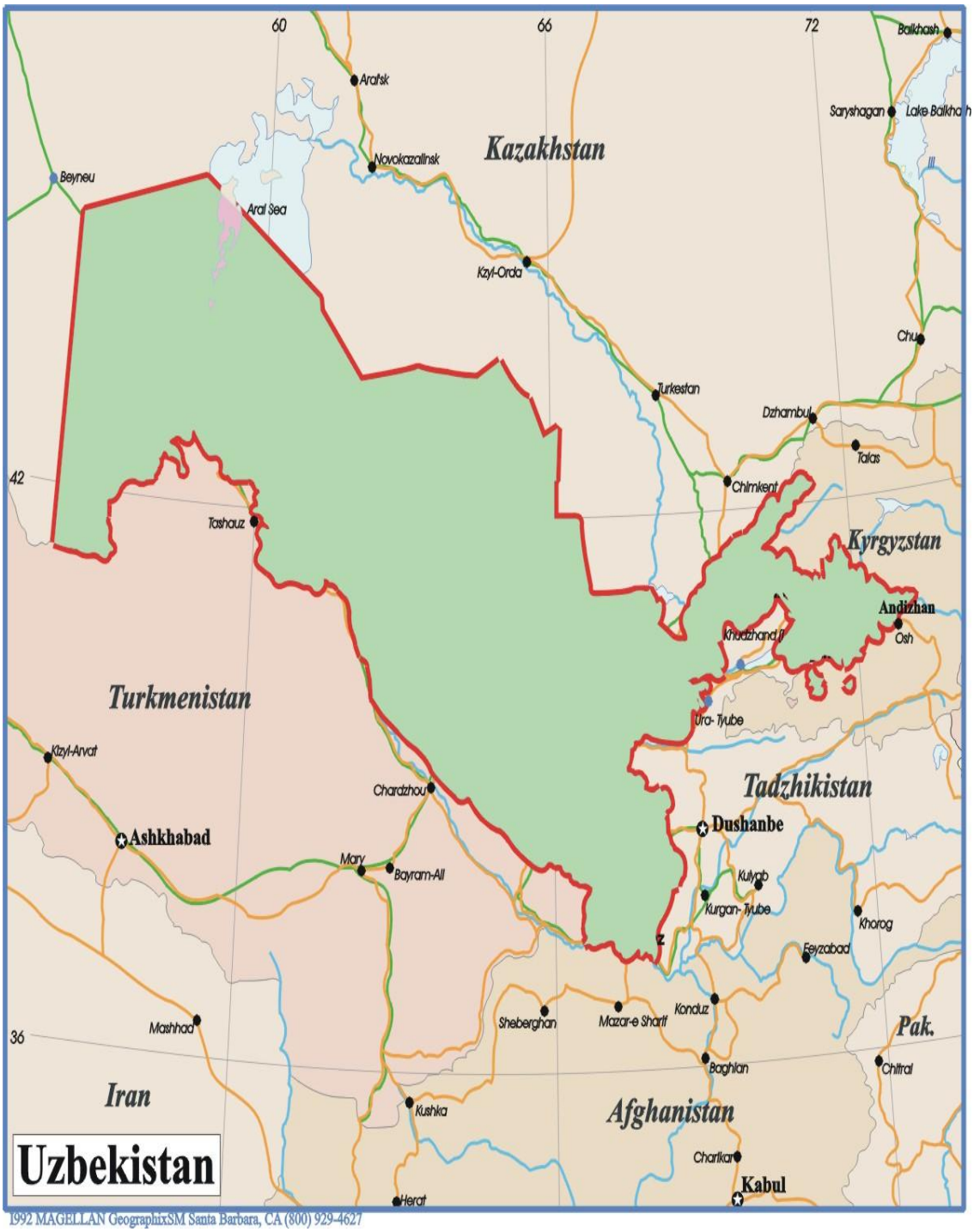
60
66
72
42
36
Aralsk
Novokazalinsk
Kazakhstan
Beyneu
Aral Sea
Kzyl-Orda
Balkhash
Saryshagan
Lake Balkhash
Chu
Turkestan
Dzhambul
Talas
Chimkent
Tashauz
Kyrgyzstan
Andizhan
Osh
Khudzhand
Ura- Tyube
Turkmenistan
Kizyl-Arvat
Chardzhou
Tadzhikistan
Dushanbe
Ashkhabad
Mary
Bayram-Ali
Kulyab
Kurgan- Tyube
Khorog
Feyzabad
Konduz
Sheberghan
Mazar-e Sharif
Pak.
Mashhad
Baghlan
Chitral
Iran
Kushka
Afghanistan
Uzbekistan
Charikar
Kabul
Herat
1992 MAGELLAN GeographixSM Santa Barbara, CA (800) 929-4627

Ⅰ.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 명	우즈베키스탄 (Republic of Uzbekistan)
위 치	중앙아시아
면 적	447,400㎢ (한반도의 약 2배)
기 후	고온건조한 사막성기후
수 도	타슈켄트 (Tashkent)
인 구	2,850만 명('10년)
주요도시	Tashkent(250만 명), Samarqand(39만 명), Bukhara(23만 명), Fergana (20만 명)
민 족	우즈벡인(71.0%), 러시아인(9%), 고려인(0.6%), 기타(19%)
언 어	우즈벡어, 러시아어
종 교	수니파 이슬람교(70%), 시아파 이슬람교(20%), 그리스 정교(9%)
건국(독립)일	1991.9.1 (러시아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임기 7년)
국가원수(실권자)	Islam Karimov 대통령
입 법 부	양원제(상원100석, 하원150석)
정 당	여당 (People's Democratic Party) 야당 (Adolad), 야당(Batan Tarakiyoti)
정부성향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실리외교

나. 경제지표('10년 기준)

GDP	US$ 374억 (2010년)
실질경제 성장률	8.5% (2010년)
1인당 GDP	US$ 1,327 (2010년)
실 업 율	0.2% (2010년)
소비자물가상승률	7.3% (2010년)
화폐단위	Sum
환 율	1 US$=1,670sum (2011.3월기준)
외 채	약 US$90억 (2010년)
외환보유고	US$105억 (2010년, 금 보유고 제외)
산업구조	농림업(17.5%), 제조업(24.0%), 서비스(49.0%)
교역규모	○ 수출(US$ 130.4억) (2010년) ○ 수입(US$ 87.9억)
교역품	○ 수출 (면화, 금, 가스, 농산물, 자동차) ○ 수입 (기계장비, 식료품, 화학제품)

다. 한-우즈베키스탄 관계

체결협정	무역협정('92) 투자보장협정('92) 과학기술협력협정('92) 항공협정('94) 이중과세방지협정('97) 세관분야 공조협정('99) 범죄인 인도조약'(04) 형사사법 공조조약('04) 사회보장협정('06) 외교관 여권사증 면제협정('09)
교역규모	○ 우리나라의 대 우즈벡 수출('10년): 14억4천 만불 ○ 우리나라의 대 우즈벡 수입('10년): 2천2백 만불
교 역 품	○ 우리나라의 수출품목: 자동차, 전자부품, 승용차, 냉연강판, 건설중장비 ○ 우리나라의 수입품목: 면화, 우라늄
투자교류	우리나라 대 우즈벡 투자(2010년 투자누계): 157건 5억3,725만불
교 민	약 2000명

2. 정치 사회 동향

가. 대통령 재선과 정국구도

1)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 재선배경

카리모프 대통령은 독립 이후 헌법 개정 등을 통해 권위주의적 통치기반을 강화해왔다. 구소련 당시인 1990년 3월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공산당 제1서기는 공산당 최고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데 이어 1991년 12월 대선에서 86%를 득표, 최초로 5년 임기의 민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후 1995년 3월 개헌국민투표를 통해 1996년 12월 만료 예정이던 자신의 임기를 2000년까지 연장(지지율 99.6%)한 후 2000년 1월 대선에서 필적할 만한 야권후보가 없어 91.9% 득표로 재선에 성공하였다.

재선 후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및 양원제 의회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국민투표를 2002년 1월에 실시 하여 93%의 지지율로 2007년 12월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2007년 12월에 실시된 대선에서 88%의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 키르기스스탄 등 구 소련권 국가들의 시민혁명 도미노를 차단하기 위해 자국내 반정부세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5월 발생한 안디잔 사태로 국내정치의 위기가 고조되고 국제적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언론 통제와 이슬람 반정부 세력, NGO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우즈벡의 대표적인 지방 씨족의 양대 세력인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 출신 정치인들을 공직에서 해임시키는 방식으로 지방세력 약화정책을 펴왔으며 고위공직의 철저한 교체를 통해 어느 누구도 한 자리에 오래 머물며 자신의 세력 구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견제를 통한 통치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 안디잔 사태

2005년 2월 안디잔 시당국이 사업가 23명을 체포한 것이 발단이 되어 12일 항의시위가 발생, 항의자들이 관공서와 경찰서를 습격하여 30명을 볼모로 잡게 되고 이를 진입하기 위해

출두한 군인의 발포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상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시위는 타지역으로 확산되고 14일에는 안디잔에서 동쪽으로 50km 떨어진 페르가나계곡의 카라수 마을에서 시위대가 경찰서와 세무서, 검찰청사 등 관공서를 습격, 방화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이들 시위는 이후 모두 진압되었지만 진압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살해되었고 정부의 공식발표로는 176명이지만 더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은 체포한 사업가 23명이 아크라미야라는 이슬람 이단조직의 멤버들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아크라미야는 안디잔의 수학교사 아크라미욘 욜도셰프가 1992년 이슬람 샤리아 (성법)로의 복귀를 주장하며 '이슬람 성도'라는 책자를 펴낸 것을 계기로 결성된 조직이다. 책자는 카리모프 대통령의 친미독재정권에 불만을 품고있던 사람들에게 큰 호소력을 가졌고 이에힘입어 그를 따르는 아크라미야라는 조직이 생겨난 것이다. 이슬람 세력이 카리모프 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대세력이 된 요인으로는 카리모프가 일관되게 정치의 탈이슬람화를 추진한것과 2001년 미국의 대 아프가니스탄 공격에 관한 협력 등을 들 수 있다.

2) 정국구도

1994년 12월 실시된 총선에서 여당인 '인민민주당'(공산당 후신)이 전체 250석 중 205석을 확보, 카리모프 대통령의 친위여당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 권한 확대 및 전문화 강화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개헌국민투표(2002년 1월)에서 차기 총선(2004년 12월) 이후부터 의회를 상원100석, 하원120석인 양원제로 전환키로 확정하였다. 2004년 양원제 도입 이후 처음 실시된 총선거에서 야당후보의 실질적 참여 금지, 반정부 언론 탄압, 국제적인 NGO 재등록 거부 등의 다양한 불공정 선거활동을 통해 친 카리모프계 정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2009년 12월 총선에서 하원 135석 모두 여당인 인민민주당(LDPU)과 친정부 정당 후보들이 당선되었으며 실질적인 야당은 의회진출에 실패하였다.

나. 2011년 정세 전망

카리모프 대통령은 권위주의 통치방식과 비민주적 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비난 무마에 주력하고 있으며 권력의 중앙 집중화는 더욱 강화하고 있다. 2009년 11월, 투옥 중이던 야당 지도부 인사 우마로프(S.Umarov)를 석방하여 우즈벡 정부의 인권 개선 노력을 보는 듯 했으나, 그 밖에 별다른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는다.

그러나 카리모프 대통령의 건강 및 차기 권력 후계구도의 문제가 정세변동을 가늠할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카리모프 대통령이 고령인 탓에, 대통령의 건강악화설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후계자가 불투명해, 그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발생할 가능성 있다. 유력한 후계자 후보로 그의 딸인 카리모바(G. Karimova), 현 제네바 UN본부 우즈벡 대표가 거론되고 있으나 부녀간의 대통령직 세습이 이루어질 경우 정치 엘리트층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서방과 우즈벡간 관계에 있어 핵심 현안 중 하나인 인권문제와 관련해 사형제 폐지, 옴부즈맨 제도, 아동노동력 착취금지 법안의 발효, 2008년 '젊은이의 해'지정 등 우즈벡내 시민사회의 성숙 및 독자적인 형태의 민주주의 달성을 우즈벡 정부는 높이 평가하나 비민주적 정책 및 권위주의 통치방식과 관련 우즈벡 극소수 인권운동가 및 서방언론, 인권단체는 여전히 정치적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2009년 우즈벡 정부는 상대적 빈곤층인 농촌지역의 의료, 식수, 인프라 개선을 위해 '농어촌개방 및 현대화의 해'로 선포하여 빈곤층 증가, 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우즈벡 정부는 2010년을 '세대 균형발전의 해'로 지정하여, 정부정책 방향으로 가족의 화합도모,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 교육 여건 및 보건 시스템 개선, IT분야의 교육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현 카리모프 대통령의 임기는 2014년까지로, 집권 말까지 현재의 중앙집권적 권력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카리모프 대통령에게 대적할만한 야당세력은 전무한 상태이며, 정권교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국정전반에 걸친 대통령의 영향력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카리모프 대통령의 72세 고령으로 인한 건강 및 후계자에 대한 문제만 정치안정성을 위협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05년 이후 소원하였던 미국과 EU의 외교관계가 반테러에 대한 협조, 인권 보장 수준을 높이려는 우즈벡 정부의 의지, 유럽 몇몇 국가들의 러시아의 가스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새로운 가스공급처 모색 등의 이유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2009년부터 우즈벡 영토를 경유해 아프가니스탄으로 군수물자를 조달하고 있어, 긴밀한 협력 관계가 중요해 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11년도에도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4월 카리모프 대통령은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했으며, 최근 몇 년간 우호적으로 유지해온 러시아와의 관계가 2011년에도 변함없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키르기즈스탄과 민족분규 및 인접국 아프가니스탄의 정세 등이 잠재 위험요소로 꼽히며, 상황을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의견을 모으고 있다.

다. 국무총리 및 부총리, 내각부처 장관

○ 국무총리 및 부총리
- Prime Minister: Mirziyoyev Shavkat Miromonovich
- First deputy Prime Minister: Azimov Rustam Sadikovich

○ 중앙정부 소속 내각부처 장관

기 관	성 명
경제부	Gulyamov Ravshan Ayupovich
재정부	Azimov Rustam Sadikovich
농림수자원부	Ruziev Zafar Sharopovich
노동사회부	Khaitov Aktam Akhmatovich
고등교육부	Khodiev Bakhodir Yunusovich
교육부	Marakhimov Avazjon Rahimovich
보건부	Ikramov Adkham Ilkhamovich
내무부	Matlyubov Bakhodir Ahmedovich
국방부	Berdiev Kabul Raimovich
비상사태대책부	Khudayberganov Tursinkhon Aydarovich
외교부	Ganiev Elyor Majidovich
대외경제투자부	Saidova Galina Karimova
법무부	Mukhitdinov Ravshan Abdulatifovich
문화체육부	장관대행- 문화부 : Saifullaev Vakhtiyor Saifullaevich 장관대행- 체육부 : Akramov Jasur Anvarovich

라. 행정구역

1개의 특별시, 12개의 주, 1개의 자치공화국으로 이루어져있다.

1개 특별시	수도 타슈켄트
12개 주 (Viloyat)	일반광역자치단체 -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페르가나, 나망간, 부하라, 안디잔, 지작, 시르다리야, 카쉬카다리야, 수르한다리야, 나보이, 호레즘
1개 자치공화국 (Respublic)	카라칼팍 자치공화국 (카라칼팍인 32.1%) 대규모 소수민족 집단에게 부여한 자치단체로 독자적인 헌법과 법률을 보유함.

행정구역	면적(Km)	인구(만명)	중심도시
카라칼팍 자치 공화국	166.000	162	누쿠스
나보이 주	110,900	85	나보이
호레즘 주	6,100	155	우르겐치
부하라 주	40,320	160	부하라
사마르칸트 주	16,800	309	사마르칸트
지작 주	21,200	111	지작
카쉬카다리야 주	28,600	259	카르쉬
시르다리야 주	4,280	71	굴리스탄
수르한다리야 주	20,100	205	테르메즈
타슈켄트 특별시, 주	15,200	479	타슈켄트
나망간 주	7,400	224	나망간
안디잔 주	4,300	252	안디잔
페르가나 주	6,800	305	페르가나

자료: 우즈벡 통계청 (2009년)

마. 서방과의 관계

1) 러시아와의 관계

소련해체 이후 러시아의 영향력을 벗어나고자 탈 러시아를 꾀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러시아와의 정치, 경제적 관계를 완전히 털어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2004년 '우즈벡-러시아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러시아가 참여하고 있는 SCO CSTO, EurAsEC 등에 가입하여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적극 대처 및 협력해왔다.

독립이후 기대했던 원조대신 미국과 IMF, EBRD 등 서방의 정치, 경제 개혁압박에 대한 반작용으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2011년 러시아 대표적 자원그룹인 루코일은 우즈벡 부하라, 우스튜르트 지역의 가스광구 개발, 탐사 및 관련 시설 건설에 2억 2610만 달러를, 가스프롬은 47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우즈벡의 EurAsEC 잠정탈퇴 및 CIS 비공식 정상회의 불참사례로 보아 대러 관계는 점차 하강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으나,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우즈벡 방문(2009.1.22)을 계기로 각종 경제협력 사항 등을 논의하는 등 양자간 레벨에서의 관계는 원활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2) 미국과의 관계

미국은 우즈벡에 대해 원조 및 국제 금융기구의 경제지원조건으로 정치, 경제 개혁 및 인권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우즈벡의 민주화 부진으로 인해 지원규모를 대폭 감축 시켰다. 안디잔 사태 이후 민주화와 인권 문제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고 2005.11 우즈벡 하나바드 미군 공군기지를 폐쇄하였다.

그러나 아프간전 등 우즈벡의 대 테러전 협력, 인권문제에 대한 점진적인 개선 조치와 2008.10 EU 대외관계이사회의 우즈벡에 대한 제재조치 일부 해제 효과 등으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점차 개선되어가고 있으며, 2009년 12월 시작된 우-미 간 장관급 회담에 이어 최근 2011년 2월 미국무성 남중앙아차관보와 미국 대표 기업인단의 우즈벡 방문 등 정치, 경제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3) 유럽과의 관계

2005년 안디잔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거부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책임의 대가로 유럽 연합은 무기 금수 및 고위관료에 대한 비자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시행했었으나, 현재 모든 제재는 해지되었으며 반 테러리스트공조, 지역안보의제, 인권문제 개선 노력, EU의 러시아를 대신할 에너지 공급처 확보 등의 이유로 우즈벡과 EU와의 관계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 개선의 보다 중요한 배경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다.

그동안 유럽연합과 우즈베키스탄의 완전한 회복을 강력히 종용해온 독일의 경우 아프가니스탄 북부 아무다리야에 4,500명의 군대를 파견한 상태로 이에 대한 공수 시설을 상당 부분 우즈베키스탄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테르메스 공항은 독일이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이 맞닿아 있는 국경은 상대적으로 짧으나, 이는 서방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진입하는 가장 편리한 지점이다. 2011년 3월에는 유럽안보협력기구 대표단이 타슈켄트를 방문, 우즈벡 대통령과 회동하였다

4) 중국과의 관계

2004.6 우즈벡-중국 정상회담 계기로 '동반-우호 협력관계 증진 선언'에 이어 안디잔 사태이후 카리모프 대통령 방중시 (05.5) 중국,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입장 지지 및 우즈벡 국내문제 불간섭, 양국간 군사협력 강화 및 경제문화 등 실질협력 증대, 우즈벡내 가스, 원유 개발 참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우호협력 동반자관계 협정' 체결로 양국관계는 격상되었다.

또한 우즈벡은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으로서, 중국과 상호교류협력관계 증진에 주력하고 있다. 2010년 6월 타슈켄트에서 개최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차,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타슈켄트를 방문했으며, 방문 기간 동안 우즈베키스탄 국영 가스업체인 우즈베크네프테가즈(Uzbekneftegaz)와 중국석유공사(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CNPC)가 천연가스 공급에 관한 기본협정을 맺었다.

협정에 따라 우즈베키 스탄은 중국-우즈베키스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매년 약 10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중국에 공급하게 되었다. 동 파이프라인은 중국이 건설한 중국-

중앙아시아 가스 파이프 라인의 일부분이며, 2009년말 투르크메니스탄 가스를 우즈벡과 카자흐를 경유하여 중국으로 수송 하는 Central Asia-China 가스 Pipeline 프로젝트가 완료되었다.

5) 일본과의 관계

일본은 우즈베키스탄 최대 유.무상 원조국이다. 1995년 이후 총 16억불을 지원했으며 2004.8 카쉬가르-쿨쿠르간 철도부설 사업관련 우즈벡-일본간 1.5억불 규모의 차관 제공 각서를 체결하였다. 2006.8.28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역대 일본 총리 중 처음으로 우즈벡을 방문해 카리모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동북아 및 중앙아 정세, UN안보리개혁문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공조 및 경제통상 증진, 에너지 개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양국간 공통 관심사에 대해 협의하였다.

2010년 3월 11일, 일본정부와 우즈벡 정부 사이 무상원조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일본정부는 페르간 주, 호레즘 주, 그리고 카라칼팍 공화국 6개 지역의 급수설비 보수 및 건설, 식수 확보, 관개부수시설 정비를 위하여 58만 9500달러를 지원하게 되었다.

2011년 2월 카리모프 대통령은 일본을 공식 방문, 칸 나오토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에너지 개발 협력에 관한 다수의 MOU가 채결되었고 우즈벡은 2021년 까지 연간 500~1.000톤의 우라늄을 일본에 공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는 '타쉬구잘-쿰쿠르간' 철도 건설(2004년) 사업의 추가로 '카르쉬-테르미즈' 철도 전철화 사업에 1,249억엔 규모의 ODA차관을 지원하기로함에 따라 기존 철도의 운송량, 속도 등이 증가되며 대아프간 군수 물자 운송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6) 주변국과의 관계

우즈베키스탄은 북쪽으로 카자흐스탄, 동쪽으로 키르기즈스탄, 남쪽으로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칸,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현재의 중앙아시아 국경선은 구 소련시절 스탈린 통치하에 임의적으로 나눠진 것이다. 민족등을 고려하지 않고 나눠진 까닭에, 현재 각 국가에는 서로 다른 민족이 공존하게 되었다.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부하라 지역에는 타직계 민족이, 카라칼팍 지역에는 투르크계 민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반대로 인접국 키르기즈스탄의 인구 15%가 우즈벡계 민족이다. 우즈벡계 민족은 키르기즈스탄 내 최대 소수민족이며, 키르기즈스탄의 남부 오시(Osh)시에 거주하고 있는 우즈벡계 민족은 오시(Osh) 시의 절반이 넘는다. 이러한 이유로 크고 작은 민족분쟁이 적지 않으며, 키르기즈스탄과의 국경선 재구획 논의도 있어 왔다.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즈스탄 국경선 길이는 총 1,375km이며, 분쟁의 소지가 있는 구간은 300km 정도다. 2010년 6월에는 키르기즈스탄 내의 유혈민족분쟁을 피해 우즈벡계 주민들 약 7만 여명이 키르기즈스탄을 떠나 우즈베키스탄 국경을 넘었다.

타지키스탄과는 가스공급 및 철도 운송에 관련된 다툼이 지속되고 있다. 타지키스탄은 국내 가스 소비량의 98%를 우즈벡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데, 우즈벡이 2010년 초 가스대금 지불 지연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가스 공급량을 절반으로 감축해 양국간 갈등이 생겨났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타지키스탄은 댐 건설을 통한 수력발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댐 건설이 가시화될 경우 면화 재배에 필요한 용수 공급을 상당 부분 타지키스탄에 의존하고 있는 우즈벡의 면화 산업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우즈베키스탄은 2009년 가을 타지키스탄으로 향하는 철도를 일시적으로 봉쇄하여 2010년 초 봉쇄를

해제했다. 타지키스탄은 우즈베키스탄이 연료와 건축자재 및 기타 물품을 싣고 타지키스탄으로 향하는 철도차량의 수송을 고의적으로 막고 있다고 주장해 온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단지 기술적 문제로 억류하는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해 왔다. 우즈베키스탄 영토에서 억류되었던 타지키스탄 철도차량은 1,157량이며, 철도수송 중단으로 인한 손해금액은 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바. CIS 중앙아 주요 협력기구 참여 현황

명칭	내용
상하이 협력기구 SCO	- 1996.4 러·중·카·키·타 5개국 국경지역안보를 위한 '상하이 5국' 창설 합의 - 2001.6 '상하이5국' 5주년기념 정상회동에 카리모프 대통령이 회원국 자격으로 참여, '상하이협력기구 설립선언' 공동 발표 - 2004.6 타슈켄트 정상회의에서 반테러 지역기구 집행위원회 설치 (회원국: 우·카·키·타·중·러) - 2006.6 전략적 안정강화, WMD확산방지, 국제법 질서수호 및 실현 - 2007.10 키르기스스탄에서 정상회의 개최('비슈켁 선언', '선린 우호 협력조약', '공동성명' 등에 서명 및 대테러협력, 에너지분야 협력 강화, 경제문화 교육보건 분야 협력 등 논의) - 2008.8 타직스탄 두샨베에서 정상회의개최. 무기탄약폭발물 거래 방지 협정, 유라시아개발은행과 SCO금융협회간 협력 협정에 서명. - 2010.6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정상회의 개최. 신규 회원국 정회원 가입 규정, 범죄예방 협정 및 농업분야에서 협력 협정등에 서명.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사태 및 역내의 안보와 조직 내부 문제 논의.
중앙아 협력기구 CACO	- 1998.7 타직스탄이 카·키·우의 경제통합 조약에 가입. (상품, 서비스, 자본 등의 자유로운 이동 등 제반 경제정책 조율 및 아랄해 등 수자원 공동관리, 에너지 협력강화) - 2004.10 러시아 가입. 총5개 회원국이 경제통합 외 국제테러, 마약밀매, 이슬람근본주의 세력에 대한 대응 등 지역 안보 역할도 공동 추구. - 2005.10 CACO를 유라시아 경제공동체에 통합 시키기로 결정.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EurAsEC	- 2000.10 벨라루시아·카작·키르·러·타직스탄 5개국이 설립한 국제협력기구. (회원국간 무비자 자유이동 보장, 대학 상호입학 가능성 확보 및 학위 상호인증 등의 성과 거둠) - 2006.1.25 우즈벡 정식 회원국 가입 - 2008.10 러-카-벨 간 관세동맹에 대한 경계심 등을 이유로 임시 탈퇴하겠다는 서류 제출.
집단안보 조약 CSTO	- 2002 CIS 회원국(러·카작·벨라·아르메니아·키르·타직)안보 확보 를 위해 기구 설립(테러, 마약, 조직범죄 공동대처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군사기지 제공의무)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 CICA	- 1992.7 헬싱키'유럽안보협력회의'에서 카작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제의로 2002.6 제1차 정상회의(알마티)개최 - 2004.10 외교장관 회담 개최: 지역평화 및 안보 이외에 경제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강화와 문화유산 보존 등에 관해 협의 - 2006.6 한국 CICA 정회원국 가입 - 2008.8 제3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 외교장관 회의 참석 - 회원국: 한국, 카자흐, 우즈벡, 아프간, 아제르바이잔, 이란, 이스 라엘, 이집트, 인도, 중국, 몽골, 키르기스, 타직, 러시아, 터키,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태국
구암 GUAM	- 1997.10 유럽이사회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배제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그루지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대통령간 합의로 창설 (주권독립보장, 영토보전, 민주주의 및 법치, 인권보장 추구선언) - 1999.4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워싱턴 정상회의에 참석해 GUUAM으로 기구확대 - 2005.12 우즈벡 대통령 카리모프의 구암 공식적인 탈퇴 통보로 다시 GUAM으로 축소, 2006.3.10 최종 탈퇴

3. 한국과의 주요 이슈

가. 한국과의 관계 내력

92년 1월 국교 수립 후 양국간 관계는 우호협력 기조를 유지 발전시켜 왔다. 93년 12월 주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이 개설되었고, 95년 12월 서울에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이 개설되었다. 2005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2006.3월 카리모프 대통령의 방한, 2009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우 2010년 2월 카리모프 대통령의 방한 등 7차례 정상 회담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상호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고위 인사교류 실적

1992.6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1994	김영삼 대통령 방우
1995.2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1997.4	할릴로프 국회의장 방한
1999.8	아지모프 재무장관 방한
1999.10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2000.6	김용준 헌법 재판소장 방우
2000. 9	최종영 대법원장 방우
2000.10	김호식 관세청장 방우
2001. 1	이브라지모프 노동부 장관 방한
2001. 3	허경만 전남도지사 방우
2003. 6	통외통위 소속 국회의원단 방우
2001. 5	카밀로프 관세청장 방한
2001. 8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방우
2003. 2	심상명 법무장관 방우
2003. 4	김용덕 관세청장 방우
2003. 5	최영진 외교안보연구원장 방우
2005. 5	노무현 대통령 방우
2005. 8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방우
2005.10	김원기 국회의장 방우
2006.8	정세균 산자부장관 방우
2006. 9	한명숙 총리 방우
2007.3	김신일 교육부총리 방우
2007.8	이상수 노동부 장관 방우
2007.9	남기명 법제처장 방우
2007.10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 방우
2007.12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방우
2007.12	권오규 경제부총리 방우
2008.3	조중표 총리실장 방우
2008.5	한승수 총리 방우
2008.6	조중표 총리실장 방우
2008.8	이윤성 국회부의장 방우
2008.10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 방우
2008.10	박 진 외통위 위원장 방우
2009.5	이명박 대통령 방우
2010.2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나. 양국간 교류 현황

92년 국교 수립 이후 다방면에 걸친 양국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양국 국가원수가 상호 방문한바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항상 상대국의 입장을 지지해 왔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경제성장 모델 및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자리잡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CIS 국가들 중 한국 기업들의 투자진출이 가장 활발한 국가중의 하나로 남아 있다.

1) 한-우즈베키스탄 경협관계 평가

한-우즈벡 경제 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우즈벡의 풍부한 광물 자원 및 원유, 가스 등 자원이 필요하고 우즈벡은 산업화를 위해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참고할 수 있다. 현재 양국 정상회담 및 총리 회담의 결과로 우라늄. 금광 개발 사업 및 원유, 가스전 개발 탐사 사업 등 중요한 양국간 경협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 제2차 한-우즈베키스탄 자원협력위원회 개최

2007.11월 한-우즈벡은 양국간 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르길 가스전 개발과 석유 화학단지 건설 프로젝트, 광진공이 추진하고 있는 광산개발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으며, 향후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008.5월 우즈베키스탄에 방문한 한승수 국무총리는 우라늄 장기도입 계약, 2008-11년 우즈벡에 대외경제협력기금 1억2천만달러 지원, 6개월간 우즈벡 신규 특정 광구에 대한 평가 독점권소유, 나망간-추스트 유전 컨소시엄 공동탐사 및 운영, 우준쿠이 가스전 공동조사계약 등 구체적인 협력을 약속하였다.

3) 한-우즈베키스탄 환경협력세미나

2010년 12월 한-우즈벡은 양국간 환경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와 우즈베키스탄 주요 도시의 환경시설 개선 및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양국은 2009년 11월 환경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물, 폐기물 분야 등의 양국 간 환경협력 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여 우즈베키스탄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해오고 있다. 특히 사마르칸트, 부하라, 나보이, 우르겐치, 히바 등 5개 지역의 상, 하수도,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관리 현황을 조사, 분석한 뒤 현지에 적합한 환경 관리 방안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우즈벡 방문 성과

2009.5.10-12일간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한 이명박 대통력은 한-우즈벡 정상회담을 갖고 우즈베키스탄 서페르가나와 취나바드 지역을 비롯한 5개 신규 유전 및 가스전 탐사 사업을 진행키로 하는 내용의 기본합의서와 양해각서(MOU) 등 에너지. 자원분야에서 7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유전 및 가스전 개발과 인프라를 연계한 수르길 가스전 -플랜트사업 금융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중앙아시아 최초로 한국컨소시엄이 지분 100%를 보유한 '나망간-추스트 육상광구 탐사계약' MOU를 체결하였다.

아울러 침칼타사이 몰리브덴-중석(예상매장량 21만t) 공동탐사계약/ 우즈벡 광산공동개발 및 현대화사업협력 양해각서/광물자원 DB구축-탐사협력 MOU/ 나보이 상하수도시설 EDCF (대외경제협력기금)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산업금융분야에서는 심장수술센터 의료 기기 공급차관 1천만달러 계약 등 3건을 체결한데 이어 인프라, 물류분야에서는 나보이 특구 관리.

운영협력, 나보이 특구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EDCF 1,769만달러 MOU, 국제 교통분야 협력 MOU등 6건이 체결되었다.

또한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으로 한진그룹의 '나보이 프로젝트'가 양국간 경제협력의 상징물로 주목받게 되었다. 대한항공과 우즈벡 항공사간 나보이 공항 위탁경영 계약이 2008년 12월 체결됐고, 한진과 센트럴 아시아로지스틱스간 육상물류 조인트 벤쳐 설립계약이 체결되었다. 나보이 프로젝트는 올해부터 본격화되어 5월27일부터 기존 인천-나보이-밀라노 주3회 화물노선에다 인천-나보이-브뤼셀 노선을 신설해 중앙아시아의 물류허브로 육성하는 사업의 확대가 예상된다.

한- 우즈벡 주요협정 및 MOU 체결 내역

분야	주요 사업	내용
에너지. 자원분야	수르길 가스전. 플랜트사업 금융 MOU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와 가스공사 UNG간 PF대출. 보증협력
	찜칼타사이 몰리브덴. 중석 공동탐사계약	공동탐사 협력 MOU체결 후속조치- 몰리브덴. 중석 공동탐사 착수
	나망간/추스트 탐사계약 프로토콜	2008.11.10 체결된 탐사계약 유효기간 기산일 결정 프로토콜
	우즈벡 광산공동개발 및 현대화 사업협력 MOU	알마릭 광업공사 현대화 프로젝트 진행
	광물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탐사협력 MOU	디지털 지질지도 활용 공동연구 및 우즈벡 전문가 교육
	신규광구 MOU	신규 3개 유가스전 개발 참여
산업.금융 분야	NBU 및 아사카 은행 전대라인 증액계약	현지 한국기업 지원 위한 전대라인 증액 (1.2억→1.9억)
	NBU 및 아사카 은행 전대라인 확대 MOU	나보이특구 지원 위한 전대라인 (2억 달러) 신설
인프라 분야	나보이 상하수도시설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지원 MOU	EDCF 17.6백만달러 (10년거치 30년 상환) 지원
	철도분야협력MOU	철도분야 협력
	국토부-대외경제부간 MOU	국제물류센터 건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ITS)개발, 국내외 복합운송 촉진
	한국지적공사-우즈벡 토지등록 분야 MOU	지적도, 지적 등록부 제작을 위한 공동 사업실시
	해외건설협회-엔지니어링 협회간 MOU	건설,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정보 상호교환

다. 양국간 교역 현황

양국간 교역은 97년 최대 9억 7천만 불까지 달했으나 그 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 이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9년 한국의 수출은 국제 금융 위기의 여파로 전년대비 2.4% 증가한 1,150백만 불, 수입은 82.0% 감소한 47백만 불을 기록하였다. 2010년도에 수출은 25.1% 증가한 1,439백만 불, 수입은 22백만 불을 기록하여 무역수지는 역대 최고의 흑자기록을 나타내었다.

자동차 부품 등 투자진출 한국기업들에 의한 부분품 및 원부자재 수입이 전체 수출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주로 면사, 면직물, 우라늄, 농산물 등을 수입하고 있다.

한국의 對 우즈베키스탄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0(1-2월)
수출	359	493	649	748	1122	1149	1,439	230
수입	77	29	40	104	263	47.4	22	4
수지	282	464	609	644	859	1,101.6	1,417	226

자료: KOTIS

II. 경제

1.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경제 현황 전반

우즈벡은 최근 수년간 거시경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는 빠른 경제 성장과 큰 폭의 대외흑자 및 외환 보유고 증가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성과는 우즈벡 정부의 재정, 금융정책 조정과 양호한 외부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IMF 등 국제기구들은 평가하고 있다.

세제개혁 및 세금부담경감 등 일부 분야에서 큰 발전이 있었지만, 구조 개혁의 속도는 전반적으로 느린 편이다. 은행시스템의 개선, 무역 및 대외결제시스템의 자유화, 보다 유연한 환율정책 등을 IMF 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우즈벡 정부기조를 관찰해 볼 때 이러한 문제들이 즉각 개선 될 것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

우즈벡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피하는 이유는 우즈벡 주요 수출상품의 국제시장 가격이 높게 유지됨으로써 무역흑자가 증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러시아, 중국, 한국 등의 석유가스, 통신분야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투자는 국제 금융기구와는 달리 우즈벡의 정치 경제개혁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지않고 있다. 열악한 투자환경과 더불어 정부의 외환통제, 높은 수입관세 등 과도한 민간부문 활동규제로 서방의 투자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된다.

우즈벡의 경제는 풍부한 부존자원을 바탕으로 원면, 금, 에너지 등 천연자원을 이용한 1 차 산업 위주로 발달하였다. 중앙아시아 3 위 규모의 천연가스(확인매장량 1.58 조 m3, 세계 확인매자량의 0.9%), 상당향의 원유(확인매자량 6 억 배럴) 및 금(매장량 세계 5 위) 등의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1 차 산업의 수출액이 총 수출액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편중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바, 국제시장의 원자재 가격추이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있다. 이러한 우즈벡 경제구조의 취약성을 정부 또한 인식하고 있으며, 전체 산업에서 1 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줄이기 위해 산업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 육성, 면화 및 에너지 등의 자원을 가공하는 2 차 산업분야의 생산설비를 현대화 시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 2010년 우즈벡 경제 발전 최우선 정책 목표

- ○ 수입대체 제품 생산 규모 전년 대비 40% 증가
- ○ 수출에서 수입대체 제품 비중 12%로 확대

○ 임금 30% 이상, 실질 소득 23% 증가
○ GDP에서 서비스 비중 2009년 47%에서 2010년 49%로 증가
○ 각종 중소기업 지원(통합세 7%로 인하) 정책을 통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09년 50%에서 2010년 52.5%로 증가

□ 2010년 국산화 프로그램 (Localization Program) 추진

우즈벡 정부는 2010. 3. 23 '2010년 완제품, 부품, 원료 등의 국산화 생산에 관한 대통령 결의' 발표하였다. 2차 제조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국산화 프로그램은 2010년 국산화 제품의 생산량을 1.45배로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 최근 주요 산업 동향

주요 산업 현황 (2010년 상반기)

(단위: 십억Sum, %)

	2007		2008		2009		2010년 상반기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내수생산품	28190.0	109.5	37746.7	109.0	48097.0	108.1	24167.6	108.0
공업생산품	18447.6	112.1	23848.0	112.7	28009.3	109.0	15441.1	108.0
농산물	9304.9	106.1	11310.7	104.5	12642.6	105.7	6081.3	106.9
주요 투자	5903.5	125.8	9555.9	134.1	12531.9	124.8	7099.3	100.0
건설업	18447.6	112.1	23848.0	112.7	28009.3	109.0	3936.0	111.5
소매 유통	9574.6	115.5	12682.3	118.4	16488.9	116.6	9588.9	110.3
총서비스업	14058.8	126.5	19292.0	116.5	26455.8	116.7	3390.4	112.0

자료: 우즈벡 통계청

□ 자동차 생산 및 내수판매동향

2009년도는 20만5천대를 생산하여 내수로 16만대를 판매하고, 수출은 주력시장인 러시아 시장의 침체로 인해 4만5천대에 그쳐 전년대비 수출이 대폭 감소했다.

우즈벡의 주요수출시장은 러시아 등 CIS 국가들로 최근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가 세계적인 금융위기 의 여파로 자동차 수요가 급감하면서 우즈벡의 수출도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러시아 자동차시장의 확대와 인근국가로의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동차 생산 현황 (2009)

(단위: 대)

생산차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Damas	9,495	11,917	15,731	20,843	24,510	23,633
Tico	1,133	-	-	-	-	-
Nexia	39,079	64,639	74,089	84,179	95,027	90,650
Matiz	19,856	21,531	49,375	63,576	70,144	69,130
Lacetti	507	2923	885	1,722	1,389	19,400
Captiva	-	-	-	191	1,892	1,100
Epica	-	-	-	425	2,061	1,098
Tacuma	-	-	-	873	15	-
합계	70,070	101,010	140,080	171,809	195,038	205,011

자료: 우즈벡 통계청

우즈벡 이동통신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 4년 동안 가입자수는 2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9년 말 현재 총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1천570만 명에 달한다. 우즈벡 이동통신 보급률은 2011년 말-2012년 초에 100%에 이를 것이며, 2015년 가입자 수는 3550만 명, 보급률은 1179%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유가스 동향

우즈벡 정부는 서방 기업들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고 있으나 CIS, 중국, 일본 및 한국 등에 대해서는 신규 개발 탐사 등을 위한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이 중 하나인 아랄해 광구의 경우 PSA(생산물공유협정)을 통하여 Uzbekneftegaz, Lukoil(러시아), Petronas (말레이시아), CNPC(중국) 및 대한석유공사(한국)가 공동참여하고 있으며 생산물은 Uzbek neftegaz와 기타 파트너들간에 50:50으로 분배가 약정된다. 2007년 4월부터 3년간의 예정으로 8천만 불 규모의 탐사를 개시하며 2단계에서는 2억불을 투입하여 시험 채굴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랄해 광구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1조 입방 미터로 추산되고 있다. 우즈벡 은 충분한 매장량과 석유정제품의 자급자족할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몇 개 유전은 생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우즈벡 경제영향

우즈벡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외화차입규모가 적고 금융시장이 낙후되어 있어 유동성 부족이나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감소가 직접적인 금융부분의 위기로 발전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IMF, ADB등 국제금융기구는 2010년도 7%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수출대상국인 러시아, 카자흐, 우크라이나 등이 경제위기를 맞은 상황은 향후 우즈벡 수출에 타격을 주었다. 우즈벡의 주요대출 및 외국인 직접투자원인 러시아 등의 경기불안은 그 동안 주요투자재원 이었던 외국인 투자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석유, 가스등 대형투자는 국제 금융위기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투자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주요경제지표 (2010년)

지 표		2006	2007	2008	2009	2010
GDP	십억 달러	17.0	22.3	26.0	29.2	37.7
	성장률(%)	7.3	9.5	8.6	7.8	8.3
	1인당GDP	642	829	955	1,040	1,319
인구(백만 명)		26.5	26.9	27.2	28.1	28.6
소비자물가상승률(%)		11.4	11.9	12.0	8.2	16.0
평균 환율(1 USD)		1,238	1,288	1,383	1,511	1,638
교역	전체(백만USD)	9,456	13,756	16,320	18,390	22,410
	수출(백만USD)	5,615	8,026	9,840	9,950	12,910
	수입(백만USD)	3,841	5,730	6,480	8,440	9,500
	수지(백만USD)	1,774	2,296	3,360	1,510	3,410
경상수지(백만USD)		2,933	4,267	5,626	3,255	5,308
외환보유고(백만USD)		4,459	7,413	10,150	11,000	10,500
국가외채(백만USD)		3.892	3.927	3,948	3,647	4,276
실업률 %		0.8	0.8	0.9	1.1	1.0

자료: Country Report, 2010. 6. EIU, 2010년은 예상치

라. 2010년 경제 전망

1) 경제성장

우즈벡 정부는 2010년 7월 16일, 상반기 경제사회 동향에 대한 점검회의를 가졌으며, 상반기 경제성장률을 8%로 발표하였다. 또한, 발표 따르면 소비재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1.8%, 산업생산은 8% 증가하였으며, 농업생산은 6.9% 제고되었다. 2010년 경제는 우즈벡의 낙후된 금융시장의 특성으로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영향이 덜하였으며 수출수요 감소, 원면 등 수출상품 가격하락, 해외근로자 송금 감소 등 영향의 여파로 다소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및 중국,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가스, 원유 등 에너지 부문 투자가 증가하고, 통신 및 일부 제조업에서도 외국인 투자유입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 한 투자 증가는 가스 및 자동차 등 수출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연쇄적으로 자동차부품, 석유 및 가스개발에 연관된 자본재 수입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소비재 상품수입에 대한 정부통제로 전체수입량의 증가는 전반적으로 억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인플레이션

우즈벡 정부는 2009년도 인플레이션을 7.4%로 공식발표 하였으나, 국제 경제조사기관들은 2009년도 우즈벡 인플레이션이 15% 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상품수출 호조에 따른 외환 유입증가, 최저임금 등 국내임금 및 연금 등의 인상과 식품가격의 인상 등이 물가상승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2010년에는 원유가격의 하락과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회복으로 인플레이션이 8.5% 수준으로 전년 보다 약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3) 환율

우즈벡 정부는 수출경쟁력을 지지하기 위해 숨화의 평가절하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증가에 따른 외환의 국내유입으로 숨 화의 급격한 평가절하는 억제될 것이다. 2009년도말에는 1달러당 1,510숨을 기록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0년도 말에는 1,600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0년 상반기 중 숨화의 평가절하 폭은 월 10~16숨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중앙은행(CBU) 기준 환율 추이

단위: 숨/달러

구분	2009년 1월	2009년 6월	2010년 1월	2010년 6월
환율(증감)	1,393	1,483.5(+90.5)	1,511.4(+27.9)	1,578.87(+67.47)

4) 대외부문

주요수출품인 가스, 금 수출증가 등으로 수출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9년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가스는 2008년도에 이어 2009년도에 수출가격을 인상하고 공급량을 늘리면서 우즈벡의 중요한 외화 소득원이 되고 있으며, 2010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경기가 성장하면서 산업설비 등 자본재 수입은 증가할 것이나 국내산업 보호 우선 정책으로 우즈벡 정부는 소비재 수입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을 사용하여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등 해외거주 우즈벡인들의 본국 송금액 증가도 경상수지 흑자 시현에 기여하고 있으나 2010년도에는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러시아 거주 우즈벡인의 귀국으로 송금액은 수년전보다 30-40% 이상 줄어든 2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마. 2011년 주요 현안사항

1) '2011-2015 우즈베키스탄 산업발전 프로그램' 발표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여 2010년 12월 14일 발표된 동 프로그램은 우즈벡 전반적인 산업의 균형발전 및 다각화, 수출 잠재력 및 경쟁력 증가 등이 골자로 꼽히고 있으며, 기존의 시설 현대화, 신규 생산 설비 도입 등이 프로젝트들이 계획되고 있다. 2015년 까지 총 미화 300억 7,40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며, 259개의 프로젝트 실현이 2011-2015 산업 발전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이다.

2011-2015 산업 발전 프로그램을 통하여 2010년 8.3%에서 2015년 11.8%까지 산업 생산량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체 GDP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2010년 23.9%에서 2915년 28%, 최종생산물은 50.6%에서 61.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발전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우즈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여러 지원책을 내놓을 전망이며, 2016년 1월 1일까지 프로젝트 실현에 필요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장비 및 원자재 수입 시 관세면제 혜택이 그 첫 번째로 평가되고 있다.

2) 2011년, 민간 중소기업 육성의 해 지정

우즈베키스탄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져 2010년 53%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현재 우즈벡 경제 내 중소기업의 활성화 추세를 이어, 민간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전반적인 사회 경제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즈벡 정부는 2011년을 민간 중소기업 육성의 해로 지정하였다. 현재 중소기업 및 민간사업자들은 무역 서비스, 통신, 농산물 가공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나노기술 산업, 제약 산업, ICT, 대체에너지 개발 분야 등 고부가 가치산업으로의 진출을 계속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중소기업 및 민간사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신규 사업자 등록 절차 간소화, 통합세 8%에서 6%대로 인하, 사업장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이 꼽히고 있다.

2. 주요 산업 동향

가. 농업

우즈베키스탄 전체 GDP의 1/5을 차지하는 농업은 우즈베키스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분야 중 하나이다. 우즈베키스탄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면화에 집중된 경작구조를 곡물분야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농업 생산성을 증대 시키기 위해 국영농장의 민간 기업화 및 개인농장의 장려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경작 면적의 확대를 위한 농지개량사업, 관개시설 확충사업 등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강력한 농업육성 정책에 따라 다른 CIS 국가들은 독립 이후 농업 분야에서 상당한 후퇴를 보였으나 우즈베키스탄 농업 생산은 거의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 면화

독립 이후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곡물 증산운동에 따라 면화의 생산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강우량 및 일조량의 변화와 기계 사용의 증가에 따른 수율(Yields)의 감소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수율 감소를 억제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정부는 면화경작 시 플라스틱 필름의 사용을 증대시키고 있는데 이는 폭우나 한파의 영향을 줄이고 수분의 증가를 억제하는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면화는 10년 전 우즈벡 전체 수출비중 2/5에서 현재 수출의 1/5을 점유하는데 불과하다. 면화분야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낮은 수매가격과 정부의 개입, 구조개선 미흡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침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면화생산량은 95년도 3.9백만 톤의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매년 3.2백만 내지 3.6백만 톤의 생산량을 보여왔다. 2007년도 생산은 3.6백만 톤, 2008년 생산은 3.4백만 톤으로 기록되며 2009/10년에는 전체 면화생산 토지가 131.5만 헥타르로 일부 줄어들어 340만 톤으로 예상하고 있는 생산목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진출한 대우 등을 필두로 원면을 가공해 생산하는 면사는 매년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원면의 수출을 대체하고 있다.

원면 생산 및 수출현황

(단위: 만 톤,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생산	113	120	117	113	117	109	112
내수(비중)	28(24.7)	28(23.3)	26(22.2)	38(33.6)	29(24.8)	29(26.0)	37(33.0)
수출(비중)	85(75.3)	92(76.7)	91(77.8)	75(66.4)	88(75,2)	80(74.0)	75(67.0)

자료: 우즈벡 통계청, 경공업협회

나. 에너지

우즈베키스탄은 평균적으로 매년 전기 480억KWh, 석유 및 가스 농축액 5.4백만 톤, 천연가스 620억㎥을 생산하였는데 특히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세계 10위 생산국이다. 이는 자급자족에는 충분할 뿐만 아니라 인근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등으로 수출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등 일부 석유제품은 주유소의 부족과 외화획득을 위한 정부의 수출확대로 일부 지역에선 부족을 겪고 있고 오히려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지에서 밀수가 횡행할 정도이다. 또한 현지 생산 휘발유의 옥탄가가 낮고, 유연이기 때문에 고급 차종의 경우 에는 유연 휘발유 사용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광물자원 보유현황

광종	단위	우즈벡(A)	세계(B)	A/B(%)	세계순위
석탄	백만톤	4,000	984,211	0.4	19
금	톤	5,300	49,800	10.6	5
몰리브덴	천톤	60	8,600	0.7	11
텅스텐	천톤	20	3,200	0.6	12
우라늄	천톤	65.62	2,619	2.5	10

자료: Mineral Handbook, 2000-2001;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2007

다. 건설

사회간접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즈베키스탄 실정상 건설산업은 토목, 설계, 시공 분야는 물론 건축자재 생산 분야에 이르기까지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하나이다. 2010년

현재 연간 48억불 정도에 달하는 건설산업은 환율의 따른 소비자들의 현물 보유심리를 자극해 불경기 중에도 비교적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라. 전자

우즈베키스탄 산업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분야는 전자산업으로, 이중에서도 가정용 전자제품 분야는 '95년 이전까지만 해도 불모지대라 할 정도인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대우전자 등이 진출해 가전제품을 조립 생산 하다가 2004년 12월 현재 모두 철수한 상태이다.

부품을 거의 전부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형편으로 부품 수입을 위한 외화환전이 여의치 않은 것이 철수의 주요 원인이다. 완제품 소비시장으로는 잠재력이 크지만 전자산업을 육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현지 가전업체 Roism과 Zenith가 LG 전자 및 삼성전자의 부품을 수입 컬러 TV 조립생산을 하고 있으며 LG, 삼성전자의 기술지원을 통해 신모델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있다.

마. 화학공업

화학공업은 주로 석유화학공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있는데 이는 우즈베키스탄이 원유가 충분히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내륙국가로 운송이 어려워 원유의 수출보다는 가공품의 수출이 유망하기 때문이다.

2010년 우즈베키스탄 화학산업 분야 총생산량은 작년대비 41.5% 증가한 8.6억 달러에 이르며 생산성이 낮기는 하지만 광물성 비료, 살충제, 카프로락탐, 아세테이트, 셀룰로스 등의 화학제품이 생산되며 이외에도 인산비료 공장, 소다공장 등이 건립되고 있다. 한국의 가스공사가 개발하고 있는 수로길지역 가스개발과 연계하여 석유화학단지건설 프로젝트가 검토단계에 있다.

바. 철강금속산업

우즈베키스탄에는 CIS 전체에서 2위 규모의 Al-Malyk제련소가 있어 철강금속사업은 비교적 발달해 있으며 연간 100톤정도의 금이 생산되고 있고 이외에도 비철금속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구소련 시절 설치된 Al-Malyk 제련소의 경우, 생산능력에 비해 우즈베키스탄 내 생산량이 작아 제련에 필요한 구리나 아연 등을 인근국가에서 사와야 하는 형편이다.

사. 통신

우즈베키스탄의 독립 이후 가장 큰 발전을 이룬 분야가 통신분야인데 이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외국기업들의 투자진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시 주요 지역의 교환기가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교체되었고 기존 선로의 광케이블로의 교체 작업이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다.

이동통신 시장은 연40%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것으로 추산된다. 공식통계에 의하면 2010년말 기준 우즈베키스탄 이동통신 가입자수는 2,038만명으로 매년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터넷 가입자수는 280만명에 이르고있다.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2010년 우즈베키스탄 교역동향

□ 수출 동향

- 우즈벡의 2010 년도 총 수출량은 130 억 4,450 만 달러로 2009 년 대비 10.8% 증가하였다.

- CIS 국가로의 수출량은 전년 대비 50.4% 증가한 58 억 9,870 만 달러를 기록한 것에 반해, 비 CIS 국가로의 수출은 71 억 4,580 만 달러로 이는 전년 대비 -9.8% 감소한 수치이다.

- CIS 국가로의 수출량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이유로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의 수출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임. 대 러시아 수출량은 전년 대비 96.7% 증가한 44 억 4,120 만 달러에 달함. 카자흐스탄은 8 억 5,210 만 달러로 러시아의 뒤를 이르며, 2009 년 대비 65.8% 증가된 수치를 기록하였다.

- 비 CIS 국가들 가운데는 8 억 9,990 달러로 2009 년 대비 84.0% 증가한 중국으로의 수출이 두드러지며, 뒤이어 터키 7 억 2190 만 달러, 아프가니스탄 6 억 6330 만 달러를 기록함. 전년 비 CIS 국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스위스는 2009 년 대비 -97.1% 감소한 4520 만 달러를 기록하며 크게 감소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우즈벡의 국가별 수출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08 년		2009 년		2010 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수출		**11,493.30**	**28.7**	**11,771.3**	**2.4**	**13,044.5**	**10.8**
CIS		**4,010.80**	**-6.1**	**3,921.3**	**-0.1**	**5,898.7**	**50.4**
	카자흐스탄	460	-70.5	513.7	17.1	852.1	65.8
	러시아	1,986.50	-19.7	2,257.2	15.1	4,441.2	96.7
	우크라이나	978.7	55.4	691.1	-28.8	175.7	-74.5
	기타 CIS	585.6	15.2	459.3	-17.6	429.7	-6.4
비 CIS		**7,562.10**	**60.3**	**7,850.0**	**3.7**	**7,145.8**	**-9.8**
	벨지움	25	28.9	22.3	-10.8	25.8	15.6
	영국	153.4	48.5	110.8	-28.0	131.5	18.6
	이란	536.6	3.2	538.0	0.2	573.9	6.6
	한국	91.6	31.4	102.6	12.0	158.2	54.1
	네덜란드	29.2	9.8	12.3	-57.9	16.7	35.7
	미국	211	146.5	146.6	-30.6	51.3	-65.0
	터키	534.4	-9.5	406.9	-23.8	721.9	77.4
	스위스	1,032.90	171.5	1,586.1	53.6	45.2	-97.1
	아프카니스탄	530.4	60.1	703.8	35.3	663.3	-5.7
	중국	257.4	-18.1	489.0	89.9	899.9	84.0
	기타 비 CIS	**4,160.2**	**85.5**	**3,731.6**	**-10.6**	**3,858.1**	**3.3**

자료: 우즈벡 통계위원회

□ 수입 동향

○ 2010 년도 수입은 87 억 9,790 만 달러로, 2009 년 대비 -7.2% 감소하였다.
- 2009 년부터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정부시책으로 수입액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 CIS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은 2009 년 대비 -15.8% 감소한 35 억 2,580 만 달러이고 비 CIS 국가의 경우, -1.5% 감소한 52 억 7,210 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의 나라와 비교되는 29.3%의 큰 증가폭을 기록하였으며, 총 14 억 5,650 만 달러에 달한다.

우즈벡의 국가별 수입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08년		2009		2010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수입	9,704.0	85.0	9,438.3	-2.7	8,797.9	-7.2
CIS	4,732.90	75.0	4,084.9	-13.7	3,525.8	-15.8
카자흐스탄	1,220.9	532.2	793.5	-35.0	956,2	20.5
러시아	2,274.2	1,565.10	2,186.3	-3.9	1,936,4	-11.4
우크라이나	960.3	430	835.1	-14.0	376,9	-54.8
기타CIS	277.5	194.5	270.0	-3.0	256.3	-5.0
비 CIS	4,971.1	97.1	5,353.4	7.7	5,272.1	-1.5
영국	73.4	59.5	62.9	-14.3	96.9	54.0
독일	455.1	252.3	420.4	-7.6	432.8	2.9
중국	1,253.5	434.2	1,562.4	24.6	1,185.4	-24.1
한국	1,043.7	514.1	1,125.8	7.9	1,456.5	29.3
미국	193.4	110.2	221.1	14.3	130.4	-41.0
터키	300.0	163.8	267.2	-10.9	238.0	-10.9
프랑스	89.8	56.6	70.3	-21.7	85.8	22.0
일본	151.9	50.3	124.0	-18.4	105.9	-14.5
기타 비CIS	1,410.3	872.8	1,499.3	6.3	1,540.4	2.7

자료: 우즈벡 통계위원회

나. 교역 품목 별 수출입 동향 및 통계

○ 주요 수출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원료의 수출은 2009 년 대비 78% 증가한 32 억 3,470 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 수입의 경우, 전체적인 품목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기계/설비류의 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화학/고무 제품의 수입이 뒤를 이었다.

우즈벡의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US$ 백만, %)

	2008년		2009년		2010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원면	1,068.9	-5.1	1,123.9	2.8	1,478.6	31.5
식품류	517.2	-33.4	764.3	50.7	1,260.6	64.9
화학/플라스틱	643.6	6.0	611.4	72.4	660.0	7.9
에너지 원료	2,838.8	60.6	1,816.3	116.7	3,234.7	78.0
철/비철금속	804.5	-21.7	1,034.0	25.4	894.1	-13.5
기계/설비류	873.5	-7.2	935.1	44.3	723.2	-22.6
서비스	1,195.3	25.1	962.1	24.6	1,183.6	23.0
기타	3,551.4	103.7	1,744.4	29.1	3609.7	106.9
총수출	11,493.3	28.7	8,991.5	40.7	13,044.5	10.8

자료: 우즈벡 통계위원회

우즈벡의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US$백만, %)

	2008년		2009년		2010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식품류	805.4	47.0	849.4	5.5	963.2	13.3
화학/고무제품	1,125.7	25.9	1047.7	-7.3	1.257.3	20.0
에너지 연료	446.4	158.0	330.3	-27.5	525.1	58.9
철/비철금속	747.2	71.0	594.6	-19.7	740.1	24.4
기계/설비류	5,084.9	108.0	5,332.6	5.0	3,876.2	-27.3
서비스	427.0	10.4	415.3	-3.3	417.3	0.4
기타	1,067.4	34.8	868.3	-18.4	1018.7	17.3
총수입	9,704.0	43.3	9,438.3	-2.7	8,797.9	-7.2

자료: 우즈벡 통계위원회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우리나라 대 우즈벡 수출동향

o 2010 년 대 우즈벡 수출액은 2009 년 대비 25.2% 증가한 14 억 3,864 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 원동기, 승용차를 들 수 있으며, 총 수출액 중 68.4%를 차지하였다

o 2011 년 1-2 월, 배전및제어기(9,806.7%) 및 기타기계류(1,660%)의 급격한 수출 증가가 돋보인다.

주요 품목별 대 우즈베키스탄 수출 현황

(단위: 천 불, %)

순위	품목	품목명	2009년		2010년		2011년(1-2월)	
순위	(MTI)	품목명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7420	자동차부품	578,077	-0.1	723,576	25.2	120,725	-6.2
2	7111	원동기	120,417	36.2	159,654	32.6	35,751	45.9
3	2140	합성수지	46,981	0.2	91,424	94.6	11,832	21.0
4	7411	승용차	55,952	-52.2	96,023	71.6	10,654	-49.2
5	4360	편직물	46,455	12.9	48,522	4.5	7,402	-4.9
6	5290	기타가구	14,789	-17.5	21,137	42.9	4,086	63.7
7	6133	냉연강판	16,366	-26.6	18,773	14.7	3,273	30.0
8	7251	건설중장비	9,006	-20.5	12,446	38.2	2,703	144.0
9	8423	배전및제어기	297	85.4	1,017	242.8	2,382	9,806.7
10	7901	기타기계류	33,659	114.6	7,135	-78.8	2,152	1,660.0
11	7112	펌프	6,123	-1.6	6,557	7.1	1,941	511.2
12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9,999	244.7	18,310	83.1	1,826	-30.2
13	3203	타이어	9,178	-3.7	11,592	26.3	1,668	11.2
14	8425	원자로및전기로	30	-83.0	870	2,840.1	1,645	-
15	2221	도료	5,834	-14.4	9,725	66.7	1,626	315.3
16	7211	섬유기계	2,663	-63.1	6,168	131.6	1,483	842.2
17	2212	안료	1,934	-31.1	3,915	102.4	818	13.0
18	7215	고무플라스틱가공기계	4,249	-40.1	4,958	16.7	792	1,029.7
19	7214	섬유및피혁가공기계부품	5,284	-8.0	4,802	-9.1	706	-13.2
20	8352	축전지	646	-80.2	1,868	189.2	602	80.6
21	6134	아연도강판	3,012	-22.6	5,460	81.2	597	-28.2
22	1336	윤활유	1,385	-33.3	2,019	45.8	557	-2.4
23	6136	석도강판	1,952	-24.0	2,896	48.4	555	186.6
24	7412	화물자동차	23,583	161.6	4,383	-81.4	512	13.9
25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1,686	-28.4	2,279	35.2	505	18.0
		총 계	1,149,783	2.4	1,438,644	25.1	229,788	3.6

자료: KOTIS

나. 우리나라 대 우즈벡 수입동향

ㅇ 2010 년 대우즈벡 수입은 2,198 만 달러로, 2009 년 대비 -53.6% 감소하였다.

ㅇ 면사, 면직물, 천연섬유원료 등 원면관련 제품이 여전히 주요 수입품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ㅇ 2010 년 1-2 월에는 원목, 플라스틱금형 등이 새로운 수입품목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 대 우즈베키스탄 수입 현황

(단위: 천 불,%)

순위	품목 (MTI)	품목명	2009년		2010년		2011년(1-2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4213	면사	9,950	-9.9	11,111	11.7	1,737	-1.6
2	4331	순면직물	3,964	51.4	3,984	0.5	1,060	12.5
3	0191	천연섬유원료	1,545	-82.9	2,816	82.2	485	182.4
4	0156	식물성한약재	1,282	-36.8	1,538	19.9	403	79.0
5	0311	원목	-	-	0	-	157	-
6	7532	플라스틱금형	-	-	0	-	90	-
7	2310	질소비료	156	-	420	169.6	67	-67.1
8	0113	두류	0	-	6	-	66	-
9	0219	기타산동물	52	-37.0	63	20.1	10	11.8
10	4490	기타섬유제품	14	-4.8	7	-51.1	6	-
		총 수입	**47,410**	**-82.0**	**21,979**	**-53.6**	**4,088**	**6.7**

자료: KOTIS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출입 관리 제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비교적 고율의 수입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수입품에 대해서는 고율의 소비세(excise)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외환수급사정을 고려하여 수입을 억제하고 있으며, 특히 자국 내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기도 한다. 주재국의 경우 수입 상품에 대한 영사인증제도는 없으나, 수입계약등록 및 환전제한을 통해 수입은 사실상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언더밸류를 통한 외환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선적 전 검사제도(PSI)를 일부 품목에 한해 98년 도입하였다. 선적 전 검사 대상 품목은 육류와 육류 반제품, 우유 제품, 식용유 종자, 주류와 음료, 담배, 기계류(정부 투자 프로그램에 의해 수입되는 것에 한함)이다. 해당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ITS(영국), SGS (스위스) 또는 Control Union (독일)의 선적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우즈베키스탄 수입업체들은 계약 체결 후 자국의 거래은행, 대외경제부, 세관에 계약을 등록하여야 한다. 동 계약등록 사실을 근거로 하여 수입통관 및 판매,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외환을 매입할 자격이 주어진다.

나. 수출입 허가, 금지, 신고 품목 등 관세, 비관세 장벽

우즈베키스탄은 강력한 자국산업 육성 정책 및 엄격한 외환 통제로 까다로운 수입 관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수입 및 특정 품목의 수출에 대해서는 허가 제도가 실시되며 수출 허가 품목은 일부 귀금속 및 귀금속 제품, 위험물, 군수물자 및 우라늄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정 수입 계약은 대외관계경제부에 등록되어야 하나 정부 예산으로 수입할 경우와 우즈벡 정부 지불 보증으로 수입할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정부 지분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우즈벡 법인이나 자체 자금으로 수입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에도 대외관계 경제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대외관계경제부에 등록되지 않는 수입 건이라 하더라도 수출입 금융 취급 허가 은행 및 세관에는 반드시 등록되어야 한다.

우즈벡 수출입관련 규정에 따르면 등록 대상 수입거래금액의 15%이상 선불이 허용되지 않으며 금액기준으로 미화 10만불 이상 의 선불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외국 수출업체의 중개은행이 지불보증서한을 발행해야 한다.

□ 수출입 제한 품목 및 수입 규제

o 수출입 제한 품목(대외경제관계성의 허가 대상 품목)
- 무기, 귀금속 및 동 제품, 우라늄, 방사물질 관련 기기

o 수출에 따른 특혜 미 제공 품목
- 면사, 원면, 석유, 천연가스, 에너지, 귀금속, 비철금속, 고철

o 수출 금지 품목
- 곡물, 빵, 밀가루, 가금류, 육류, 분유, 차, 설탕, 에틸 주정, 골동품, 식용유, 가죽원료, 비철금속 스크랩, 누에고치와 부산물

o 수입 금지 품목
- 미풍양속, 공공 질서 위해 각종 매체(출판물, 테이프 등)

o 트랜지트 운송 금지 품목
- 무기, 폭발물, 항공기와 부품, 무기 제조설비, 독극물, 수입금지 품목

o 수출 제한 품목(대외관계경제부 계약등록품목)
- 무기, 귀금속/보석 및 동제품, 우라늄, 방사성 물질 관련 기기, 비철금속, 압연철강 및 고철, 석유, 천연가스, 면사

o 수출입 제한 품목(해당기관의 허가 대상 품목)
- 노동력 파견 및 외국 근로자 고용, 영화 및 비디오, 오디오 제품 수입, 과학기술 및 발명품의 수출, 대외 투자, 예술품의 수출, 희귀 동식물 수출, 오존 파괴물질 수출입

o 자국 내 상품거래소에서 경화로 구매하여 수출해야 하는 상품
- 해바라기기름, 지방, 화강암, 몰리브덴, 시멘트, 석유와 석유제품, 질소, 의약품, 비료, 염료, 타이어, 종이, 견사, 모, 면사, 합성직물, 에어컨, 냉장고, 트랜스포머, 전기기기, 자동차 등

o 선적 전 검사 대상 품목
- 육류 및 육류 반제품, 우유 제품, 과일, 주류 및 음료, 담배, 기계장비(정부 프로그램에 따라 수입하는 것에 한함), 전기기기(정부 프로그램에 따라 수입하는 것에 한함)

4. 대한수입규제 동향

“수입규제제도” 항목에 따른 일반적 수입규제 이외에 한국산에 대해 특별히 적용되는 수입규제는 없다.

5. 관세제도

주재국의 관세구조는 HS의 상품분류와 유사한 품목그룹별로 대분류는 2단위, 중분류는 4단위, 소분류는 6단위로 되어 있으며 현재 관세부과를 위해 이용되고 있는 상품분류는 일반적으로 4단위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상품분류에 따른 수입관세는 3%-100% 수준까지 다양하게 부과되고 있으나 관세율이 품목별로 대통령령에 의해 수시로 변경되므로 물품의 수출입시는 반드시 최근의 관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종전에는 관세 부과의 기준의 송장(Invoice) 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했으나 저가신고가 관행화되고 이에 따른 재정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자 관세청은 최근에 수입자의 신고가격을 무시하고 시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제품의 가격을 조사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수입상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관세부과는 쌍무협정에 쌍방간 최혜국 대우를 해주는 32개국에는 일반관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지정세율의 두 배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최혜국 국가 이외에는 실질적인 수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통관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20%, 소비세 5%-50% 가 부과되는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을 살펴보면 합성직물의 경우 20%, 의류의 경우 30%, 비철강 제품 5-20%, 통신기기 30%, TV, VCR, 카세트 라디오 등은 30%, 차량의 경우 30%-60%, 중고차 의 경우 최소 100%의 관세율을 나타낸다.

주재국의 경우 수입 상품에 대한 영사인증제도 또는 선적 전 검사제도는 없다. 정부는 수입제한 품목의 설정을 통한 수입규제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수입품에 대한 환전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을 간접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 관세율 종류 및 관세율 알아보는 법

관세율은 단일제도로 운영되며 정부문서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관세율 정보제공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쉬운 방법이며 그 중 서비스 업체는 다음과 같다.

○ 관세율 확인 웹사이트(무료): www.fmc.uz

6. 주요인증제도

공산품 수입 시에 규격인증, 안전증명 등이 필요하며, 식품수입 시에도 안전검사 등이 필요하다. 2003년 1월 1일부로 소비재 상품의 우즈벡어 라벨링이 의무화되어, 수입 소비재품의 경우 우즈벡어 라벨링이 요구된다.

공산품 규격인증 및 식품안전 확인 등은 The Agency for Standardization, Metrology and Certification of Uzbekistan (UZstandard Agency)에서 시행하며, 특별히 인위적인 장벽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관련 서류양식 및 정보는 동 기관 홈페이지 www.standart.uz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7. 지적재산권

가. 개황

우즈베키스탄의 지적재산권은 "발명 및 산업디자인에 대한 법률"에 의거 보호되는데 동 법에 따르면 발명은 특허권의 형태로 12년간, 산업디자인은 실용신안권의 형태로 10년간 각각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외국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 내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않는 상황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5년 4월 19일부로 베른 협약의 우즈베키스탄 국내 발효를 위한 법령을 시행, 153번째 베른 협약 가입국이 되었다. 협약 발효에 따라 앞으로 우즈베키스탄 내에서도 각종 지적 재산권이 국제 기준에 따라 보호될 예정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지적 재산권 또한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면서 지적 재산권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 이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베른 협약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가장 오래된 국제 협약으로 1886년에 처음 체결되었으며 이후 지난 세기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수정되어 왔다. 우즈베키스탄 내 베른 협약의 발효에 따라 다양한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나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에는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즈베키스탄의 베른 조약 가입에 따라 그 동안 외국산 영상물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별다른 제재 없이 방송하여 왔던 우즈베키스탄 텔레비전 방송국들에도 상당한 여파가 미칠 것이다. 현 우즈벡 저작권법에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저작권법안 제정을 추진하여 2006년 6월 입법화 되었다.

나. 특허권

특허권을 관장하는 기구로 특허국(Patent Office)가 있는데 내국인의 경우 직접출원도 가능하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과 함께 변리사(Patent Attorney)를 거쳐야 한다. 특허 제출일 이후 특허국은 기존 등록여부 및 기술분석을 거쳐 특허로서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관보에 게재하고 관보 게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특허가 발급된다.

우즈베키스 탄의 특허 관련법은 1994년 5월 5일 발효된 N 1062-XII 법령으로 2002년 8월 29일 N 397-II로 수정되었다. 이 법은 특허권 신청, 특허권자의 권리, 특허심사 절차, 특허발급 및 사용 등 특허 관련 제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다. 상표권

우즈베크 특허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www.patent.uz에서 법규, 등록절차, 수수료 등 (영문)을 검색할 수 있다.

라. 저작권

저작권은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며 2007년 개정 발효 되었다. 우즈베키스탄내 대부분의 저작권은 State Intellectual Property Fund에 소속되어 있는데 동 기구는 저작권 또는 산업재산권을 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8. 통관 / 운송

가. 통관절차 개황

통관절차가 다른 국가에 비해 특별히 복잡하지는 않지만 업무전산화의 미비, 공무원의 행정능력 부족 및 부패 등으로 수입 통관 시 일반적으로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뇌물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특히 관세율 책정 기준가격을 시장가격의 조사를 통하여 책정함으로써 동 과정에서 세관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이 크게 관여되고 있어 어려움이 큰 편이다.

나. 수입신고

수입 신고 시에는 세관에서 지정된 양식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한다.

- 대외경제성(Ministry of Foreign Economic Relations)에서 발급한 무역업허가서
- 도착통지서(D/O), B/L(Railway Bill 또는 Airway Bill)
- 포장명세서
- 송장(Invoice)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관세감면 대상 품목인 경우 감면을 증명하는 서류

다. 물품검사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하면 세관원은 철도역, 공항 및 보세창고 등에서 수입자의 입회 하에 실제 도착한 물품과 송장상에 기재된 내역을 비교한다. 플랜트 설비, 정밀기기, 귀금속 등은 세관 외에 별도의 장소에서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두 세관 내 지정된 구역에서 실시한다.

주재국의 관세구조는 HS의 상품분류와 유사한 품목그룹별로 대분류는 2단위, 중분류는 4단위, 소분류는 6단위로 되어 있으며 현재 관세부과를 위해 이용되고 있는 상품분류는 일반적으로 4단위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상품분류에 따른 수입관세는 0%-30% 수준까지 다양하게 부과되고 있으나 관세율이 품목별로 대통령령에 의해 수시로 변경되므로 물품의 수출입시는 반드시 최근의 관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종전에는 관세 부과의 기준의 송장(Invoice)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했으나 저가신고가 관행화되고 이에 따른 재정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자 관세청은 최근에 수입자의 신고가격을 무시하고 시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제품의 가격을 조사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수입상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 운송

우즈베키스탄은 리히텐슈타인과 함께 세계유일의 이중 육지 폐쇄국가(double landlocked country: 동서남북 어느 방향이든 대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2개 국가를 거쳐야 하는 국가)로 물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한국과의 교역 시 일반적으로 TSR(시베리아 횡단 철도: 부산->블라디보스톡->노보시비르스크->타슈켄트) 혹은 TCR(중국 경유)를 이용하며 중동의 두바이를 물류 거점으로 삼고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내륙 국가로 항구는 없으며 타슈켄트에서 한국에서의 운송 비용은 물동량 추이 등에 따라 상이하나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미화 3천 500 달러 가량 소요된다.

1) 우즈벡 내의 주요 운송 회사

Name	Contact information
“INTERNATIONALE CONTAINER TRANSPORT GMBH”, Germany	Tel: (998 71) 120 71 65, 252 22 14 / Fax: (998 71) 252 22 14 E-mail: ict@sks.uz / http://www.ict-transport.com
“ITS TASHKENT”, Japan	Tel: (998 71) 267 46 50 / Fax: (998 71) 267 46 55 E-mail: itsjapan@sarkor.com
“PANALPINA WORLD TRANSPORT”	Tel: (998 71) 120 77 39, 120 77 42, 152 51 19 Fax: (998 71) 120 77 40 E-mail: alpinaos@rol.uz / http://www.panalpina.com
“UZVNESHTRANS”, Uzbekistan	Tel: (998 71) 268 10 76, / Fax: (998 71) 268 20 00 E-mail: info@uzvt.uz / http://www.uzvt.uz
“MIS TAKA” Uzbek-Latvian Joint Venture	Tel: (998 71) 262 18 72, 262 79 16 / Fax: (998 71) 262 18 68 E-mail: market@mstk.com , uzmistaka@mstk.com.uz http://www.mistaka.com
“UZTEMIRYULCONTAINER”, Uzbekistan	Tel: (998 71) 150 11 63, 138 88 77 / Fax: (998 71) 236 26 59 E-mail: info@uzjdk.com / http://www.uzjdk.com
“SHOSHTRANS” Uzbek-Russia-Swiss Joint Venture	Tel: (998 71) 133 79 07, 138 87 17 / Fax: (998 71) 140 09 75 E-mail: refer@shoshtrans.com / http://www.shoshtrans.com
“FRANCESCO PARISI SpA”, Spain	Tel: (998 71) 144 29 12 / Fax: (998 71) 144 35 29 E-mail: elyor.yusupov@francescoparisi.com http://www.francescoparisi.com
“GREEN INTEGRATED LOGISTICS CO., LTD.” Korea	Tel: (998 71) 235 86 49, 235 47 66, 235 46 92 Fax: (998 71) 235 57 10 E-mail: green-tas@green-logistics.com http://www.green-logistics.com
“IBRAKOM FZCO”, UAE	Tel: (998 71) 254 00 19, / Fax: (998 71) 254 01 09 E-mail: elena.kanarskaya@kuehne-nagel.com http://www.kuehne-nagel.com
“SINOTRANS LAND BRIDGE TRANSPOR TATION CO.,LTD.”, China	Tel: (998 71) 120 44 12, 132 26 56 / Fax: (998 71) 132 11 07 E-mail: info@sinotrans.uz / http://www.sinotrans.uz
“LOGISTEAM”, Kazakhstan	Tel: (998 71) 132 20 34, 133 27 40 / Fax: (998 71) 132 25 69 E-mail: info@logisteam.net / http://www.logisteam.net

2) 우즈벡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한국 운송업체

o Name of the company: Taewoong Logistics
- Tel: (822) 2029-4374
- Fax: (822) 2029-4749
- E-mail: cis@twsc.co.kr
- site : www.e-tgl.com

o Name of the company: Turbo GLS Co., Ltd
- Tel: (822) 2231-1004
- Fax: (822) 2275-3194
- E-mail: turbocargls@turbogls.com
- site : www.turbogls.com

o Name of the company: Woojin Global Logistics
- Tel: (822) 3706-3418/3464
- Fax: (822) 756-3690/3860
- E-mail: woojin@woojingl.com

o Name of the company: First Express International
- Tel:(822)333 5711,(822)3141 0123
- Fax:(822)333 6344, (822)3141 1515
- Home page: http://firstexp.co.kr

o Name of the company: Ecovice Express
- Tel:(822)333 5711,(822)3141 0123
- Fax:(822)333 6344, (822)3141 1515
- Home page: http://www.ecovice.co.kr

o Name of the company: Pantos Logistics
- Tel:(822)3771-2138(2163)
- Fax(99871)252 2428
- Hompage:http://www.pantos.co.kr

o Name of the company: Seo Joong Logistics CO.,LTD
- Tel:(822)779-2000
- Fax:779-3044/5
- Home page: www.sjl.co. kr

Ⅳ.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매력도

우즈베키스탄은 '10년말 기준으로 인구 2,850만 명으로 비교적 인구가 많은 편이고 중앙아시아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지정학적으로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등 인근 국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이란, 러시아의 동부 시베리아 지역까지도 시장에 포함시킬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지역이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노동력이 풍부하고 동남아 등지보다 비교적 근면할 뿐 아니라 대부분 고등 교육을 이수하여 문맹률이 매우 낮고 인건비도 단순근로자가 월평균 100-150달러(제세 비포함)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아울러 토지는 국가소유로 대지 및 공장의 임차료가 매우 저렴하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료 등이 저렴하기 때문에 제조간접비는 매우 낮은 편인 점도 장점이다.

한편 물류이동의 어려움 및 고율의 관세로 인해 현지에서 물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완제품 수입시보다 상당한 물류비용 및 관세의 절감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인근지로의 수출시에도 CIS 국가간 관세협약에 의해 한국에서의 수입시보다 관세의 절감이 가능해 한국으로부터 CIS국으로 직접 수출시보다 가격경쟁력 면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10년 말 투자진출 총 누계액은 537백만 달러로서 러시아 다음의 우즈베키스탄 최대의 외국인 투자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한국 통계기준, 현지 금융을 포함할 경우 총 투자누계는 10억달러 상당으로 추정) 대우방적 등 대기업 이외에도 중소 기업을 포함 전체 100여 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기업활동을 벌이고 있다.

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 투자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에게는 투자 원리금의 송금보장, 국방산업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된 Negative system을 운영하고 있는 등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는 선진국 수준이다. 물론 외국인 투자는 등록사항으로 대외경제성에 심의를 거쳐야 하고, 2천만 불 이상의 대형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내각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현재까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등록이 거절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투자 금액의 하한선은 15만 불이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최저 외국인 투자 비율(외국인투자 기업으로 인정해주는 하한)은 30%로 정해져 있어 100%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도 가능하다.

1) 투자진출 시 유의사항

우즈베키스탄에 투자 진출하는 기업의 최대의 문제점은 현지화 환전이 어렵다는 점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건 별로 환전신청을 하여 심사 후 환전 받으며, 기업별 환전 쿼터제는 폐지되었다. 제조물품을 국내에 판매할 경우 판매대금 전액은 구좌에 입금되고 입금된 금액 중 회사의 경비로 지출되지 않은 금액은 건 별 심사 후 환전이 가능토록 되어있다. 통상적으로 외화환전에 적어도 6개월-1년씩 걸리는 등 현지화를 외화로 환전 받기가 매우 힘들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대우전자 같은 대기업들도 외화환전 문제를 주요인으로 하여 철수하였다.

환전 문제 이외에도 현지 관료들의 횡포와 비효율적 업무추진, 법률 및 제도의 미 정비 등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영업활동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현지 합작투자자와의 마찰

등도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투자결정 이전에 현지 법률과 제도를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현지 관료 등과의 인맥형성도 권장할 사항이다. 또한 합작투자 계약 시에는 예상이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 명문화해 둠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마찰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2) 투자유치정책

우즈베키스탄의 투자유치정책은 내용상 다른 나라의 것과 같은 표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 제한 분야도 방위산업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되며 투자원리금의 송금도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투자원리금의 송금은 현재 주재국내 외환사정 악화로 인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매년 "Annual Investment Program"이라는 선별된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는데 대부분은 수백만 불 이상의 투자자가 요구되는 분야가 대부분이고 동 투자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사업에 착수할 경우 일반 투자와는 달리 조세감면, 외환환전 및 기타 법에 명문화되지 않은 특혜까지도 부여하고 있다.

3) 투자유치관련 법규

외국인 투자관련 법규는 '94년에 제정된 "외국인 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과 '98년에 제정된 "외국인투자자보호법"(Foreign Investor Guarantees Law) 그리고 외국인 투자의 유치 확대를 위해 제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적인 혜택부여에 관한 대통령령" (Presidential Decree On Additional Incentives and Privileges Granted to Enterprises with Foreign Investments) 등 3가지 법률에 의거 관리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투자에 관한 혜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법규는 대통령령이고 나머지 두 법규는 기본적인 방향만이 언급되고 있다.

다. 투자유망분야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는 주로 에너지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러시아 루코일(Lukoil)사는 부하라 지역의 캄딤(Kamdym) 천연가스전 개발을 위한 99억 5,2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우스트유르트(Ustyurt)지역의 탐사도 진행중이다.

아랄해 가스전개발을 위한 국제컨소시엄을 비롯, 한국과 우즈벡석유가스공사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수르길 가스 화학단지 건설 등 석유/가스분야의 외국인투자가 집중되어 있다.

통신시장은 한국기업이 진출하기 좋은 분야이다. 특히 이동통신 시장은 최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말 기준 이동통신 가입자수는 2,038만명으로 우즈벡 이동통신 시장은 러시아 업체가 장악하고 있으며 KT가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와이브로를 상용화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산물 가공분야도 유망한 분야이다.

기후가 온난하여 값싸고 질좋은 농산물 이 풍부한 우즈베키스탄에는 각종 과일과 곡식, 면화 등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특히 면화는 세계 2위 수출국으로 대우 텍스타일이 진출하여 면화를 원료로 이를 가공해 전량 수출하여 연 3,500-4,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2.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우즈벡의 투자 추이

2010년 12월말까지의 총 외국인 투자액은 32억 8,464만 달러이며, 이는 2009년 외국인 투자액 29억 4,168만 달러 대비 11.6% 증가한 수준이다. 우즈벡 정부보증하의 차관은 5억 272만 달러로 전체 투자액의 16.1%를 차지하였으며,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27억 5,736만 달러로 83.9%에 달한다.

우즈베키스탄 연도별 외국인 투자현황

(단위: 백만$)

	2008년	2009년	2010년	증감률
총 외국인 투자액	1,882.1	2,941.68	3,284.64	11.6
우즈벡 정부보증하의 차관	458.8	476.99	527.28	10.5
외국인 직접 투자액(FDI)	1,423.3	2,464.69	2,757.36	11.8

자료: 우즈벡 대외경제부

나. 국가별 투자현황

우즈벡은 국별 투자동향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국가별 투자동향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2010년도 對 우즈벡 투자국 순위는, 중국이 기존의 러시아를 제치고 최대 투자국이 되었으며, 다음으로 러시아, 한국 순이다. 그 외로는 터키, 독일 등의 투자가 활발하다.

동 연도 우즈벡에 투자한 국가 수는 40여 개 국으로 국별 투자액은 중국이 11억 8,075만 달러, 다음으로 러시아 6억 2,468만 달러, 한국 1억 2,975만 달러, 말레이시아 1억 1,000만 달러, 일본 7,091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다. 산업별 투자현황

우즈벡에서 가장 많은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산업분야는 석유·가스 분야이다. 특히 우즈벡의 풍부한 가스전 개발을 위한 러시아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하며, 중국, 말레이시아, 우리나라의 석유·가스 프로젝트 참여도 증가하고 있다.

석유·가스 다음으로 외국인투자가 많은 분야는 경공업분야로, 면화를 원재료로 하는 면방직과 봉제업이 주류를 이룬다. 우즈벡은 저렴한 인건비와 터키로부터 짧은 운송기간 등의 강점을 지니고 있어 터키의 의류제조 생산기지로서 발달되어 있다.

그 외에 이통통신 중심의 국내 통신시장 확대와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이 진전되면서 동 분야의 투자도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우즈벡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식품산업과 건축시장 활성화에 따른 건축자재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우즈벡 전체 산업에서 진행된 투자 프로젝트는 총 99개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광물, 에너지, 유가스 등의 분야가 전체 투자에서 69.0%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진행된 프로젝트의 수는 31개로 총 규모는 22억 6,757만 달러에 이르렀다.

2010년 우즈베키스탄 산업별 투자 현황

(단위: 백만$)

산업 분야	2009년 투자	2010년 투자	프로젝트 수
외국인투자 총액	2,941.68	3,284.64	99
광물, 에너지, 유가스, 화학, 금속	1,959.16	2,267.57	31
정보 시스템 및 통신, IT	382.42	246.11	3
건설 및 건축, 운송	47.07	231.29	11
금융, 경제이슈 및 대외 경제 관계	132.38	124.54	20
농업 및 수자원, 소비재	82.37	157.16	21
교육 및 위생시설,	123.55	109.71	11
기타	214.74	148.26	2

자료: 우즈벡 대외 경제부

3. 우리기업 투자동향

2010년12월말까지 우리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 설립한 법인의 수는157개 이며, 총 투자액은 5억 3,725만 달러에 달한다.

연도별 우즈벡 투자 현황

(단위: US $ 천)

년도	신규 법인 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92-99	26	486,971	215,900
2000	3	29,575	17,770
2001	2	71,965	60,177
2002	4	801	462
2003	5	5,776	5,252
2004	3	983	563
2005	10	14,557	8,695
2006	14	41,274	22,142
2007	32	342,795	70.043
2008	28	118,747	65,152
2009	14	41,100	32,323
2010	18	41,611	39,052
누 계	**157**	**1,185,230**	**537,25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US $ 천)

업 종	투 자 (2010년)		
	신규 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농림어업	2	2,171	472
광업	5	49,370	26,075
제조업	75	648,921	362,326
폐기물/환경업	0	52	0
건설업	12	4,305	3,053
도소매업	13	7,114	3,289
운수업	6	26,858	19,759
숙박 및 음식점업	8	50,479	17,239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4	38,100	36,862
금융 및 보험업	4	29,417	7,502
부동산 및 임대업	15	332,006	54,511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	5,919	5,553
사업지원 서비스업	2	512	4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	1	500	150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	1	150	45
합 계	**157**	**1,195,875**	**537,25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진출, 유치 통계

(단위: 건수, US $ 천)

구 분	누계(2010년 누계)	
	건수	금액
우리나라 진출	157	537,250
우리나라 유치	-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투자 인센티브

1) 외국인투자제한

o 법률상 명문화된 외국인 투자 제한분야는 "정부기관의 특별허가를 득해야 하는 분야"로 규정되어 있는데 산업별 승인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

내각 회의	o 무기류 및 그 부품의 제조, 수리, 판매 o 폭발물, 유독물질의 제조, 운송 및 판매
전력 생산업	o 석유 및 천연가스의 생산, 가공, 판매 o 파이프라인, 교량, 터널의 설계, 시공, 운영, 보수 o 관광업
내무부	o 하수처리시설, 관개시설의 시공, 운영, 수리 o 화재경보시설의 설계, 운영, 수리
보건부	o 의약품, 농산품의 판매
중앙은행	o 은행, 증권, 보험업

2)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o 우즈베키스탄은 대형 외국인투자를 강력히 선호하며 중소 외국인투자는 환영하지 않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자급 정책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국내에서 생산품으로 수출이 가능하거나 수입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가를 특히 선호 하고 있다. 그러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및 특혜” 관련 대통령령을 1996년 11월 30일 발효시킨 바 있다. 이 대통령령에 따르면 특정 요건에 부합될 경우 감세, 세금 면제 및 기타 혜택을 외국인 투자가에게 부여토록 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외국인 투자기업(EWFI: Enterprise with Foreign Investment)은 다음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법무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 최소 납입 자본금 미화 15만 달러 이상
- 1인 이상의 외국인이 기업 설립자에 포함되어야 함
- 외국인 보유 지분율 30% 이상

o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EWFI) 매출의 60% 이상이 자체 생산 제품 혹은 서비스 판매로 이루 어질 경우 외국인투자생산기업(PEWFI: Production Enterprise with Foreign Investment)으로 간주되어 일정세금 및 관세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데 세금혜택은 다음과 같다.

- 7년간 세금 면제 (우즈벡 정부의 투자 프로그램에 포함된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 기업 등록 후 1년간 세금 면제, 2년 차 75% 세금 면제, 3년 차 세금 50% 면제 (농촌 지역에 투자할 경우)
- 기업 등록 후 1년간 75%, Profit tax 면제, 2년 차 50% 면제
- 토지세 2년간 면제

o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생산기업 포함)은 특정 상품을 생산하여 일정 비율 이상을 수출 할 경우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내각 특별 의결 내용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은 우즈벡 정부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의 중요성 정도, 투자 규모 그리고 기타 요인들에 따라 추가 세금 감면을 받을 수도 있다. 투자 규모가 미화 2천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내각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의할 점은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에 등록된 기업들에 한해 외국인 투자생산기업 (PEWFI: Production Enterprise with Foreign Investment)으로 간주되어 우즈벡 정부가 제공 하는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o 2005년 4월 11일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서명해 7월 1일부터 발효된 “외국인 투자유치촉진에 대한 추가 조치”라는 명칭의 새로운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민영화 프로그램, 기업설비 현대화 및 재건 프로그램 및 농촌지역 고용창출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일정기간 각종세금을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 으로 하고 있다.

o 이 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해 면제되는 세금은 소득세, 재산세, 사회간접자본개발 및 토지개발세, 환경세, 중소기업단일세 및 도로세 등으로 투자 금액 미화 30만 달러 이상 300만 달러 미만의 경우 3년간, 300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은 5년간 그리고 1천만 달러 이상은 7년간 이들 세금이 면제된다. 이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또한 실업률이 높은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 지짜크, 카쉬카다리야, 수르다리야, 수르한다리야, 코레즘 지역, 나보이, 안디잔, 나망간 및 페르가나의 농촌 지역들에 대해 투자해야 하며 합작투자 기업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o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우즈베키스탄 국내에 등록 후 경화 혹은 신규 첨단 설비 형태의 투자를 실행해야 하며 면세 혜택으로 확보된 자금 전액을 우즈베키스탄 내에 재투자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 보증이 없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장기 이자소득은 소득세 산출 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 새로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요 기업 활동에서 발생된 손실은 5년간 균등 상각해야 하며, 면세혜택 자금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o 또한 우즈벡의 외국인투자 관련법이 향후 변경이 되더라도 면세혜택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에 의하면 면세혜택 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당 기업이 폐업할 경우 해당 기업의 과실송금 및 자본금의 우즈베키스탄 국외 반출은 기 면제된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만 가능 하며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외국인투자자 권리보장 및 보호조치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배당 이윤 세율 인상
- 추가 요건 도입, 과실송금 절차 복잡화, 외국인투자자 소득 국외 송금 제한(외국인투자 기업의 파산, 도산,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 보호, 외국인투자가의 범죄 행위 혹은 행정 절차 위반 혹은 법원 및 중재원 판결에 따른 과실 송금 중단 등으로 인한 비차별적 법률 절차 적용에 따른 외국인투자가 과실 송금 제한은 제외)
- 투자 규모에 대한 제한 조치 도입 및 외국인투자 최소 투자 금액의 인상을 포함한 투자금액에 대한 기타 추가 요건 도입

-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 도입
-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비자 연장 추가 절차 도입 및 외국인투자 시행 추가 요건 도입

o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될 경우 외국인투자자 권리 보장 및 보호 조치 신청에 대해 10일 이내에 승인토록 하고 있으며 보호 신청 서류 작성 시 외국인투자가는 해당 기관에 보호조치 적용을 통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활동 보호를 위한 대통령령 또한 7월 1일부터 발효 되었다. 이 대통령령에 따르면 기업 폐쇄, 은행계좌 중지, 금융제재 조치 등은 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나온 이후에 야 조치가 가능하게 되며 세무서 또한 기업의 조세 및 통화 관련범죄 행위가 입증된 이후라야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되며 대검찰청의 조세통화 범죄 담당국에서 수사를 개시하게 되었다.

o 아울러 기업활동 통제 기관들의 책임자들은 기업 들에 대한 불법 조사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며 법정에 소환될 수도 있어 기업들이 이들 기관 들의 불법 조사로 인하여 자신들에게 발생된 피해 보상을 법정 소송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업과 이들 기관들 간에 분쟁이 발생될 경우 경제 법정이나 중재 법정에서 해결될 수 있다.

o 2005년 8월 우즈베키스탄 내각은 “민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추가 조치”에 대한 대통령령 시행령을 의결, 발효시켰는데 이 시행령은 “외국인투자자 권리 보호 보장 및 조치”에 대한 관련 법규 3조 4항에 명시된 외국인투자자 보장에 대한 것과 4조에 명시된 외국인투자자 권리 보호 추가보장 조치에 대한 것으로, 이번 시행령 이후 우즈베키스탄에서 입법화 되어 시행되는 법률이 투자 환경을 악화시킬 경우에도 이번 시행령으로 보호받게 되는 외국인투자는 향후 10년간 동 시행령이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은 투자 보장 신청에 대해 “외국인투자자 권리 보호 보장 및 조치”에 대한 관련 법규 3조 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자의 직접 통보에 근거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 보호를 받기 원하는 외국인투자자는 관련 우즈베키스탄 정부 기관에 투자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정부기관 리스트는 이번 시행령 말미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통보 절차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무이며 이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투자보호법에 명시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o 이와 함께 우즈베키스탄은 2005년 10월 “기업 조사 제도의 축소 및 개선에 대한 추가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을 발표, 기업 활동에 대한 조사 범위, 대상 회수 등을 축소하고 개선하며 경제주체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국가통제 관련법 준수 의무 또한 강화하고 있다.

o 이 대통령령에 따르면 소규모 기업체 및 농부들에 대한 정기 기업활동 및 재무조사 등은 4년에 1회로 국한하고 있으며 기타 기업들에 대해서는 3년에 1회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신규 창업된 소규모 기업들에 대한 기업활동 및 재무 조사는 기업 등록 후 2년간은 면제 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이 조사결과에 따른 해당 관청의 지시를 모두 이행하고 자발적으로 모든 벌과금 납부 등을 이행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별도의 재정적 제재를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 또한 정부의 담당 관료들의 불법적 조사 행위가 있을 경우 범죄행위로 기소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 조사를 받은 해당 기업에 대해 재정적인 보상도 해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령은 “기업 활동 통제 정부 부서 조정 국가 위원회” 신설을 승인하면서 이 위원회에 2006년 기업 조사일정 수립 권한과 함께 명백한 사유에 근거한 기업에 대한 비상 조사허가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나. 참고: 생산물공유법협정(PSA)

1) 개요 및 세제혜택

- 우즈베키스탄의 생산물공유협정(PSA: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관련 법령은 2001년 12월 7일에 제정된 법령이 있으며 생산물 공유협정의 체결, 시행 및 종료 전반의 관계에 대해 통제하고 있다. 생산물공유협정은 주로 광물 자원의 생산에 적용되는데 특히 원유 및 천연가스 시추 및 채굴 등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 PSA 협정을 체결한 외국인 투자자는 지출한 경비를 생산물의 형태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은 상업적인 발굴이 시작된 해로부터 시작되고 해당 연도에 보상되지 않은 경비는 계약기간 내에서 다음해에 보상받을 수 있다. 경비 중 세금, 사업이나 다른 위험에 대한 보험, 투자자의 판매경비, 벌금 등은 경비에서 제외된다.

- 외국인투자자는 소득세, 토지세, 지하자원 사용세, 물사용세, 환경오염비, 급여에 대한 세금 등은 지불해야 하며, 그 외의 세금은 면제된다. 국내 법인에 의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된 제품, 작업, 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되며, PSA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제품, 작업 및 서비스의 수입이나 투자자의 생산지분 수출 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된다.

2) PSA 사례

- 러시아의 가스회사인 Gazprom사가 우즈베키스탄의 Shakhpakhty 가스전에서 2004년 4월 체결된 생산물공유협정에 따라 2005년 8월 가스 생산을 개시하였다. 협정기간은 13년이며 Gazprom사는 향후 2년간 이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미화 1천5백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 Gazprom사와 Uzbekneftegaz사는 2004년 2억 큐빅미터를, 2005년에는 5억큐빅미터의 가스를 생산하였으며, 생산된 천연가스 전량이 수출되었다. Gazprom사는 2005년 말 우즈베키스탄의 Ustyurt지역의 가스개발을 위한 또 다른 생산물 공유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은 45년으로 연간 천연 가스 생산량은 50억 입방미터로 추정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정부와 말레이시아의 Petronas사는 Ustyurt지역에 위치한 Akchalak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2008년 5월에 계약기간 35년으로 생산물공유협정을 체결한바 있다.

- 2008년 11월에는 우즈베키스탄 Surkhandarya주에 있는 Surkhan가스전 탐사에 대한 생산물 공유협정 및 착수에 들어갔으며 탐사는 최소 2천만 달러의 투자로 5년 동안 이루어 진다.

- 2009년 우즈베키스탄 국영 석유공사 Uzbekneftegaz와 말레이시아 Petronas사는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로 Shakhpakhty지역에 6억6천7십만 달러, Ustyurt 지역에 5억 달러, 총 11억6천만 달러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 관세혜택

- 1997년 11월 1일부로 모든 종류의 상품, 노동 및 서비스 수출에 대한 관세가 폐지되었다.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 국가로 상품 수출시 부가가치세, 특소세가 면제(기타의 경우 20%)되며, 외화획득 수출상품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필품 등의 원활한 수입을 위한 세율 인하와 자국 생산업체 보호를 위한 관세인상 정책을 병행하고 있으며 환전가능 여부(가능, 제한, 금지 품목으로 구분) 및 환전 규모의 차등 규제도 수입 억제의 간접적 수단이 되고 있다.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법인 설립

1) 법인 종류 및 특성

외국기업은 우즈베키스탄 내에 대표 사무소나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대표 사무소는 외국 법인의 부속 기관으로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외국 모기업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개인이 관리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라 활동하게 된다. 지사는 외국 법인의 부속기관으로 영업활동을 포함하여 외국 모기업의 활동 전부 혹은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 지사는 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립되며 최소자본금 등 외국 자본의 우즈베키스탄 현지 법인에 대해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설립 가능한 법인 형태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추가 책임회사, 일반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 기업연합 혹은 협회 그리고 개인 기업 등이 있다.

2) 주식회사(JSC: Joint Stock Company)

□ 정의

주식회사란 주주가 주식의 액면가치에 한해 책임을 지는 회사로 보유 주식 대금을 완전히 납입하지 못한 주주는 미납 주식 가치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의 의무에 대한 각종 책임을 지게 된다. 주식회사는 폐쇄 혹은 개방 형태일 수 있으며 개방형태의 경우 최소 주주 숫자에 제한이 없으나 폐쇄형태일 경우 최소 3명 이상의 주주로 구성되어야 한다.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여타 주주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개방형태의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법에 따라 주식 공개 매각을 통하여 자유롭게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회사 정관 혹은 주식회사 법에 따라 폐쇄 매각이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의 폐쇄 매각을 할 수도 있다.

폐쇄형태 주식회사의 주식은 설립자들 상호간에 한하여 혹은 사전 결정된 사람들에 한하여 배분될 수 있으며 전체 주주 숫자는 50명을 넘지 못한다. 전체 주주 숫자가 50명을 초과할 경우 6개월 이내에 공개형태로 전환하여야 한다. 폐쇄형태 주식회사의 주식 양도는 제한되며 증시에 상장될 수 없고 폐쇄형태 주식회사의 주주가 보유 주식 양도를 원할 경우 회사 정관에 따라 다른 기존 주주 혹은 법인 자체에 대해서만 매각이 가능하다.

□ 설립 자본금

주식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주주들이 매입한 주식의 액면 가격으로 결정되며 모든 주식은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 우선주 액면 가격은 전체 설립 자본금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 주식회사의 최소설립 자본금은 미화5만불 상당(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고시 환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화폐로 산정) 이상이어야 하며 폐쇄형태 주식회사의 최소 설립 자본금은 월 최저임금의 200배 이상이어야 한다. 폐쇄형태 주식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월 최저임금

기준 변화에 따라 증가 혹은 감소되어야 한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액면 가격 인하 혹은 발행 주식 감소 등을 통하여 감소되거나 주식 액면 가격 인상 혹은 발행 주식 증가 등을 통하여 증가될 수 있다.

□ 주식

주식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혹은 무기명식으로 발행될 수 있으며 우선주 혹은 보통주 형태로 발행될 수 있고 최저 액면 가액은 100숨이다. 우선주는 우선주 보유 주주가 주식회사법에 명시된 대로 이익 배당금 혹은 기타 권리에 있어 우선권을 가지는 것을 말하며 폐쇄형태 주식회사는 기명 주식만 발행 가능하다.

주주는 주식회사 등록 후 1년 이내에 주식 대금을 완전히 납입하여야 하며 주식 대금 납입은 현금, 유가 증권 그리고 기타 자산 혹은 재산권 형태로 가능하다. 주식회사 자체가 매입한 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 이익 배당금도 받지 못하고 매입 1년 이내에 재 매각되지 않을 경우 소각되어 그만큼 납입 자본금이 감소되어야 한다.

주식 배분 형태 및 기준은 회사 정관에 명시된다. 주식은 시장 가격에 따라 거래되어야 하며 회사 설립 당시에는 액면가로 매각된다. 주식회사는 회사 정관에 명시된 바에 따르거나 주주총회 의결 내용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모든 주주들은 주주명부에 등록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총 발행 주식, 액면가, 주주 보유 등록 증권 형태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 주주총회(GMS: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 기구는 주주총회이다. 주주총회는 연 1회 개최되며 연례 총회 이외의 회의는 비상회의로 간주된다. 회사 경영, 영업 정책, 회사 구조, 재무 상태, 이사진 선임 및 기타 문제들과 관련된 우선 순위가 높은 안건들은 주식회사 법 및 회사 정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두 주주총회의 의결권한에 속한다.

주주총회 고유 권한 범위 내 대부분의 의사 결정권한은 주주총회 이외의 다른 의결 형태로 위임될 수 없다. 대부분의 의사 결정은 단순 과반수(50% 이상)로 결정되며 주식회사 법에 명시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75%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하여야 한다.

주주총회는 총회 참석 의결권 주식이 총 발행주식의 60% 이상이면 유효하다. 주주총회 참석은 주주가 직접 혹은 대리인을 통하여 가능하며 모든 주주는 언제나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직접 참석이 가능하다.

□ 감독이사회(Supervisory Board)

감독이사회는 주식회사 법 및 회사설립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명시한 문제들을 제외한 주식회사 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 결정권한을 행사한다. 의결주식 보유 주주가 30명 이하인 경우 회사 정관에서 감독이사회 기능을 주주총회에서 수행하도록 명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주총회 개최 결정에 대한 고유권한을 보유한 회사 내의 특정인 혹은 특정 기구를 회사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감독이사회는 주로 시행, 준비, 금융 및 증시 정책, 감독 및 구조 기능 등 주주총회에서보다 낮은 우선 순위의 의제들을 취급한다. 감독이사회 및 의장 선임, 감독이사회 소집 및 개최 그리고 기타 감독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문제들은 회사설립 정관 혹은 내부 규정에 명시되어야 한다.

□ 경영진(Executive Body)

경영진은 최고경영자(CEO) 혹은 집단경영의 경우 최고경영진을 통하여 회사의 일상 활동을 관장하며 최고경영자 혹은 최고경영진은 주주총회나 감독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범위 내 혹은 회사정관에서 명시된 바에 따라 회사를 대표한다. 최고경영자 혹은 최고경영위원들은 그들의 경영행위에 대하여 다양한 책임을 지게 된다.

□ 감사위원회(Audit Commission)

감사위원회 및/혹은 외부감사는 회사의 재정 상태를 감독하며 그 기능은 주식회사 법 및 회사정관에 따라 통제된다. 감사위원회의 활동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규정에 명시된다. 감사위원회는 자체 주도하에 혹은 주주총회나 감독이사회 결정 혹은 의결권 10% 이상 보유 주주(들)의 요청에 따라 감사를 시행한다. 감사위원회 위원들은 감독이사회 이사를 겸임하지 못하며 주식회사 내 다른 어떠한 지위도 보유할 수 없다. 감독이사회 이사 보유 혹은 주식회사 경영진 보유 주식은 감사위원회 선임 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주식회사 연간경영실적보고서 및 재무제표 감사 및 승인을 위해 회사 혹은 주주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외부 감사가 선정되어야 한다.

3)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 정의

유한회사는 1인 혹은 1개 이상의 개인 혹은 법인들이 회사 설립 문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자본금을 주식으로 나누어 설립하는 회사를 말한다. 주식회사와는 달리 유한회사의 주식은 유가증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인 혹은 2개 이상의 법인들이 유한회사의 설립 문서가 설립 동의 및 회사 정관이 된다. 1인이 설립할 경우 설립 문서는 바로 회사 정관이 된다.

유한회사 설립 참가자들은 회사 경영활동 관련 위험에 대하여 납입 자본금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납입해야 할 자본금을 완전히 납입하지 않은 설립 참가자들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유한회사의 책임은 보유자산에 국한된다.

□ 자본금

유한회사 설립 자본금은 월 최저임금의 50배 이상이어야 한다. 모든 설립 참가자들은 회사 등록 시점에서 납입 신고 자본금의 30% 이상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 증명은 은행 발행 서류로 확인되어야 하고 잔여 납입 자본금은 1년 이내에 납입되어야 한다. 회사 설립 문서에 명시된 경우에 따라 회사 최고 기구가 승인한 납입 자본금의 변화 및 설립 참가자 들의 추가 자본납입은 회사 납입 자본금에 대한 설립 참가자들의 보유 지분을 변화시킬 수 없다.

□ 설립참가자 총회(GMP: General Meeting of Participants)

유한회사의 최고 경영기구는 설립참가자 총회(이하 “GMP”라 약칭)이다. GMP는 우즈베키스탄 유한회사법에서 최고경영기구의 기능이라고 명시한 특정 사안들에 대해 배타적인 권한을 보유한다. GMP의 고유권한은 주로 회사의 영업, 재정, 경영 및 구조적 사안들에 대해 망라하며 GMP는 최소 연 1회 이상 소집된다.

의결권 10%을 보유한 설립 참가자 들은 언제라도 비상 GMP 소집 요구 권한을 가진다. 대부분의 사안들은 회의 참석자들의 단순 과반수로 의결되며 회사의 주요 방향 및 영업 정책 혹은 다른 법인에 대한 경영참가 등과 같은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사안들에 대해서는 66% 이상의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회사 정관 개정 및 납입 자본금 증감은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야 한다.

유한회사는 최고경영자(CEO) 혹은 최고경영진이 회사의 경영 일상 관리에 대해 책임을 진다. 최고경영자 혹은 최고경영위원들은 GMP에서 선임되며 최고경영진 권한에 대해서는 최초 설립 문서에 명시된다. 주식회사와는 달리 유한회사는 감독이사회 설립 의무가 없으나 회사 설립문서에 감독이사회 설립을 명시하여 설립이 가능하다. 유한회사는 유가증권으로의 주식 발행이 금지된다.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혹은 감사)는 유한회사 최고 경영자 혹은 최고 경영진 활동을 감사할 권한이 있으며 감독이사회가 있을 경우 이사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유한회사는 정관에 회사 및 주주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외부감사 지정을 명시할 수 있다. 15인 이상이 설립한 유한회사는 감사위원회(감사)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감독 이사회가 존재할 경우 최고경영자 혹은 최고경영위원들은 유한회사의 감사(혹은 감사위원)로 선임될 수 없다. 감사위원들은 보통 GMP 참석자들 중 선임되나 회사 혹은 설립 참가자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외부인사도 유한회사의 감사(혹은 감사위원)로 선임될 수 있다. 감사위원 수는 회사 정관에 명시된다. 감사위원은 보통 유한회사의 연간 경영실적 보고서 및 재무제표를 확인, GMP에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유한회사 또한 연간경영실적보고서 및 재무제표 감사 및 승인은 회사 혹은 주주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외부 감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 추가 책임회사(ALC: Additional Liability Company)

추가 책임회사는 1인 혹은 1개 이상의 개인 혹은 법인들이 설립하는 회사로 납입자본금을 설립자들 간에 분배, 회사 설립 문서에 명시한다. 유한회사와 마찬가지로 추가 책임회사 또한 유가증권 형태의 주식 발행이 금지되며 회사 설립 문서 또한 유한회사와 동일하다. 추가 책임회사는 유한회사와 기구 구조가 동일하나 주된 차이점은 설립 참가자들의 책임 범위로 납입자본금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회사와는 달리 추가 책임회사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책임을 지게 된다.

유한회사와는 달리 추가 책임회사의 설립문서에는 설립 참가자들이 납입자본금의 몇 배까지 책임을 질 것인가를 명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책임 범위는 모든 설립 참가자들에게 동일한 배수가 적용된다. 만약 설립 참가인들 중 1인(혹은 1개 법인)이 회사 경영 책임으로 파산하게 되면 설립 문서에서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한 나머지 설립 참가자들이 자본금 납입 비율에 따라 회사의 책임을 나누어 지게 된다.

4) 합자회사(Partnerships)

□ 일반 합자회사(GBP: General Business Partnerships)

일반 합자회사는 회사 설립 참가자들이 회사 경영 전반에 걸쳐 무한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 유한 합자회사(LBP: Limited Business Partnerships)

유한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설립 참가자들이 설립하는 회사로 자본금을 납입하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납입한 자본금에 한해 책임을 지는 참가자들과 회사 경영에 직접 참가하면서 무한 책임을 지는 설립 참가자들도 구성된다. 유한책임 참가자와 무한책임 참가자는 구분되며 겸할 수 없다. 즉 유한책임 참가자가 무한책임 참가자로서의 추가 자본 납입은 금지된다.

□ 납입자본금 및 설립문서

합자회사는 창업 합의 문서가 곧 회사 설립 문서가 된다. 납입 자본금은 최소 월 최저 임금의 50배 이상이어야 한다.

□ 설립 참가자들의 권리

합자회사 회사 설립 참가자들은 회사 창업 합의 문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파트너쉽을 탈퇴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하지 않고 파트너쉽을 탈퇴할 경우 최소 3개월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합자회사의 경영은 회사 설립문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설립참가자들만 참가할 수 있다.

5) 개인회사(Private Enterprises)

□ 정의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인회사제도는 2003년 “개인회사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다. 개인회사는 개인이 단독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회사를 말하며 설립자가 회사 정관을 승인하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설립자는 회사 경영과 관련하여 회사 자산 범위 이외의 추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외국인이 개인회사를 설립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외국인이 설립한 개인회사는 외국자본이 설립한 여타 형태의 회사들에 대해 부여되는 특권을 누릴 수 없다.

□ 납입 자본금 및 기업 경영

개인회사는 납입자본금 및 기업 경영에 대해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설립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으며 자본금은 현금, 유가 증권 혹은 기타 자산 형태로 가능하다. 개인회사는 설립자가 소유자로 경영을 직접 하게 된다.

나. 법인 등록 절차

1) 납입 자본금 요건

외국인 소유 법인 등록의 등록 절차는 납입 자본금 규모가 미화 15만불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가 각각 상이하다. 자본금이 미화 15만불 이상인 경우는 외국인투자기업(EWFI: Enterprise with Foreign Investment)으로 간주되어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에 등록하여야 하지만 자본금이 미화 15만불 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자본참여기업(CWFP: Company with Foreign Participation)으로 간주되어 기업 소재지 지방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EWFI: Enterprise with Foreign Investment)의 경우 1인 이상의 외국인이 기업 설립자에 포함되어야 하고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시 키지 못할 경우 외국인자본참여기업(CWFP: Company with Foreign Partici - pation)으로 간주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을 포함한 기업 설립의 정부기관 등록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내각은 2003년 "기업의 정부기관 등록, 기록 및 허가 발급 절차 관련 규정"을 승인했다. 이 규정에는 외국인자본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통일된 등록 서류 체크리스트가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 규정은 기업 등록과 동시에 등록기관이 등록 후 대부분의 조치를 취할 때 준수해야 하는 등록 개념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등록 기관은 기업 등록 시 다음 등록 내용을 다루게 된다.

○ 납세 및 통계 관련 기관에 대한 등록
○ 연금, 고용, 사회 보장 및 도로 기금에 대한 등록
○ 내무부 혹은 내무부 관련 부서로부터의 회사 인장 및 철인 사용 허가 취득
○ 기타 기업 활동 관련 필요한 허가(토지 등록, 거주 공간의 사무 공간으로의 편입 재등록 등)

2) 법인 등록

(자본금의 초기 납입금이 지적재산권 기여 형태의 경우) 자본금에 포함될 납입 대상 지적재산권 평가 액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정부 과학기술위원회 의견서: 외국인 투자 기업(EWFI)의 경우 예치금이 미화 45천불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자본참여기업(CWFP)의 경우 외국자본 지분이 없는 우즈베키스탄 국내기업의 경우와 같이 기업설립 최소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 정부기관 등록수수료 납부 영수증

○ 합작투자기업과 그 지사 혹은 자회사는 월 최저임금의 5배에 해당되는 금액과 미화 500불을 납부.
- 100% 외국인 소유 기업과 그 지사 혹은 자회사는 미화 2천불을 납부함.
- 이 금액은 납부 시점의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고시 환율에 따른 우즈벡 숨화로 납부되어야 하며 공식 환율 확인 영수증도 함께 등록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외국기업의 경우 해당국 기업 등록 요약본 및 주거래은행이 발급한 "양호한 신용상태"에 대한 서신
- 해당국에서 공증된 후 해당 지역 주재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영사과에서 인증되어야 함(해당국에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이 주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국 외무부와 우즈베키스탄 주재 해당국 대사관에서 확인된 후 우즈베키스탄 외무부 영사부에서 추가 인증되어야 함)

○ 관련 통계국에서 발급한 회사명 등록 증서

○ 회사 인장 및 철인 스케치 3부

○ 외국기업 사무소 주소를 확인하는 임대주 서신 혹은 부동산 소유 증명

등록기관의 제출 서류 심사 등 모든 적법성 심사 및 기업의 정부기관 등록(등록 후 절차 포함)은 등록 서류 제출 시점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내지 1개월 이내에 종료된다.
등록기관은 기업 설립 문서(회사 정관 혹은 창업 합의서)를 등록한 후 등록 확인서와 기업 설립 문서 등록 원본에 서명, 봉인한 후 "등록 후 절차 확인 문서"와 함께 해당 기업에 준다. 기업은 등록기관을 통하여 정부에 등록한 후 법인으로의 권리를 확보하게 되며 기업 존재를 인정받는다. 기업의 공식 주소가 바뀔 경우 해당 기업은 10일 이내에 등록기관, 세무서 및 통계국에 주소 변경 통보 서신을 발송하여야 한다.

기업 설립 문서 내용이 변경되거나 수정될 경우 해당 기업은 재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업 설립 문서가 수정된 경우 해당 기업은 1주일 이내에 등록 기관에 모든 관련 문서를 첨부하여 재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초기 등록비용의 100%에 해당되는 재등록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나 기업 설립 문서가 변경 혹은 수정되더라도 납세 등록 및 정부 등록 번호가 바뀌지 않을 경우에는 초기 등록비용의 50%에 해당되는 재등록 비용을 납부하면 된다. 기업 공식 주소 변경 시에는 재등록 비용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다. 투자방식

법인 등록의 경우 납입 자본금 요건을 살펴 보면 외국인 소유 법인을 등록할 때 납입 자본금 규모가 미화 15만불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가 각각 상이하다. 자본금이 미화 15만불 이상인 경우는 외국인투자기업(EWFI: Enterprise with Foreign Investment)으로 간주되어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에 등록하여야 하지만 자본금이 미화 15만불 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자본참여기업(CWFP: Company with Foreign Participation)으로 간주되어 기업 소재지 지방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EWFI: Enterprise with Foreign Investment)의 경우 1인 이상의 외국인이 기업 설립자에 포함되어야 하고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외국인자본참여기업(CWFP: Company with Foreign Participation)으로 간주된다.

6. 투자입지여건

가. 자유무역협정 체결현황

우즈베키스탄은 자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들과의 FTA 추진에 적극적인 의사표명이 없는 상태이나 CIS 국가간 협정을 체결하여 담배, 설탕, 주류를 제외한 품목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2011년 2월 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은 교역/경제/과학/기술/문화 협력에 관한 우즈벡-투르크멘 정부간 위원회의 제6차 회의에서 투르크메니스탄측에 양국간 자유무역체제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동년도 3월에는 우즈벡-파키스탄 간 장관급 제5차 회의에서 양국간 자유무역체제에 관해 논의한 바 있다.

우즈베키스탄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현황

대상국	협상개시일자 및 타결일자	추진현황
CIS 10개국	1994.4.15 타결	CIS 국가간 무관세 협정체결 해당국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몰도바, 러시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키르키스스탄 - 예외품목: 담배, 설탕, 주류는 면세대상에서 제외

나. 투자환경종합평가

S&P, Fitch, Moody's 등 3대 신용평가기관은 아직까지 우즈베키스탄에 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나, OECD는 2008년 1월 신용등급을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향조정한바 있다. 최근의 높은 경제 성장 및 대통령 선거 종료에 따른 정치적인 리스크 감소, 수풀상품 가격 호조 및 러시아와 아시아 국가로부터 FDI 증가로 견조한 상승이 기대됨에 따라 상향조정 되었다. 또한 대외채무가 낮은 편이고 에너지 수출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늘고 있어 유동성 위험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IMF는 우즈베키스탄의 무역 및 외환 통제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으며 경제발전 지속을 위해서는 신중한 재정정책 추진, 금융개혁, 무역장벽 완화, 현지화의 평가절상을 용인하는 유연한 환율정책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반적인 투자제도 등 외국인 투자 기억의 경영환경이 단기간에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내수시장이 아닌 제 3국 수출을 위한 식품가공, 면방 분야 진출이 유망 하며 대기업의 경우 발전 및 석유화학 등 인프라 정비와 관련된 사업의 참여가 권장된다.

다. 주요인프라현황

1) 전력

중앙아시아 통합전력망(the Central Asia Integrated Power Grid)을 구성하는 발전설비의 50%가 우즈베키스탄에 위치해 있으며 37개의 열병합 및 수력발전소를 보유하는 비교적 우수한 전력 인프라는 구비하고 있다. 러시아 제외 시 CIS 국가 중 최대 전력 생산국가이다.

2009년 기준 주요발전소현황

구분	발전소명	생산능력
열병합	Talimardjan	3,200
	Sirdarya	3,000
	New-Angren	2,100
	Tashkent	1,860
	Navoi	1,250
수력	Charvak	620

자료: Power Uzbekistan

2) 상·하수도

상수도는 도시지역 보급률 97%에 달하지만, 지방의 경우 68%에 그치고 있다. 전국적 누수율은 30-50%에 달하며 대도시의 물낭비가 지적됨에 따라 적절한 요금징수, 소비량과 누수량의 파악을 위한 미터기의 설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수도 보급률은 도시 73%, 지방 48%로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다. 대도시 하수도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자금부족으로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상하수 프로젝트의 개발은 농업수자원부가 주관하며 국영 건설회사인 우즈보드스토리 (uzvodstory)가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데 수로, 급수, 관개, 토지개간 등과 관련된 인프라 시설 건설을 책임지고 있다.

3) 도로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도로사정이 양호한 편으로 주변국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과 연결되어 있다. 도로는 총 8만 1,600km

로써 포장도로는 7만 1,200km이며 도로는 화물수송보다 여객 운송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대외무역에서 수입의 4%, 수출의 약10%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외 도로운송의 80%가 터키와 이란에 집중되어 있다.

주요 도로망 현황

명칭	도로망	
RD 1	(러시아, 중국) - Chimkent(카자흐스탄) - Tashkent - Samarqand - Bukhara - Alat - Farap(투르크메니스탄) - (이란 등)	
RD 2	Tashkent - Kokand - Andijan - Dustlik - Osh(키르기스스탄) - Kashgar(중국)	
RD 3	Samarqand - Karshi - Termez -	Saryasiya - Dushanbe(타지키스탄)
		Ayritom - Hayratan(아프가니스탄)
RD 4	Samarqand - Jaetepa - Panjikent(타지키스탄)	
RD 5	Bukhara - Nukus(카라칼팍자치공화국 수도) - Kungard - Beynue - Astrakhan(러시아)	

자료: ADB

4) 철도

현재 철도는 국가의 우선사업 중의 하나로 철로 확장 및 개선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타슈켄트 주변과 타슈켄트-사마르칸트 구간 등 620km가 전철화되어 있으며 복선화 구간은 430km, 지하철구간은 31km(타슈켄트시 1977년 개통)이다. 철도는 수입의 96%, 수출의 90% 담당하며 실질적인 수출입화물 운송을 전담하고 있다. 국영합작기업인 우즈베키스탄 테므르욜르(Uzbekistan Temir Yulli)가 철도인프라 관리 및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철도망과의 연계성 제고 및 국내 청도네트워크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통관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독일 부흥은행(KFW) 등으로부터의 차입과 자체 자금조달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철도망 현황

명칭	철도망
RL 1	(러시아, 중국) - Chimkent(카자흐스탄) - Tashkent - Samarqand - Bukhara - Turkmenabad(투르크메니스탄) - (이란 등)
RL 2	Tashkent - Nou(타지키스탄) - Andijon - Osh(키르기스스탄)
RL 3	Samarqand - Karshi - Talimarajan(투르크메니스탄) - Kelif(투르크메니스탄) - Termez - Dushanbe(타지키스탄)/Hayratan(아프가니스탄)
RL 4	Samarqand - Navoi - Karakalpakiya - Oasis(카자흐스탄) - (러시아,유럽)

자료: ADB

5) 항공

우즈베키스탄은 유라시아를 최단으로 연결하는 항공교통 중심지로서 54개의 공항을 보유하고 있다. 포장활주공항은 33개이며 대형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공항은 6개이다. 우즈베키스탄 최대 항공사인 국영 Uzbekistan Airways(UzA) 와 Aeroflot, Asiana, British Airways 등의 항공사가 40회 이상 타슈켄트 공항을 통해 취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UzA는 한·중·일 3국, CIS 및 유럽 주요 도시에 취항 중이다.

항공인프라 개선관련 주요 프로젝트 현황

(단위: 만 달러)

프로젝트	자금조달처	자금규모
타슈켄트 공항 항공관제 개선	Societe General	760
타슈켄트 공항 지원(국제터미널 재건축 등)	EBRD,KfW	420
타슈켄트 비행기 서비스 센터	KfW 등	1,780
나보이 공항 재건 및 개발	우즈베키스탄 정부,한진(대한민국)	3,470
사마르칸트, 부하라, 우르겐치 공항	일본	-

자료: Nextelligence

7. 노무관리

가. 노동법 개관

우즈베키스탄 국민 및 외국인의 우즈베키스탄 내 고용은 우즈베키스탄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 노사 관계는 단체 협약 및 개별 고용계약서에 따르며 고용 계약서는 우즈베키스탄 관련 법규에 명시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모든 국내외 기업들은 인력 소개소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고용할 수 있다.

나. 노동 관련 규정

○ 근로기록부

- 우즈베키스탄 국적인은 고용주에게 개인 인적사항 및 과거.현재의 근로기록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록부(Work Books)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근로기록부는 종업원의 일시적 질병 혹은 장애 등으로 인해 국가사회보장기금에서 지불되는 금액을 산정함과 아울러 종업원의 국가연금 권리를 결정하기 위해 발급된다. 종업원의 근로기록부가 없을 경우 고용주는 고용 개시 5일 이내에 신규 근로기록부를 종업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 수습 기간

고용 계약서에는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을 포함될 수 있다.

라. 최저 임금

임금은 정부가 정하여 고시한 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 2010년 12월 기준 월 최저임금은 4만 9735숨(미화 약 30 달러, 1 US$=1,650sum (2010.12월기준)) 이다.

최저임금

연도	최저임금
2009 년 8 월	33,645 숨
2009 년 12 월	37,680 숨
2010 년 12 월	49,735 숨

마. 주당 근무 시간

통상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이다. 종업원의 동의 시 시간외 초과근무를 할 수 있으나 일부 특정범주의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 초과근무가 허용되지 않는다. 시간외 초과근무는 2일간 4시간 혹은 연간 12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시간외 초과근무 수당은 정규 급여의 200% 이상이어야 한다.

바. 휴가

우즈베키스탄의 공휴일은 연간 9일이며, 연간 유급 휴가 기간은 근무일 기준 15일 이상이다

사. 병가

종업원의 질병 혹은 장애로 인한 일시적 결근에 대해 고용주는 급여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아. 출산휴가

출산 유급휴가는 출산 이전 최소 70일 이상, 출산 후 56일 이상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70일 이상 부여할 수 있다.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종업원의 정규 급여와 동일하게 급여가 지불되나 고용주가 국가 사회 보장 기금에 납부해야 하는 기부금에서 공제되는 형식으로 실제로는 모두 고용주에게 환불 되는 것이다.

자. 고용 비용

조세 제도 → 개인소득세 → 사회보장세 의무 납부 항목 참조

차. 우즈베키스탄의 외국 근로자

우즈베키스탄에서 외국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외국인 근로이민 담당청(Agency on Foreign Labor Migration Issues)”에서 외국인 노동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 면허를 취득한 기업은 모든 외국인 근로자별로 이 관청에서 별도의 노동 허가(확인)를 발급 받아야 한다.

외국인 근로이민 담당청은 모든 필요 서류 접수 후 30일 이내에 외국인 근로 면허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외국인 근로자 개인에 대한 노동 허가 발급 절차는 외국인 근로 면허 발급 절차와 유사하다. 외국인 근로 면허 및 외국인 근로자 노동 허가 모두 유효 기간은 1년 이내이다.

외국인 근로 면허 발급 수수료는 월 최저 임금의 10배이며 외국인 근로자 노동 허가는 무료로 발급된다. 외국기업의 우즈베키스탄 내 대표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 은 외국인 근로 면허 및 외국인 노동 허가 모두 필요치 않으나 대외경제 관계부에서 별도의 개인별 인증 카드(accreditation card)를 발급받아야 한다.

8. 조세제도

가. 세제 개관

우즈베키스탄 세제를 규정하는 주요법률은 조세법(The Tax Code)으로 1998 년 1 월 1 일자로 발효되어 이후 수 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으며 2008 년 1 월부터 신조세법(New Tax Code)이 발효되어 적용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세금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o 국세
- 법인(소득)세 (corporate tax)
-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 소비세 (excise tax)
- 자원개발세(subsoil use tax)
- 수자원 사용세(Water use tax)
- 도로 기금 납입(road tax)
- 교육세(school tax)

o 지방세 및 기부금
- 재산세 (property tax)
- 토지세 (land tax)
- 기타 세금 및 기부금

나. 세제별 규정

1) 기업이윤(소득)세

□ 납세자 지위

우즈베키스탄에서 설립되었거나 등록된 법인(그리고 외국 등록 기업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주요 사업 행위가 이루어지는 법인)은 과세 대상 우즈베키스탄 거주자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및 국외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우즈베키스탄 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해 활동하는 비 거주 법인은 고정사업장과 연계된 우즈베키스탄 내 소득원에 대해 이윤세를 납부하며 이때 이러한 이윤과 관련하여 조세법에 규정 된 공제액을 빼고 세금이 부과된다. 고정사업장과 연계되지 않은 비 거주 법인의 이익은 소득원이 우즈 베키스탄에 있다면 총수입 에 따라 공제액 없이 소득원에 대해 과세된다.

□ 적용 세율

2011 년 기준 일반 법인세율은 9%이다. 특정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에서 다음과 같은 특혜를 받는다.

o 상품, 용역 혹은 서비스 전체 판매량의 30% 또는 그 이상을 수출하는 회사에 이윤세 50% 감면
o 상품, 용역 혹은 서비스 전체 판매량의 15%에서 30%를 수출하는 회사에 이윤세 30% 감면

우즈베키스탄 비거주 법인 고정사업장의 과실 송금은 10% 과세 대상이 된다. 2005 년 6 월 20 일자 대통령령으로 소규모 및 영세 사업장에 대해 몇가지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그 중 몇 가지는 위에 언급되어 있음) 통합 이윤세, 연금, 도로 및 학교 기금 납입, 정부로부터의 토지 임대료, 리스료 대신 통합세가 도입되었다.

□ 통합세(Unified Tax)

2005 년 6 월 20 일자 대통령령에 의해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통합세를 도입하였다. 이윤세, 연금, 도로 및 학교기금 납입, 정부로부터의 토지 임대료, 리스료 등을 통합하여 단일 지급하는 통합세가 도입되었다. 2010 년에는 소규모기업(micro firms) 및 중소기업에 대한 통합세를 8%에서 7%로 인하하였으며 2011 년 1 월 기준 6%로 추가 인하되었다.

통합세 적용대상법인은 다음과 같다.

- o 중소기업(알코올 생산업자, 통합토지세 및 고정 세액 납부자, PSA 참여자 제외)
- o 민간 공증사무소
- o 복권 및 게임관련 법인
- o 콘서트 등 이벤트 기획사
- o 농산물 생산업체(통합토지세율적용 기업 제외)
  - 단, 2011.7.1 부터 통합세액이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의 토지세의 최소 3 배 이상이 되도록 함.
  - 농업기업이 납부하는 단일 토지세는 5%에서 6%로 상향 조정

업종별 통합세율

(단위: %)

구 분	세 율
일반(중소기업)	6
민간 공증사무소	50
콘서트 등 이벤트 기획사	30
농산물 생산업체(통합토지세율적용기업제외)	6

우즈베키스탄에 설립된 상설 법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비 거주 법인은 지사 영업행위 결과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이때 조세법에 규정된 공제액을 제외한 만큼 세금이 인하되어 부과된다. 비 거주 법인의 우즈베키스탄 상설 법인 영업 행위와 관련 없는 이윤에 대해서는 이윤 발생원이 우즈베키스탄일 경우 공제액 없이 세금이 부과된다.

□ 원천징수세

우즈베키스탄 내 고정사업장의 영업 행위와 무관한 우즈베키스탄 소득원은 원천 징수세 과세대상이다. 그러한 소득원에 대해서는 소득이 우즈베키스탄 국내 혹은 국외에서 지불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되며 공제액 없이 소득금액 전체가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조세법에는 우즈베키스탄 발생 소득이 우즈베키스탄 국내 영업 활동에만 관련된 것인지 혹은 외국에서 발생했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 지불된 국외 영업활동과 또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원천징수세율

소 득 원	원천징수세율
배당금 및 이자	10%
보험료	10%
통신 및 운송 활동	6%
로열티, 임대료, 관리 서비스/컨설팅 수수료 그리고 기 과세된 소득을 제외한 기타 소득을 포함하는 서비스로 발생된 소득	20%

주: 원천징수세율은 적용 가능한 국제조약에 따라 인하될 수 있음 (이중과세 조약 참조)

□ 과세 대상 근거

이윤세를 산출할 때 과세대상 근거는 아래 기술된 비용을 포함하여 비용 및 기타 매출 발생을 위해 지출된 비용 및 기타 매출 발생을 위해 지출된 비용 및 경비를 공제한 전체 매출액(상품, 용역, 서비스 및 기타소득)을 포함한다.

- o 부가가치세 공제액, 소비세, 재산세, 토지세, 자원개발세, 환경세, 수자원사용세 및 관세
- o 단기 은행 대출 및 여타 금융 기관의 대출에 대한 이자 지불액. 단 각종 벌과금 제외
- o 종업원 급여 지출(은행, 보험회사, 비디오/오디오, 경매, 카지노, 비정부 기구 발행 복권, 콘서트 연주 등에 대한 지출 제외)
- o 유가 증권 발행과 관련된 지출액
- o 회사의 경자동차 유지 및 임대와 관련된 지출액
- o 광고비
- o 통신비 및 장거리 전화비용
- o 과세대상에서 가장 중요한 비공제 지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법정 한도 초과 접대비 및 출장비
  - 체포되지 않은 범법자의 자금 횡령으로 인한 손실과 기타지출

□ 공제

다음 지출은 세금 산출 시 공제된다.

- o 환경 및 자선 기금에 대한 기부
  - 과세 대상 소득의 1% 이내
- o 생산 개발, 확대 및 재건 비용 – 과세 대상 소득의 30% 이내

□ 감가상각

소득세 산출 시 적용되는 최대 감가상각률

고정 자산 그룹	감가상각율
자동차, 도로상 사용 목적의 엔진부착 트랙터, 특수 공구, 재고, 악세서리, 컴퓨터 및 컴퓨터 관련 장비	20%
트럭, 버스, 특장차 및 트레일러, 기계류, 공업설비, 단조 및 압연 기계, 건설 및 농업기계/설비 및 사무용 가구	15%
철도, 해상, 하상 및 항공 운송, 발전 및 난방 기기, 전기 및 터빈 기기, 송전 및 통신 기기, 파이프라인	8%
건물, 건축 및 구조물	5%
위에 포함되지 않는 감가 상각 가능자산	10%

□ 납세 신고 및 납부

납세를 위한 회계연도는 캘린더 연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용한다. 대부분 법인의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차년도 2월15일까지 국세청에 재무제표와 함께 납세 신고를 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 내 비 거주 법인의 우즈베키스탄 현지 대표사무소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은 국세청에 차년도 3월25일까지 세금 환급 신고를 해야 한다.

2) 개인소득세

□ 납세자 지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시작시점에 관계없이 12개월 내에 183일 이상 실제로 거주한 개인은 과세 대상 거주인(resident)으로 간주된다. 거주 납세자는 우즈베키스탄 국내외에서 번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우즈베키스탄 내 소득원에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혜택이 시장가격에 근거하여 세금부과 대상이 된다. 우즈베키스탄 법률 역시 거주 외국인에 대한 모든 추가 지불액(생활비 수당, 위험수당, 자녀 교육비, 식품비, 전지 휴가비 등)을 과세 대상으로 특별히 포함 시키고 있다. 각종 혜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명확하게 면제가 되지 않는 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과세 대상이 된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그 중에서도 특히 별거 수당, 퇴직금 및 연금소득 등이다. 거주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출장비, 주택임차료 및 회사차 운영비 상환액 등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득세율

2007년 1월 1일부터 최고 소득세율은 25%로 정해졌다. 과세대상 소득은 현재 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한 소득세율

과세 대상 소득	세율
최저임금의 6배 이하	10%
최저임금 6배(+1숨) 초과 10배 이하	최저임금 6배에 과세 +초과분17%
최저임금 10배(+1숨) 초과	최저임금 10배에 과세 +초과분25%

○ 비과세 최저 임금이 자주 변경 때문에 총액이 주기적으로 변경됨에 유의해야한다. 2010년 12월 기준 월 최저임금은 49,735숨이다.

○ 특별히 힘들고 위험한 조건의 근로를 포함하는 종업원 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은 25%를 초과할 수 없다.

□ 사회 보장세 의무 납부

고용주들은25%의 단일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보장세는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사회보장 기금 종류	할당 비율
연금 기금	피고용인 총소득의 24.8%(+해당 기업의 제품 판매수익 또는 용역, 서비스의 0.7%)
고용 기금	0.1%
노동조합연합회	0.1%(대표사무소 제외)

피고용인의 연금 기금 납부액은 급여의 3.5%로 정해져 있다. 누적 연금 제도법에 따르면 고용주와 노동계약을 맺어 일하는 고용인은 누적 연금제도에 참여해야 하며, 법인 지위가 없는 개인 사업 및 농장은 자발적으로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주 소득원 이외의 추가소득이 있는 거주 개인은 추가소득원이 우즈베키스탄 국내외를 막론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차년도 4월 1일까지 자신의 거주지 소재 세무서에 연간 총 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 회계연도에 주 소득원 이외의 추가소득이 없는 개인은 소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은 우즈베키스탄 도착 후 1개월 이내에 자신의 예상 소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계연도 이내에 우즈베키스탄에서의 활동을 종료하고 출국할 경우 출국 1개월 이전에 실제 소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업활동을 영위한 개인은 소득 및 지출신고서를 소득 및 지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소득 발생일로부터 1개월 종료 5일 이내
○ 회계연도 종료 후 차년도 1월15일 이전

다. 기타 국세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재화 및 용역의 생산, 판매, 수입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되며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설명된다.

2) 소비세

소비세 부과 대상 제품 구분 및 적용 세율은 내각에서 결정한다. 품목에 따라 상이하나 25%-60%에 달한다. 재화, 용역 서비스의 수출에 대해서는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되는 재화, 용역,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소비세를 부과하는 국가로 수출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자동차 연료 소비세는 다음과 같다(2011년기준).

○ 휘발유/경유(리터): 175 숨
○ LPG(KG): 145 숨
○ CNG(KG): 175 숨

3) 자원 개발세(Subsurface use tax)

자원 개발세율은 내각에서 결정하며 심토 종류에 따라 상이하다.
광불에 따라 3.5%에서 30%가 적용된다.

4) 교육세

2004년 12월28일 내각 결의에 따라 모든 법인은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한 비예산 기금에 연간 매출액의 1%(부과세가 차감되고 소비세가 적용되는)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5) 도로세

우즈베키스탄 내 모든 법인은 (사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연간 매출액의1%-1.5%를 도로 기금에 납부한다. 이 세금은 우즈베키스탄의 도로와 고속도로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6) 수자원사용세(Water use tax)

수자원 사용세율은 내각에서 결정하며 재화 생산 및 기술적인 수요에 의해 물을 사용하는 법인이 과세 대상이 된다. (2011년기준)

- 표면수(surface water): 1입방미터당 29.8숨
- 지하수 : 1입당미터당 37.9숨

7) 인프라개발세(Infrastructure development tax)

기업이윤세 지불 후 발생된 순이익에 근거하여 부과되며, 최대8%이다

라. 지방세 및 기부금

법인 및 개인은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많은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행정적 부담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소하다.

1) 재산세

기업 재산세율은 3.5%로, 과세 대상은 모든 고정자산 및 무형자산의 연평균 평가절하된 가치이다.

- 재화, 용역, 서비스 총 판매량의30% 이상을 수출 할 경우 재산세 50% 감면
- 재화, 용역, 서비스 총 판매량의15% 이상 30%미만을 수출 할 경우 재산세 30%감면

외국법인의 우즈베키스탄 대표사무소 재산은 재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 소유 재산세율은 내각에서 별도로 결정된다.

2011년 개인 재산세는 0.5%에서 0.75%로 상향조정 되었으며 도시에 소재하는 200평방미터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0.9%, 500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1.13%로 인상되었다.

2) 토지세

토지세는 내각에서 결정한 고정세율로 부과된다. 2008년 기준 토지세는 관개수로가 가능한 토지는 헥타당 2,000숨에서 150,000이다. 관개수로가 없는 Dry land는 헥타당 400-1,100숨에 달한다.

2011년 토지의 효율적 사용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토지세(임대료 성격)을 2010년 보다 20% 인상하였다.

3) 기타 세금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 각 주 지방 정부 그리고 타슈켄트 시 정부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부과금 및 수수료의 한계 세율은 다음과 같다.

세금 종류	한계 세율
휘발유 및 경유세	리터당 80숨
가스세	킬로그램당 80숨
사회간접자본개발세	기업 순익의 8%
증류주 및 담배 거래 면허 수수료	매월 최저임금의 5배
상거래 권리 부과금	매월 최저임금의 3.5배
법인 등록 및 기업활동 관련 개인 등록 부과금	월 최저임금의 5배

4) 벌과금

o 조세법을 위반할 경우
- 소득(이윤)을 은닉할 경우 은닉 소득(이윤) 전체를 압류하고 동일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
- 세금환급신청서 미제출(혹은 지연 제출 혹은 불완전 신청서 제출)시 지연 1일당 환급 대상 세금의 1%. 이 벌과금은 총 환급세액의 10%에 한해 부과됨
- 모든 형태의 무면허 행위에 대해 그러한 행위로부터 발생된 전체 소득액을 압류함과 아울러 동일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
- 세금 및 수수료 납부 지연 시 지연 1일당 납부액의 0.7% 벌금 부과

o 기한 내에 세무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법인에 대한 제재 조치
- 세무 당국 신고 없이 30일까지 영위된 영업 활동에 대해 월 최저임금의 50배(단 소득의 10% 미만)를 부과
- 세무 당국 신고 없이 31일 이상 영위된 영업 활동에 대해 월 최저임금의 100배(단 소득의 50% 미만)를 부과

o 납세자가 조세법을 여러 가지 위반할 경우 매 건별로 재정적 제재가 적용됨.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환전 통제

우즈베키스탄 숨 화는 2003년 말부터 국제 금융 거래 시 완전 태환 화폐로 바뀌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 합의 조항 8조 2(a), 3 및 4항에 명시된 의무를 수용하여 2003년 12월 15일부터 발효한다고 명확하게 IMF에 통보했다. IMF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IMF의 184 회원국들 중 그러한 의무를 수용한 157번째 국가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 무역에 따른 모든 통화 제한, 경화 가치 보유 귀중품(귀금속, 보석, 수표 등) 구입 및 매각, 이자 송금, 외국인 투자에 대한 배당금 지불, 우즈베키스탄 국내 외국인 투자에 대한 배당금 및 이익금 우즈벡 국외 송금 그리고 기타 특정 환전관련 등에 대한 제한조치들이 철폐되었다.

그러나 우즈벡 정부의 IMF 8조 이행 약속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다양한 비공식적인 외환 거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국외 송금을 위해 우즈벡 숨화를 외화로 환전하는 데에는 경화 부족 등 특정 행정적 어려움이 이러한 금융 자유화의 실제 효과를 감소시키고 있는데 투자 과실금 송금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은 2011년 2월 기준 6개월에서 1년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우즈벡 정부의 긴축 재정 및 금융 정책에 기인되는 것으로 여전히 대외 무역과 자본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외국 투자가의 입장에서 이외의 아무런 다른 합법적 대외 송금 방법이 없으며 우즈벡 정부가 수입 대체 산업 육성을 위해 이전의 수입 등록 제도를 철폐하고 대신 고율의 수입관세 및 수시 국경 봉쇄 등을 시행하여 외국 투자기업들이 필요한 생산 원자재를 반입하는데 엄청난 지연이 발생되기도 한다.

우즈베키스탄 법인들은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의 승인 없이 국외은행 계좌를 보유할 수 없으며 우즈베키스탄 정부 및 우즈베키스탄 통화 법에 명시된 바에 따른 비거주자의 경화 지불 및 일부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즈베키스탄 국내의 모든 거래는 숨화로 결제 되어야 한다.

나. 환율 종류

우즈베키스탄 숨화 환율은 세 가지가 존재한다. 먼저 정부환전소를 통하여 거래되는 공식 환율이 있다. 두번째로 환전 업무가 가능한 공인은행에서 사용하는 OTC(Over the Counter) 환전소 환율이 있다. 세 번째로 암시장 환율이 있으며 이는 불법이다. 2003년 말 환전소에서의 자유로운 환전 조치 및 공식환율과 암시장환율을 일치화 이후 암시장 환전 규모는 이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

실제로 정부환전소 및 공인은행들만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외환(CIS 국가들 화폐 포함) 매도가 가능하다. 공식 환율은 정부환전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 경매를 통하여 결정되며 이 환율은 세금 및 관세 납부 그리고 기타 공적인 목적(외국인투자기업 등록비 납부 혹은 비거주자 납세 등)에 사용된다. OTC 환율은 2000년 7월 1일 도입되었으며 외화를 벌어드리는 수출회사가 정부방침에 의한 50%의 외환 강제 매각 시 적용된다.

다. 현금 결제 제한

기업들 간의 거래 결제는 사업 형태에 관계없이 계좌이체로만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들의 소액 현금 보유 권리는 극도로 제한된다. 법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것은 급여 지불 및 출장비 지불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공인은행에서 급여의 현금 지급은 엄격히 통제된다. 최근에는 급여의 50%를 현금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은행에 예치, 카드를 사용토록 강제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설립된 기업들의 연간급여는 일정 수준으로 통제되나 외국인생산 기업 (PEWFIs)의 급여 수준은 우즈벡 정부가 국내기업만큼 엄격히 통제하지는 않으며 단지 최저임금기준만 적용을 받는다.

라. 경화 강제 매각

대부분이 기업들은 상품 및 서비스 등의 수출 관련 상업 행위로 발생된 외환 소득의 50%를 수입 발생 후 5일 이내에 OTC 환율로 강제 매각해야 한다. 외환 소득의 강제 매각 시

운송, 보험, 관세, 수수료, 은행 대출 이자 그리고 수출 상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서비스 구매 비용 등은 제외된다. 수출 증가 혹은 과학기술장비 수출로 인한 외환소득 재투자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외환 강제매각은 합작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지사를 포함, 모든 우즈베키스탄 기업들에 대해 적용되며 외환 강제매각 목적을 위해 법인계좌로 입금된 모든 수출 대금 외환 수입을 강제 매각 대상으로 간주한다.

납입자본금에서 외국자본이 50%를 차지하며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기업등록 시점으로부터 5년간 외환 수입의 강제 매각에서 제외된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외환 자본 납입의 경우나 외국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지사 계좌로 운영 경비로 전도되는 외환 또한 강제매각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즈베키스탄 국내에서 외환으로 결제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 거래로 발생되는 외환소득(비수출)과 같은 예외적 외환수입 또한 강제매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강제매각 요건이 명시되지 않은 특정 상황의 경우에는 관련기관을 접촉하여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권장된다.

마. 숨 화의 외환 환전

IMF 합의 조항 6조 3항에 허용된 바와 같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자본계좌 거래까지 자유 환전을 허용하지는 않고 있다. 자본이동거래라 불리는 그러한 거래에는 투자 지불(장단기 신용 포함), 대출 및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입/판매 등이 포함된다.

외환 환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거래은행이 먼저 환전 신청서를 내부 심사한 후 정부환전소에 환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전 신청서에는 정확한 외환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용도가 명시되지 않은 일반 용도로는 환전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는다.

환전권은 사례별로 부여되나 환전 신청서 제출 이전에 기업의 거래은행은 환전 신청 건에 대한 자체 전문가 의견을 정부환전소에 제출하여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정부환전소의 환전 허가는 정부 외환보유고, 해당 목적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의 외환 수요 예상 그리고 특정 신청 건에 대한 이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나 이득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환전 권한이 부여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장이 되지 못한다.

바. 추가 제한 조치

1) 외환 매입 과징금

1999년 1월 8일부터 자유 환전이 가능한 외환 매입을 할 경우 5%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다. 모든 법인 및 개인이 외환을 매입할 때 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나 정부예산으로 매입할 때, 정부지불보증하의 차관을 상환할 때, OTC 환율로 환전소에서 매입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적용 되지 않는다. 과징금은 외환 매입을 위해 지불되는 숨화에 대해 부과되어 숨화로 징수되며 정부환전소 및 공인은행들은 외환 매도 시에 이 과징금을 징수한다. 이 과징금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통 1%의 은행 수수료를 추가 징수한다.

2) 과실 송금에 대한 과세

우즈베키스탄 내에 항구적 기업을 설립한 외국 기업은 추가 과징금 납부를 인식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 세법에 따르면 기업 이윤에 대한 법인세 납부 이외에 비 거주법인 (외국기업)의 우즈베키스탄 내 기업의 모든 국외 과실 송금에 대해 10%의 세금이 부과된다.

V. Business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규모

우즈베키스탄은 '10년 말 기준으로 인구 2,850만 명에 수입규모 $87.9억을 기록하고 있어 인구 면에서는 중앙아시아 최대의 시장이다.

하지만 수입 규모 면에서는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아직까지 사회주의적인 통제경제 체제를 운영하 면서 외환사정에 따라 수입용 외화환전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시장특성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외화수입원은 면화, 금, 구리 등 1차 상품의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시장개방이 미진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았으며 주요 외화수입원의 국제가격상승과 가스 수출가격상승 등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산업구조는 전형적인 1차 산업 위주로 발달해 있고 인구의 약 60%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은 국영농장 및 집단 농장에서 자작농으로 분화되고 있으며 최근 민영부분이 약간 성장하여 전체생산의 1/4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금, 구리 등 천연자원의 채취를 위한 광업이 일부 발달해 있다.

한편 구 소련시절 산업시설의 분산정책에 따라 설치된 비행기 생산공장, 농업용 기계 공장 등도 일부 가동 중에 있으나 생산성은 매우 낮은 편이고 실제로 수입수요가 많은 소비재 경우는 생산기반이 거의 매우 약한 상태이다.

한편 '92년 독립 이후 자본주의 제도의 도입 과정, 특히 국유 재산의 사유화 과정에서 부유층이 형성되고 이에 따라 극빈층과 부유층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어 중산층의 형성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상품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좋은 편으로 가격은 저렴하나 품질은 우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즈베키스탄 최대의 투자 진출국으로 대우방적, KT, 한진 등의 진출이 대표적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산업기반의 취약으로 대부분의 한국상품이 수출에 유망하다고 할 수 있으나 환전 애로가 수출입의 애로점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경제발전의 최대 장애요인이 되면서 한국상품 수출에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우즈베키스탄이 내륙국가로 물류이동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인데 이는 한국상품의 가격경쟁력 저하와 납기지연 등 비 가격 경쟁력 저하로 작용한다.

2. 물가정보

(1US$=1677.00 숨/ 2011 년 3 월 28 일 기준)

구분	항목	가격 (숨)
식품류	쌀 1kg	2,600
	계란 12개	3,600
	쇠고기 등심 1kg	17,000
	돼지고기 등심 1kg	25,500
	우유 500ml	1,500
	식용유 1L	6,100
	생수 1L	700
	맥주 (하이네켄 355ml, 6팩)	33,000
	담배 1갑 (말보로 라이트)	2,700
	햄버거 (현지산)	4,000
	김치찌개 1인분	16,000
의료비	의료보험료 (4인가족, 치과제외 Full Cover, 1년)	2,500,000
	병원진료비(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150,000
	병원진료비(의료보험 0, 몸살감기 내과초진)	없음
차량관련	중형승용차 (2000cc, 신차, 오토, 에어컨포함 기본사양)	75,570,000
	무연휘발유 1L	1,400
	자동차 등록비	328,000
	자동차보험료 의무(2000cc,운전경력10년, 대인/대물커버,1년)	2,012,400
교통비	도심 1시간 주차료	1,500
	지하철 기본요금 (1구간)	500
	시내버스 기본요금	500
	택시 기본요금	2,000
통신	시내전화 요금 (3분)	300
	국제전화 요금 (3분, 한국으로 걸 때)	5,260
	휴대전화 요금 (1분)	318
	인터넷 월사용료 (ADSL 기준)	604,560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 (15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1,813,680
교육	외국인학교 초등 1년 수업료 (중상급)	29,682,900
	외국인학교 중등 1년 수업료 (중상급)	33,540,000
	외국인학교 고등 1년 수업료 (중상급)	36,390,900
숙박	특급호텔 (5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553,410
	중급호텔 (3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83,850
임금/노무	대졸 초임 (중상급 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 초임 월급여)	656,000
	생산직 초임 (학력무관 월급여 초임)	500,000
	매니저급 급여 (인사담당 5년 경력 과장급 월급여)	1,148,000
	주당 법정근무시간	40시간
	출산휴가일수	112일
	연간 국경일수	9일
	주5일 근무 여부	있음
기타	드라이크리닝 (정장 1벌 기준)	18,000

3. 바이어 발굴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의 경우 직업별 전화번호부(Yellow Pages)를 활용하거나 현지 비즈니스 유력지인 “Prestige”에 광고 게재 등을 통하여 바이어를 발굴할 수 있다. 또한 주요 상공회의소 등을 통하여 바이어 발굴을 의뢰할 수도 있으나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

□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1) 경제단체

o 상공회의소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Uzbekistan)
- 주소: 6, Bukhoro Street, Tashkent.
- 전화: (998 71) 232- 0901
- 팩스: (998 71) 232- 0903
- www.chamber.uz

2) 투자관련 기관 연락처

o Ministry of Foreign Economic Relations, Investment and Trade.
- Address: Tashkent city, Taras Shevchenko str., 1.
- Tel: (998 71) 238 50 00
- Fax: (998 71) 238 52 00
- www.mfer.uz

o UZINFOINVEST Agency
- Address: Tashkent city, Taras Shevchenko str., 1.
- Tel: (998 71) 238 91 00
- Fax: (998 71) 238 92 00
- www.uzinfoinvest.uz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문화적 금기 사항

우즈베키스탄은 인구의 70%가 회교도이기는 하지만 러시아의 오랜 지배영향으로 상당히 세속화되어 있어 종교에 대한 금기사항은 중동지역 국가들에 비해 훨씬 적은 편으로 대부분이 회교도라는 사실만 염두에 두고 있으면 된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회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종교를 화제에 올릴 경우 실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종교에 대한 대화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음주의 금지나 여성에 대한 금기사항도 중동지역처럼 엄하지는 않은 편이고 인구 중 10% 정도를 차지하는 러시아인들의 경우 상당히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우즈베키스탄 인들은 비교적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바 이들과 접촉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나. 수입 관행

수입 시 직접 통관상의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인보이스 가격은 세관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세관에서 설정한 기존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주의할 점은 계약 체결인데 모든 수출입 계약은 수출입 당사자간 계약체결 이후 대외경제부, 거래은행, 세관의 계약조항 전반에 걸쳐 다시 심사를 거치며 원칙적으로 동 심사단계를 거치지 않은 계약은 무효이다.

다. 상담 시 유의사항

우즈베키스탄 수입상들과의 상담 시 영어로는 거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러시아를 통한 상담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재국 통신사정이 개선되고 있으나 이메일 사용은 중소기업에는 일반화 되어 있지 못하며, 팩스 사용이 아직은 주요한 의사소통이다.

우즈베키스탄은 공식적인 통관회사가 없으므로 주로 바이어들이 통관을 추진하거나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통관을 대행해주고 있으나 가끔 통관이 지체 되거나 불가하게 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관은 바이어가 추진하도록 계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말로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철저히 문서로 남겨두고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서 작성시에도 변호사를 고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유익하다. 바이어들 중에는 가끔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조속히 서명하도록 재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럴 때 일수록 변호사를 통해 철저히 문서를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은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즈베키스탄에는 항구가 없으므로 CIF가격 조건으로 계약하는 대신 CIP조건(철도나 트럭으로 운반)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라.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일부 수입상들은 물물교환을 제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이들 수입상들은 구리, 면화 등을 제시하기도 하며 실질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수출 품목인 면화, 금, 구리, 면화, 금속 스크랩 류 등은 정부가 강력하게 수출을 통제하고 있어 수출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

마. 기타 비즈니스 관습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인근 중앙아시아 유목민족들과는 달리 우즈베키 스탄인들은 전통적으로 솜씨 좋은 농업인들로 알려져 있으며 “우즈베크인들이 나무를 키우려면 땅에 나무 막대기만 꽂으면 된다”는 카작 속담이 있을 정도이다. 우즈벡인들은 농업에 주로 종사하여 왔지만 오래 전부터 실크로드의 중심지에 살아 왔던 덕분으로 장사술 또한 자연스럽게 이들 생활의 주요 일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즈벡인들은 구 소련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 이후 예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천성적으로 장사에 더 관심이 많아 제조업 육성 등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여 신속한 경제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우즈벡인들은 상관습 특성상 흥정을 매우 좋아한다. 이들은 흥정 없는 거래에는 별 만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흥정 자체를 즐기는 편인데 흥정에 익숙하지 않은 입장에서 보면 거래에 실제로 관심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일 경우도 있다.

이들은 또한 약속 이행이 상당히 느린 편이다. 특히 당장 이용가치는 없지만 버리기 싫은 거래 건에 대해 이러한 이행 지연이 심한 편으로 보통 최종 결정 지연작전을 구사한다. 이러한 이행 지연은 더 이상 지연이 불가능 할 때까지 계속하며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야 거래 거부 혹은 면담 거절을 통보하곤 한다. 이러한 경향은 거래 조건이 자신에 유리하게 변경되는 것을 기대하기 보다는 또 다른 거래선을 물색함에 따른 것으로 이행이 지연될 경우 거래가 무산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와 함께 괜찮은 기존 거래선이 있어도 새로운 거래선을 끊임없이 찾아 나선다. 거래선을 변경할 때에도 이익이 더 큰 것을 찾기 보다는 거래 상대방의 태도에 더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거래 계약서보다는 상대방의 태도 그리고 서류보다는 말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5. 이주정착 가이드

가. 주택임차

우즈베키스탄에도 다수의 부동산 중개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어 집을 구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한편 외국인들은 대부분 단독주택을 선호하고 있으며 최근 새로운 아파트 건설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우즈벡인들은 자신이 보유한 단독주택을 개조, 보수하여 외국인에게 임대하는 사람이 늘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인이 가족을 동반하여 살만한 주택의 수는 제한이 되어 있고 외국인용 주택의 임차료가 상승하고있는 추세로 가격도 월2,500불~3,000불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건물의 위치, 건축년도, 구비된 가구, 내부시설 등에 따라 임차료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계약 방법으로는 보통 중개인을 통하여 거래하고 있으며, 아파트의 경우는 단기간 임차도 가능하다. 임대주는 가구 구입등의 명목으로 6 개월 또는 1 년분의 임차료를 일시에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차후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계약서를 세밀히 검토, 작성이 필요하다. 계약시 유의사항으로는 임대의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후 (가구 보충, 수선, 보수 등의 사항 이행 후) 대금을 지불해야한다.

입주시 유의사항으로는 계약전 상.하수도, 난방시설(보일러 용량) 및 전력 공급 문제, 전화선 문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여름철의 고온 등을 감안, 에어컨 설치 여부 및 통풍상태 확인 및 가구 상태, 각종 주방기구 등 가능한 입주전 리스트를 작성함이 바람직하다.

임대주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나 계약종료시 원상회복 관계를 위해 계약시 분명하게 해두는 것이 좋다. 특별한 주택관련 보험제도는 없으나 계약서상 임대주와 화재, 천재지변 등과 관련된 조항을 삽입,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자동차 구입

우즈벡 대외경제부에 지사나 법인이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이 입국시 일시 반입하는 수입자동차에 대해서는 관세가 없으나 이를 주재국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주재국민은 130%이상의 각종 세금(수입관세:70%, 부가세:20%, 특별소비세 등 40%)을 납부해야 하며, 외국인이 우즈벡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도 130%상당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지 구입시 한국 산자동차는 현대 대리점이 있어 구입이 편리하며, 현지 제조된 넥시아등 차량은 대리점이나 중고 자동차 전문시장인 "세르겔리"시장에서 구입가능하다. 대우자동차 현지 생산품인 넥시아(시에로) 와 티코, 다마스, 마티스는 현지 구입이 가능하며 각종 외제 중고차도 구입이 가능하다. 러시아제 중고차의 경우 대부분 노후 차량이며 성능은 많이 떨어진다. 차량 구입후 약 1주일 정도의 차량 번호판 및 운행 허가증 등록기간이 소요되며 자동차 보험관련 몇몇 보험회사가 최근에 생겼으나 보험료가 다소 비싼편이며, 현지인 소유 차량은 대부분 보험 미가입 차량이다.

시내에서는 주유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원거리 시골 지방 여행의 경우에는 사전에 비상 유류를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운전시 유의사항으로는 보행자들은 신호를 거의 무시하고 길을 건너기 때문에 운전시 유의가 요구된다. 시내 중심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보호 좌회전이며 우회전의 경우 신호를 받는 곳이 많으며 일방 통행이 많은 편이다. 속도제한은 도로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으나 보통 60-80km 이며, 안전벨트는 의무사항이고 시내 최중심 및 특별한 지역이외에는 주차금지 지역이 거의 없다.

한국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지정된 기관에서 간단한 건강진단 후 유효기간 6 개월의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동일한 절차를 거쳐 다시 발급 받을 수 있다.(한국 면허증 상시 휴대요) 유효기간 6 개월 이상 면허증은 우즈벡 국민과 동일한 절차의 건강진단과 정규시험(지식, 장내기능, 도로주행)을 거쳐 발급 받게 된다.

다. 이주행정절차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인근 CIS국가에 살고 있는 우즈벡인들의 이주 이외에 외국인들의 공식적인 이민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민정책 등은 따로 없다. 외국인들은 외교관, 투자기업지사, 국제기구 및 NGO의 소속직원, 우즈베키스탄 정부초청의 경우가 아니면 장기체류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 지사 체류비자는 통상 1년 복수비자가 발급되나 6개월만 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

라. 구좌개설

외화구좌는 개설은 가능하지만 외화를 현금으로 입금하는 것은 외화를 정당하게 확보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기 이전에는 매우 어렵다.

마. 생필품 조달

생필품은 있으나 조달하거나 가격이 품질대비 고가이므로 가급적 한국에서 이삿짐 발송 시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보내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의류 등은 현지 구입시 애로가 크다.

바. 한국식품 조달여건

우즈베키스탄은 농업국가이고 현지에는 17 만 명의 고려인들이 체류하여 두부, 콩나물을 비롯하여 육지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의 경우에는 조달이 어렵지 않지만 내륙국가이기 때문에 해산물의 경우에는 조달이 어렵다. 2-3 곳의 한국식품점에서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고추장, 된장, 라면, 과자, 기타 잡화류 등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나 가격은 한국내 가격보다 2 배 정도 비싼 편이다.

사. 레저 여건

인근 CIS 국가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98.9월 개장한 Tashkent Lakeside Golf Club은 18홀의 정규 골프장으로 눈이 쌓이는 겨울 1-2달을 제외하고는 거의 연중 이용 가능하다. 한편 11월 중순부터 3월까지는 스키를 탈 수가 있는데 스키장 시설은 미비하지만 눈은 천연설이다. 수영, 테니스 등은 시내 곳곳에 체육 시설에서 염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승마도 가능하다.

아. 치안 상태

우즈베키스탄은 경찰 국가라고 할 만큼 시내 도처에 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마피아가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정부의 통제 하에 있어 치안상태는 대단히 양호한 편이다.

자. 전화신청

전화가설에 비용은 않으며 라인개설에 1주일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인 거주자들은 임차 주택에 설치된 전화를 포함하여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차. 비품구입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가구류, 일반사무용품 등은 구입이 쉽지 않다. 이는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같은 종류의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한군데서 구입이 어렵고 어려 곳의 상점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가격은 전반적으로 비싼 편이다.

카. 자녀 교육여건

o Tashkent International School
- 위치: 타슈켄트 시내
- 전화번호: (998-71)191-9670/2
- 총 학생은 유치부부터 12학년까지 약 350명이다.
- 입학비는 없으며 등록금은 1-12학년까지 연 미$15,000 -$19,000임

o Tashkent Ulugbek International School
- Address: Tashkent city, Usman Nosir str., 17
- E-mail: secondary@tasulu.com , primary@tasulu.com
- www.tasulu.com
- 교육비:1~7학년: 연간 6,000$ / 7학년~11학년: 연간 7,000$.

타. 병원

대부분의 병원은 국영으로 운영되고 있고 무료로 진료되고 있지만 병원시설 및 서비스의 질은 매우 낮은 편이다. 최근 들어서는 상당한 고가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 클리닉 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수는 미미한 편이다. 한편 의사들의 봉급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어서 의사들의 수준도 높다고 할 수 없으며 가장 큰 문제점은 약품의 보급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기후가 건조해 전염병 등은 활발하지 않지만 위생상태가 낮아 간염 등은 널리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인들이 갈 만한 병원들은 다음과 같다.

o 친선 한방병원
- 1996년 8월 한의사 협회가 타슈켄트에 의료봉사단으로 활동을 벌인 후 현지인들이 반응이 좋아 세워진 병원으로 국립 타쉬미 제1대학과 대한한의사협회 해외봉사단이 자매결연을 맺고 1997년 6월 9일에 개업했다.
- 위치: 스따리 타시미 내(정문을 지나 왼쪽으로)
- 시간: 월-금(09:00-15:00)
- 전화: 289-4331, 289-4407

o MDS Service
- 응급환자 후송가능. 최신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병원.
- 주소: 보트키나 거리 110
- 전화: 169-7085(응급환자는 080)

o 회복 한방병원
- 한국인 운영의 한방병원
- 주소: 마시프 가라수4, 돔3(경찰대 후문 옆 500m)
- 전화: (998-71)166-5268, 119-6523

o Tashkent International Medical clinic
- 전화: 291-0142, 291-0726

파. 참고: 관련법 및 정책

1) 자산 취득

□ 관련 법규

o 부동산 및 부동산 권리 관련 법규는 1992년 12월 8일 채택된 우즈베키스탄 헌법, 1990년 10월 31일 발효된 우즈베키스탄 재산법(이후 개정) 그리고 1998년 4월 30일 입법화된 이후 개정된 토지법 등이 있다.

o 부동산 소유자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산을 소유, 사용 그리고 처분할 수 있고 소유물의 소유권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소유권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는 토지, 심층토, 동산 및 부동산, 지적재산권, 현금 그리고 유가증권 등이다.

□ 토지 소유권 제한

o 우즈베키스탄에서 토지를 소유(소유, 사용 및 처분 권리 등)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o 법인과 개인(5년이상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득한 영주권 소지 외국인 포함)은 소규모 영업 및 서비스 설비(소규모 매장 등)가 있는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개인 (내외국인 포함)은 또한 아파트 및 주택과 해당 아파트 및 주택 소재지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국내인 그리고 특정 경우의 외국인은 개인 영농, 정원 가꾸기 그리고 별장 건축 등을 위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 토지법에서 외국인 법인을 포함한 법인이 토지 소유권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규모 혹은 대기업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권은 내각 의결 혹은 대통령령 등을 통하지 않고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단 대사관 등 외교 대표기관 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1995년 11월 14일 발표된 "우즈베키스탄 내 외교 대표기관 및 국제기구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 관련 대통령령에 따라 외교 대표기관들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있으나 대표부 건물 및 대사 등 대표 관저 건축을 위해서만 토지 소유가 가능하다.

- 기업 및 기업소유주(외국인 포함)에 대해서는 토지의 완전 소유권보다는 보통 영구 혹은 잠정 토지 사용권이 부여된다. 영구 토지 사용권은 토지 소유 및 사용권리가 포함되나 처분 권리는 제외되며 이는 국가가 궁극적으로 토지 소유권자로 영구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잠정 토지 사용권은 영구 토지 사용권과 근본적으로 동일하나 부여 기간이 3년에서 10년 사이라는 점만 다르다. 토지 사용권은 해당 토지에 건축된 구조물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함께 이전된다.

- 외국인투자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가들은 상업 및 서비스 부문 설비, 주거지 및 해당 토지의 소유권, 토지 소유 및 이용(리스 포함)권 그리고 자연 자원 소유 및 이용권 취득 자격이 있다. 외국인투자가에 대해 토지는 내각과의 합의 내용에 따라 임대될 수 있으며 보통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임대된다.

□ **의무 확보**

- 부동산권의 근저당 설정권리가 우즈베키스탄에 존재하는 반면 관련법규가 제한적이고 일관적이지 못하며 관행 또한 아직 대부분 시험된 바가 없다.

- 우즈베키스탄 민법은 건축물 및 관련 토지 권리에 대한 근저당 설정권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업 전체 혹은 다른 복합재산권(동산 및 부동산 포함) 또한 저당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저당권 등록에 대한 법규 전반이 아직 채택되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기업의 자산은 전체보다는 개별로 저당권이 등록될 수 있다. 또한 건축물에 대한 근저당 설정은 해당 토지에 대해 동시에 설정될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 토지법의 경우 임대 토지의 저당을 명확히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권자 및 이용권자의 저당 설정은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어 토지 저당 선행 권리와 상충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토지법은 토지 소유자의 저당 설정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제로 토지 소유는 매우 제한적이다.

2) 사유화 정책

우즈베키스탄 국유 재산의 민영화 관련 주요 법규는 비 국유화 및 민영화에 대한 법(민영화법: Law on Denationalization and Privatization; the Privatization Law)으로 1991년 11월 19일 발효되어 이후 개정된 바 있다. 민영화법은 우즈베키스탄 민영화 개념의 법적 형태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개인 및 민간 법인의 국가소유재산 취득 혹은 국영주식회사 지분 인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즈베키스탄의 민영화는 여타 CIS국가들에 비해 뒤진 편으로 독립 후 초기 수년 동안에는 아파트와 상점과 같은 매우 작은 업체들만 민영화된 반면 거의 모든 산업체 및 기타 중대

기업들은 엄격히 정부통제 범위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1998년 후반 들어 많은 주요 산업 부문들의 주요 기업들의 민영화를 활발히 추진시키기 시작했으며 2003년 4월 17일 채택된 의결 내용(이후 수정)은 2003~2004년 기간 중의 야심적인 민영화 프로그램을 반영하고 있다.

□ 민영화 추진 방법

o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연도별로 승인된 국유재산 민영화 프로그램에 따라 민영화 대상을 결정함.

o 우즈베키스탄 국유재산 관리 및 창업 지원 국가위원회(The State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Management of State Property and Support of Entrepreneurship, "국유재산위원회"로 약칭)는 국유재산 민영화 과정에 관련된 핵심 기관으로 국유재산 위원회의 결정은 모든 정부 부처, 협회, 기구, 재벌, 기관 및 지방 정부들에 적용됨

□ 민영화 형태 및 조건

o 우즈베키스탄의 민영화 형태
- 국영기업을 집단기업, 주식회사 혹은 기타 기업 혹은 합자회사 형태 등으로 전환
- 국영기업의 대여(추후 해당 대여 기업의 인수 선택권 포함)의 형태를 가질 수 있음

o 국유재산은 개인 혹은 법인에게 경쟁 입찰로 매각되거나 우즈베키스탄 관련 법규에 따른 다른 방법으로 매각됨

o 민영화 대상 설비에 대한 제한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비 국유화, 민영화 혹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유 재산 목록을 정해 두고 있음. 이 목록에는 국가 이익에 직접 관련이 되는 전략 국유 재산이 우선 포함되어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판단에 의거해서만 민영화되거나 비 국유화될 수 있는 설비 목록을 정해 두고 있음.
- 민영화법에 따라 토지, 심층토, 기타 자연 자원 그리고 문화재 및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은 비 국유화 및 민영화 대상이 아님.

o 외국인투자가들이 이용 가능한 기회
- 우즈베키스탄 민영화법은 국내인 및 민간 법인, 우즈베키스탄 국외 거주 외국 시민 및 법인, 심지어는 무국적자까지도 민영화된 국유재산의 취득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o 외국 투자가들은 다음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 참가 가능함.
- 증시에서 경쟁 입찰 혹은 투자 입찰 그리고 직접 협상 과정에서 외국인에 배정된 주식
- 합작투자 법인 혹은 100% 외국자본 법인설립을 가능케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가 혹은 외국인투자그룹에 대한 기업주식 전부 혹은 일부 매각
- 청산(파산)된 기업 자산의 공개 경쟁 입찰(입찰 요건은 사전 공고)
- 경매 혹은 직접 입찰 방식에 의한 부동산 매각
- 투자 프로젝트에 근거한 국유 재산 경쟁 입찰 매각

o 외국 투자가들은 민영화 과정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참가할 수 있음
- 국영 기업의 자본금 증액 시 투자하여 국영기업을 합작투자 법인으로 전환, 증자분의 일부를 외국 투자가에게 매각
- 양허 협약(광업, 전력 공급, 물 공급 및 서비스 설비 기업에 대한 우대 대우)
- 외국 자본 일부 참여로 설립된 투자 기금, 증권회사 및 투자 은행의 민영화된 국영기업 지분 할당 및 교환
- 국가소유 토지에 외국 투자가에 의한 "턴키" 베이스의 새로운 기업 건설, 혹은 국가가 일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미완공 구조물 건축 완공

2008년도에 민영화를 통해 외국기업에 매각된 자산은 49.2백만 달러로 2007년도 1억 1천480만 달러보다 감소하였다. 매각된 공기업수는 232개에 달한다. 우즈벡 정부는 2007년도 7월에 향후 4년간 1,400개의 민영화 대상기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러한 대대적인 민영화 계획에도 불구하고 통신, 에너지, 석유 및 가스, 광산 등 국가전략산업의 대지분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으며, 은행, 섬유, 자동차 부문도 정부가 최소 25%-50%의 지분을 갖도록 되어 있다.

3) 언어사용 정책

우즈베키스탄의 공용어는 우즈베키스탄어로 2004년부터 이전까지 공용어로 함께 사용되어 오던 러시아어가 제외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모든 국가 기관들은 우즈베키스탄어로만 문서와 자료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국가 기관들은 여타 언어(대부분 러시아어)로 된 문서 혹은 번역본을 병행하여 발급한다.

우즈베키스탄의 일반적 관행은 외국 당사자들과의 계약서는 두 가지 언어로 작성되는데 러시아어와 두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다른 언어 한 가지로 작성된다. 이 경우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두 언어의 계약서는 각각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국가기관에 등록하거나 신고해야 하는 모든 계약서는 러시아어 혹은 우즈벡어로의 번역 및 공증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인 설립을 위한 특정 등록 서류는 우즈벡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러시아어로만 된 서류는 접수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책은 공식 문서에 우즈벡어 사용을 위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반영하며 앞으로 점차 우즈벡어가 널리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 민법

우즈베키스탄의 민법은 상호 평등, 재산권 보호, 계약 자유, 사생활 불간섭, 민권의 자유 로운 행사 필요성, 침해된 권리의 복구 그리고 사법 제도를 통한 권리 보호 등의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시민(법인)들은 자유 의지에 따라 민권을 확보하여 스스로의 이익에 따라 행사하며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유 계약 조건에 따라 스스로의 의무와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

상품과 용역 그리고 금융 자금은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자유로이 이동이 가능하며 상품과 용역의 자유 유통 제한은 안보, 국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환경 및 문화 가치 보호 등이 요구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민법 관련 행위는 관련 법규에 소급 적용을 받는다고 직접 명시된 경우 이외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 민법에 적절한 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관습 및 전통이 적용될 수 있음.
-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관련 법규 및 대통령령의 적용을 받음.
  - The Civil Cod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우즈베키스탄 민법) 1997년 3월 1일 제정, 이후 수정
  - The Tax Cod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우즈베키스탄 세법) 1997년 4월 24일 제정, 이후 수정
  - The Law on Limited Liability and Additional Liability Companies, 2001년 12월 6일 제정
  - The Law on Business Partnerships, 2001년 12월 6일 제정
  - The Law on Joint Stock Companies and the Protection of Shareholders' Rights (주식회사법), 1996년 4월 26일 제정, 이후 수정
  - The Law on Guarantees and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Foreign Investors' Rights(외국인 투자 보장법), 1998년 4월 30일 제정
  - The Law on the Contractual and Legal Basis for the Activity of Business Entities, 1998년 11월 1일 발효
  - The Law on Investment Activity, 1998년 12월 24일 제정
  - The Law on Currency Regulation(신판) 2003년 12월 11일 제정
  - The Decree of the President “On Additional Measures to Stimulate the Foundation and Activity of Enterprises with Foreign Investment", 1996년 5월 31일 발표
  - The Decree of the President “On Additional Incentives and Privileges Granted to Enterprises with Foreign Investments", 1996년 11월 30일 발표
  - The Resolution of the Cabinet of Ministers “On Measures of Unification of Exchange Rates on Internal Currency Market", 2001년 10월 25일 제정
  - The Resolution of the Cabinet of Ministers “On Measures for Organization of Operation of the Over-The-Counter Currency Market", 2001년 7월 10일 제정, 이후 수정
  - The Resolution of the Cabinet of Ministers “On Measures for Further Liberalization of the Currency Market", 2001년 6월 22일 제정, 이후 수정
  - The Resolution of the Cabinet of Ministers “On Cancellation of Licensing and Measures for the Improvement of Import and Sale of Consumer Goods on Internal Marke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2002년 8월 20일 제정, 이후 수정
  - The Resolution of the Cabinet of Ministers “On the Additional Measures for the Attraction of Foreign Investments into Foundation of Joint Ventures", 2000년 10월 11일 제정, 이후 수정
  - The Regulation “On the Procedure of State Registration and Record of Business Entities and Issuance of Permits, approved by Resolution of the Cabinet of Ministers On the Principal Improvement of System of State Registration for Business Entities", 2003년 8월 21일 제정
  - The Resolution of the Cabinet of Ministers “On the Program on Denationalization and Privatization of Enterprises in 2003~2004" 2003년 4월 17일 제정, 이후 수정
  - The Resolution of the Cabinet of Ministers “On Measures for Further Perfection of Monitoring of Export-Import Operations", 203년 9월 30일 제정
  - The Resolution of the Cabinet of Ministers “On Parameters of the State Budget for 2005", 2004년 12월 24일 제정
  - The Decree of the President “On Measures for Cardinal Increase of Share and Importance of Private Sector in Uzbekistan Economy", 2003년 1월 24일 제정
  - The Decree of the President “On Measures for Further Liberalization of Foreign Trade Activity in Uzbekistan", 2003년 9월 26일 제정

5) 은행 시스템

1994-1995년 기간 중 상대적으로 경제 활동이 자유로웠던 당시에는 100% 민간 은행 개설 사례도 있었으나 이러한 환경은 1996년 10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국내통화의 환전 제한조치를 도입하면서 끝이 났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제한된(최고 특권에 해당되는) 소수의 기업들에 한해 중앙은행을 통한 환전 면허를 부여하는 차별적인 제한 환전 제도를 도입했다. 이 당시 많은 민간 은행들이 폐쇄되었으며 또한 상당수 은행가들이 구금되거나 투옥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은 아직 경제의 모든 분야를 통제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대외경제활동 담당 NBU(National Bank of Uzbekistan)를 설립하여 정부의 1차 외환 통제 역할을 담당토록 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기능은 CBU(Central Bank of Uzbekistan)가 담당하며 중앙은행은 타슈켄트 내 전체 12개 구 모두에 지점을 두고 있다. 중앙은행은 정부의 공식 외환 환율을 결정하는 주체이며 국내 및 외국은행들에 대한 환전 면허 부여 및 취소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우즈벡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관으로 꼽히고 있다.

2009년 9월 기준 우즈베키스탄 내에는 우즈벡 전역에 805개 지점을 보유한 30개 상업은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는 11개 민간 보유 은행, 5개 외국 자본 은행, NBU 및 인민은행(Peoples Bank, 저축은행)과 같은 2개 국영은행 그리고 나머지 다양한 소유구조를 가진 은행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은행 제도는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CBU: Central Bank of Uzbekistan)이 관할하여 환율, 재 금융 및 상업은행 이자율 등을 통제한다. NBU(National Bank of Uzbekistan)는 최대의 국영은행으로 1991년 설립되어 66개국 430개 은행들과 코레스 관계를 가지고 있다.

NBU의 자본금은 미화 5억 1,380만 달러로 대외차관을 할당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NBU가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101개로 총 미화 31억 달러에 달한다. 외국인투자가 가장 많은 분야는 정유, 화학, 석유화학, 식품가공 및 농산물 생산 분야 등이다. 33개의 민간 상업은행은 몇 개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정부보유지분이 큰 은행들이 첫 번째 그룹으로 전략적인 은행으로 간주되어 합작투자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정부에서 경영을 100% 통제하고 있다. 우즈벡 대형 은행 민영화를 거들고 있는 세계은행은 NBU 자본금의 40%, Asaka은행의 50% 주식의 민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1996년에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NBU 및 우즈벡 자동차협회가 설립한 Asaka 은행은 우즈베키스탄 자동차 산업 개발 재원 조달이 주요 기능으로 되어 있다. EBRD (유럽 재건 개발 은행)는 우즈베키스탄 중소기업 개발을 위해 미화 3천만 달러를 할당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대형으로 분류되는 은행들은 Pahkta 은행(면화 은행), Uzpromstroy 은행 (산업 은행) 및 Narodny 은행(인민은행) 등이 있으며 이들 은행들은 Asaka 은행 및 NBU와 함께 우즈베키스탄 은행 자산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보다 작은 두 번째 그룹의 은행들은 “전문화된 산업 은행”으로 구 소련 시대부터 유지된 제도인데 이들 은행들은 각각 특정 산업 부문에 금융을 제공하며 이들 은행의 주된 기능 중 하나는 담당 산업에 대한 잠재적인 국내 및 외국 기업을 발굴하는 것임. 이들 은행들은 또한 우즈벡 정부가 민영화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그룹으로 기업 경영 원칙을 적용하여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 대규모 주택 건설을 정부가 주도하기 위해 주된 모기지 은행으로 Uzjilstroi 은행(우즈벡 주택건설 은행)이 설립되었다.

우즈벡 정부 보유 지분이 가장 작은 은행들이 세 번째 그룹으로 전문화 은행들이기도 한데 곡물산업을 취급하는 Galla 은행을 제외하고는 우즈벡 정부는 별다른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그룹 이외의 은행들에도 정부가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은행들은 대주주가 곧 은행 자체 고객이기도 하다.

모든 상업은행들은 기업금융 서비스 이외에도 예금 및 장단기 대출 등 소비자 금융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나 국내 은행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도가 낮고 인플레가 심하여 은행에 돈을 맡기는 고객은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중소기업 금융 지원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여 중소기업에 할당된 자금에서 발생된 수익에 대해 5년간 세금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정부 보증 프로젝트에 금융을 지원한 은행들은 여전히 큰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즈벡 상업은행들이 중소기업들에 제공한 전체 여신규모는 2007년도 4조 4,7천억 숨(미화 약 14억7천만 달러)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즈벡 시중은행은 여전히 정부의 영향력에 매우 취약하며 시장여건에 따라 자체 경영 전략을 수립할 독립성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Uzbek-Turkish(UT)은행, RBS, Uzbek International 은행(Uzprivate bank) 그리고 우즈대우은행를 인수한 우즈산업은행(UZKDB) 등 4개의 외국은행들이 있으며 중앙아시아 협력 개발은행 및 이란 Soderot 은행 지사가 있다. 이들 4개 외국은행들은 모두 서방은행들의 안전하고 숙련된 서비스로 상업 및 투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부터 상업은행 설립 시 최저자본금을 현재 5백만 달러에서 5백만 유로로 인상하고, 개인은행(Private bank)은 최저자본금을 현재2.5백만 달러에서 2.5백만 유로로 인상조치 하였다.

6. 출장가이드

가. 기후

1) 기후특성 및 도시별 기후

우즈베키스탄은 위도상으로 보면 한반도보다 다소 높지만 기후는 우리나라보다는 더운 편이다. 전체적으로 대륙성 기후로 볼 수 있고 하절기가 건조한 반면 동절기는 다습한 편이다.

도시 별로 기상통계를 발표하지 않아 도시 별 기후는 판단이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수도인 타슈켄트 보다는 더운 편이다. 평균 기온은 타슈켄트를 포함한 북부지역은 1월 평균 영하 3도℃ 이고 남부지역은 영상3도℃ 수준이고, 북부지역은 7월 평균 영상 26도℃이고 남부지역은 영상 32도℃ 정도이다.

기후가 양호한 편인 타슈켄트 지역도 한여름(6월-8월)에는 40℃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 무척 더운 편이지만 여름철에는 강우량이 거의 없고 습도가 낮아 지내기가 크게 어렵지는 않다. 동절기는 우리나라보다는 다소 기온이 높은 편이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낮지 않지만 동절기 역시도 지내기 어렵지는 않다. 강우량은 전체적으로 500ml 정도로 동절기에 집중해서 내리고 있고 눈은 아주 추운 한겨울에만 내린다.

2) 출장 시 추천복장

우즈벡 기업인들 또는 정부인사들과의 면담 시 반드시 정장을 할 필요는 없으나 가급적 정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장 시 복장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준비하면 무난하지만 여름이 우리보다 다소 긴 편으로 5월이나 9월도 더울 수 있기 때문에 하복이 바람직하다. 겨울철은 우리나라 보다는 덜 추운 편이지만 동복을 착용해야 하고 겨울철 눈 또는 비가 많이 내리므로 외투보다는 두툼한 레인코트가 실용성이 높다. 여름철에는 이나라 공무원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반소매 남방차림을 많이 하므로 출장자도 이러한 차림이 실례가 되지는 않는다. 한편 봄(4-5월), 가을(9-10월)의 경우에는 낮에는 온도가 높지만 밤에는 온도가 많이 내려가므로 얇은 스웨터나 잠바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시차/근무시간

1) 시차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KST-4시간으로 한국이 24:00일 때 우즈베키스탄은 아직 20:00시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서머타임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시차는 연 중 동일하다.

2) 근무시간

공무원을 포함한 일반직장의 근무시간은 평일은 09:00-17:00까지 이고 관공서, 은행 및 주요 기업들은 토요일은 휴무하여 토, 일요일은 연휴이다. 관공서는 대민 관계 업무는 오전에만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관공서 업무는 오전에 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은행은 16:00까지만 업무를 한다. 상점들의 영업시간은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는데 보통은 오전 10:00부터 저녁 18:00까지 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요일은 대부분 폐점된다.

다. 도량형

우즈베키스탄은 모든 도량형의 표기에 있어서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업용으로는 삼상 380V가 공급되고 있고 일반용으로는 220V가 공급되고 있다. 주파수는 모두 50Hz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송전시설의 낙후로 전압이 일정치 않아 일정한 전압이 요구되는 전자제품 등은 안정기를 부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라. 출입국/비자

1) 비자

우즈베키스탄의 비자발급은 단순히 외국주재 우즈벡 대사관에 신청만 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우즈벡 내 현지기업, 대사관, 무역관이나 여행사 대행을 통한 초청장이 있어야 가능한데, 동 초청장을 우즈벡 외무성에 접수하면 접수 후 5일(근무일 기준) 이후에 방문자가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지역의 우즈벡 공관에 외무성에서 비자발급 허락 전문을 발송한다.

이에 따라 비자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적어도 비자발급 희망일로부터 1주일 전까지 는 초청장 발급자에게 여권전면 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여권발급일, 유효기간) 과 현재 소속기관 근무증명서를 통보해 주어야 한다.

비자신청 시 외국 주재 대사관에 비자신청을 접수할 경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즈벡 외무성에서 외국주재 공관에 발송한 전문번호와 전문 발송일자를 초청장 발급자로부터 확인하여 비자 신청 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자 발급 시 대사관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기간과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비자: 1주=$55, 2주=$65, 4주=$75이며 단체비자: 2주=$30, 4주=$40을 지불해야 한다. 단, 비자발급을 여행사에 의뢰하는 경우, 위의 금액에 여행사 대행비가 추가된다). 한편 복수비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외국 공관에서 받기가 어렵고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요건을 갖춘 후 신청해야 한다.

o 비자 발급처
- 발급장소: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한국내의 경우)
-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76-1 외교센터 701
- 전화: (02)574-6554
- 팩스: (02)578-0576

2) 출입국 절차

출입국에 특별한 절차는 없으나 입국 시 출입국 신고서상에 외환 보유금액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동 출입국 신고서는 2장을 작성하여 한 장은 여행자가 소지하고 있다가 출국 시 다시 새로운 출입국 신고서 2장을 작성하여 공항세관에 제출하여 세관의 서명을 받은 후 1장을 돌려받게 된다. 출국 시에는 별도 1장에 잔액을 기재한 후 입국 시 받은 신고서와 같이 제출하게 되는데 공항당국에서는 입국 시와 출국시의 외환보유액을 비교하여 입국시보다 많은 외화보유액을 보유할 경우 차액을 압수한다.

입국 시에도 보통수준 이상의 외화보유액을 신고할 경우 실물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개인소지품에 대한 검색은 까다로운 편은 아니나 필요 이상으로 많은 화물을 운송할 경우 물품검사 및 관세납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통상적인 면세품 보유한도 는 담배 2보루(200개피), 브랜디 또는 위스키 1리터로 제한된다.

3) 공항 시내 교통편

공항 시내 교통편은 버스, 택시 등이 있으나 외지인, 특히 처음 우즈벡을 방문하는 경우 이용이 어렵다. 가장 좋은 것은 지인을 통하여 교통편을 제공받는 것이며 투숙호텔에 픽업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비용이 고가이다.

4) 주의할 점

택시는 타기 전에 가격을 흥정해야 하나 러시아어 혹은 우즈벡어를 모르면 흥정이 안되며 이 경우 어느 정도 바가지 요금을 각오해야 한다.

마. 환율/환전

1) 화폐

우즈베키스탄은 소련으로부터 독립 이후 '93년부터 자체 화폐인 Sum을 발행하여 운용하고 있다. 주화는 5, 10 Sum짜리 두 가지 종류만 운용되고 있고 지폐는 10, 25, 50, 100, 200, 500, 1000 Sum 등 9가지 화폐가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다.

2) 환율

우즈베키스탄의 2011. 3월 기준 국가은행 기준율 기준 공식환율은 1달러당 1,682 Soum 대이며 지속적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2003.12.31일 기준 국가은행 기준율 기준 공식환율은 1달러당 976 Soum이었다

3) 환전

환전은 공항, 주요 호텔, 은행 등 제한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나,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현지화의 급속한 평가절하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숨화의 절대통화량을 억제하고 있어 달러화를 숨화로 환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4) 신용카드 사용

우즈베키스탄에서 신용카드는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외국인 투숙이 가능한 특급 혹은 1급 호텔에서는 비자, 아멕스, 마스터스, 다이너스 등 주요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일부 항공사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 이외의 장소에서는 거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5) 우리나라와의 직항 편

서울에서 타슈켄트까지 아시아나 항공, 대한항공이 1주일에 3편, 우즈벡 항공이 1주일에 2편씩 (성수기에는 3편) 운항되고 있다.

6) 3국 경유

제 3국 경유의 경우 모스크바 등지를 경유할 수 있다. 타슈켄트와 모스크바간에는 매일 수편의 항공편이 운행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경유할 수도 있는데 타슈켄트 알마티간은 우즈벡 항공에서 하루 1편(토요일 제외)을 운행하고 있다.

7) 저렴한 예약 방법

항공권은 여행사를 통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예약 방법이다.

8) 국내, 국제편지, 소포, 특사운송회사 가격 및 이용방법

DHL, TNT Express 등 특사편 이용이 가능하면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보낼 때 기본 250그램 기준 DHL은 54불+6%이며 TNT Express는 43불이며 무게에 따라 가격이 올라간다. EMS도 이용 가능하며 요금은 특사편에 비해 약 2/3 수준이다. EMS의 경우에도 한국에서 우즈베키스탄까지 2-3주 이상 걸릴 수도 있으므로 급한 것은 특사편을 이용해야 한다. 일반 우편은 시일이 많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특사편이나 EMS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우편은 일반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기본 요금은 100숨이다.

9) 국내, 국제전화 거는 방법

국내 전화는 지역번호를 먼저 누른 후 해당 번호를 누르면 된다. 국제전화 호출번호는 810이며 국가코드, 지역코드, 가입자 번호 순으로 누르면 된다. 예를 들어 한국 서울로 전화할 경우 810+82+2+가입자 번호 순으로 누르면 된다. 시외전화는 8번을 누르고 신호음이 들리면 지역번호와 가입자번호를 누르면 된다.

바. 교통/통신

1) 교통

□ 국내교통

○ 택시

우즈베키스탄에는 노란색 차량으로 지붕 위에 "Taxi"라고 쓰여 있는데 공항을 제외하고는 찾기가 쉽지 않다. 대신에 길거리에서 손을 흔들어 길가에 서는 것은 모두 택시라고 볼 수 있는데 불법 영업도 아니고 시내 치안이 양호한 관계로 밤이 아니면 타도 무방하다. 콜택시 서비스도 가능한데 호텔 등에 부탁하면 쉽게 불러 주는데 콜택시를 포함한 모든 차량은 일반적으로 매우 노후한 편이다.

정식택시라고 하더라도 미터기가 없기 때문에 요금은 운전사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시내에서의 이동은 3,000숨(soum) 정도 지불하면 되며 20~30분 소요되는 거리도 5,000숨 정도 지불하면 충분하다. 공항에서 기다리는 택시들은 초행길의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기도 하는데 공항에서 시내 중심까지가 5-10분에 불과하므로 3,000-4,000숨 정도만 주면 된다.

○ 시내 대중교통

대중교통 수단은 크게 지하철, 트람바이(궤도전차), 일반 버스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지하철은 3개 노선이 운행되는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고 청결 한 편이고 요금은 600soum이다. 나머지 대중교통은 속도가 느릴 뿐 아니라 운행 구간이 우즈벡어 내지 러시아어로만 표기 되어 있고 청결도가 떨어져 외국인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 국제공항

우즈베키스탄의 국제공항은 타슈켄트 공항 한 곳인데 시내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내륙에 위치한 타슈켄트는 항공교통이 활발한 편이어서 국제는 물론 국내선 항공기의 취항이 많은 편인데 이에 따라 타슈켄트 공항은 항상 붐비는 편이다.

타슈켄트 공항은 2002년 초 개·보수가 마무리되어 현대식 건물로 탈바꿈하였으며, 공항 출국절차도 승객에게 편리하도록 바꾸었다. 즉 승객은 먼저 수화물을 발송하고 보딩 패스를 받으며, 그 후 세관심사, 여권심사 순으로 이어진다(이전에는 세관심사를 마친 후 안으로 들어가서 수화물을 발송)

□ 국제항구

우즈베키스탄은 내륙국가로 항구는 전혀 없다.

2) 통신

□ 국제통신

우즈베키스탄은 전화선 및 교환기 등이 러시아 시절 설치된 것이 주로 운영되고 있어 통신 사정은 전반적으로 낙후된 편이다. 국제통신의 경우에는 국내통신보다 양호한 편이지만

통화 중 이유 없이 단절되는 경우도 있다. '96년부터 영업하고 있는 영국계 합작 통신회사인 BUZTON은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양호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외국기관이나 기업 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통화요금은 타슈켄트에서 서울로 전화할 경우 1분당 $2.21로 매우 비싼 편이다.

□ 국내통신

국내전화 사정은 국제전화 라인보다도 더 어려운 실정인데 이는 전화라인과 교환기의 노후화에 기인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환기의 디지털화가 추진되고 있어 전화국번 앞에 "1"번이 붙은 전화의 경우에는 디지털라인으로 통화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시내전화 요금은 분당 $0.14로 매우 비싼 편이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MTS, Beeline, COSCOM, Perfectum Mobile, Uzbektelecom등 5개 회사가 무선통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중 MTS, Beeline, COSCOM 는 GSM 방식이며, Perfectum Mobile, Uzbektelecom는 CDMA 방식이다

□ 매스미디어

우즈베키스탄의 언론은 철저히 정부의 관리하에 있어 주요 보도기사의 경우 신문 별로 내용이 모두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기관지 성격의 Naordnoye Slova가 정부의 주요 정책, 법령 등이 발표되어 널리 읽히고 있으며 동 신문은 우즈벡어로 Halq Suze Slova란 이름으로도 동일한 내용으로 발행되고 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은 Pravda Vostoka지는 러시아어로 발행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구 소련의 Pravda지와 관련이 있었으나 현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도 역시 국영기관에 의해 발행되어 내용은 Naordnoye Slova와 거의 동일하다.

우즈베키스탄에는 Uzbek TV-Radio Broadcasting Company라는 국영 방송국에서 4개의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Uzbek TV Ⅰ, Uzbek TV Ⅱ, Tashkent Channel, International Channel 등이다.

방송언어는 우즈벡어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러시아어는 일부 뉴스 및 러시아에서 수입한 드라마 등에 국한되고 있다. 이는 우즈벡어 사용 장려 정책에 따른 것으로 향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사. 호텔/식당

1) 호텔

□ 타슈켄트

○ Intercontinental Hotel
- 전화: (998-71) 120-7000
- 위치: 타쉬켄트 Unosabad
  · 다소 비싼 편이지만 서비스 및 시설은 우즈벡 내 최고 수준

○ Dedeman Hotel
- 전화: (998-71) 120-3700
- 위치: 타쉬켄트 시내 중심가
  · 서비스 및 시설, 우즈벡 내 최고 수준

○ Tashkent Palace Hotel(구Le Meridien Hotel)
- 전화: (998-71) 120-6600
- 위치: 타쉬켄트 시내 중심가
  · 서비스 및 시설은 인터콘티넨탈보다 다소 떨어짐.

○ Uzbekistan Hotel
- 전화: (998-71) 120-7767
- 위치: 타쉬켄트 시내 중심가
  · 다소 오래된 건물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개, 보수를 완료한 층의 경우 청결하고 시설도 양호한 편이나 구소련 시절부터 운영된 호텔로 서비스는 기대 수준 이하임.

○ Grand Mir Hotel
- 전화: (998-71) 140-2000
- 위치: 타쉬켄트 시내 중심가(아이벡 전철역 근처)
  · 청결하고 시설도 양호하며 한국인들이 주로 거주 하는 지역에 있어서 주변에 한국 식당이나 가게가 많다.

□ 사마르칸트

○ Afrosiab Hotel
- 전화: (998-662) 31-1341, 31-2080. 31-2683
- 위치: 사마르칸트 시내중심가
- 사마르칸트에서는 최고급 호텔로 시설 및 객실 수준은 비교적 양호한 편임.

□ 호텔 예약 싸게 하는 방법

호텔 예약은 여행사를 통하는 것이 저렴한 방법이다.

2) 식당

□ 한 식

○ 한국관
- 전화: (998-71)252-3322
- 위치: 타쉬켄트 시내중심가
- 한국교민이 운영하는 식당. 한국과 비슷한 가격 수준에 메뉴가 다양하고 맛이 괜찮다.

○ 미가
- 전화: (998-71)128-8456
- 위치: 타쉬켄트 시내중심가
- 한국 교민이 운영하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여 이용이 편리함.

○ 우리집
- 전화: (998-71)252-3461
- 위치: 타쉬켄트 시내중심가
- 한국대사관 영사과 옆 골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산물 음식이 특징이다.

○ 가마솥
- 전화: (998-71)128-8008
- 위치: 타쉬켄트 시내중심가
- 한국처럼 숯불에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는 것이 특징

○ 명가
- 전화: (998-71)120-6600
- 위치: 가스찌니짜 따따
- 초밥 회정식등 일식부터 여러 메뉴를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
-

○ 종가집
- 전화: (998-71)300-0853
- 위치: 마가진 잼축 뒤편
- 매일 바뀌는 특선메뉴가 있으며 한국과 비슷한 가격수준이다.

○ 마루
- 전화: (998-71)104-1236
- 위치: 타쉬셀마쉬 바자르

□ 서양식 및 현지 식

○ 카라반
- 전화: (998-71) 252-7464,150-7555)
- 위치: 시내중심가 실내를 우즈벡 전통 디자인으로 장식, 샤슬릭 전문
- 아리스톤전화: (998-71) 233-3881, 233-5080
- 위치: 시내중심가양갈비 샤슬릭 전문

□ 대표적인 먹거리

○ 쁠롭
- 우리나라의 볶음밥과 비슷하지만 기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에 다소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한국인들은 '기름 밥' 이라고 부름.

○ 리뾰쉬까
- 우즈베크인들의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주식으로 원형의 모양의 피자빵과 비슷하며 둘레는 두껍고 가운데는 얇고 편편하며 표면에 깨나 향신료를 뿌림.

○ 샤실릭
- 미리 향신료로 양념한 양, 소, 닭, 돼지고기를 꼬치에 끼워 숯불에 구워먹는 음식으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함.

○ 쌈사
- 밀가루 반죽을 만두피 빚는 것처럼 얇게 민 후 녹인 버터를 골고루 묻혀 돌돌 말아서 길어진 반죽을 한 입 크기로 잘라 다시 한 번 밀어 속(양파와 고기 다진 것)을 넣고 원하는 모양으로 만듬. 한국의 고로케와 만두의 중간쯤 되는 음식.

○ 빨메니
- 우리나라 만두와 비슷하며 단지 크기가 작을 뿐임.

○ 슈르파
- 고기를 끓인 후 감자, 양배추, 양파, 당근 등을 넣어 끓인 국.

○ 라그만
- 우즈벡 식 짬뽕이라 불리며, 슈르파처럼 국물을 만든 후 야채와 고춧가루로 양념을 하고 국수를 넣어 만듦.

○ 수말락
- 이 음식은 주로 나브루즈 기간 중에 빵과 함께 먹음. 밀을 발아시켜 갈아 밀가루와 섞어 기름을 두른 후 냄비에 조금씩 물을 부어가며 하루를 계속 놀지 않게 저음. 설탕을 넣지 않지만 단 맛이 남.

○ 차이
- 식사할 때, 손님이 왔을 때,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에, 한여름에도 그리고 다과를 할 때에도 늘 차를 함께 마심. 전통차는 없으며 대부분 립톤 등 팩 타입이 대부분임

아. 관공서 관행

우즈베키스탄의 관공서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체제가 남아있어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는 기대하기 힘들다. 한편 업무 전산화 등이 거의 되어 있지 않아 민원제출 서류의 종류 및 양이 많고 처리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린다. 관공서의 민원서류 접수는 대부분의 기관이 오전에만 가능하고, 반대로 신청민원의 확인 등은 오후에만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관공서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통역을 대동해야 하며 중요한 것이 아니면 현지인 직원 등을 시키는 편이 편리하다

자. 공휴일

□ 2011년 공휴일

일 자	공휴일	비고
1. 1	신년휴일	
3. 8	국제여성의 날	
3.21	Navruz(봄의 축일)	
5. 9	추모의 날(승전기념일)	
8.31	라마단 말일(Ramazan Khait)	매년 날짜 변경
9. 1	독립기념일	
10.1	스승의 날	
11.8	희생제일(Kurban Khait)	매년 날짜 변경
12.8	제헌절	

1) 주요 축제일

o 국제 여성의 날, 나브루즈, 독립기념일, 라마단 말일, 희생제 등

2) 출장지양 기간

나브루즈 전후 1주일 정도와, 하계휴가 기간인 7월말~8월초 정도이나, 특별히 고려할 기간은 없다.

차. 여행시 유의사항

1) 여행준비

□ 의복준비

전반적으로 여름이 다소 길고(5월-9월) 온도가 높고 건조한 반면 겨울은 한국보다 다소 기온이 높은 반면 다습한 편이다. 대체적으로 의복은 한국과 비슷하게 준비하면 된다.

□ 전기규격

전압은 220V로 한국과 동일하나 주파수는 50Hz로서 한국과 달라 모터가 달린 전자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2) 여행여건

□ 치안

우즈베키스탄은 경찰국가라고 할 만큼 경찰수가 많고 전반적으로 국민성이 온순해 치안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최근 경제상태가 악화되고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절도 및 강도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 횟수 및 잔악성은 그리 심각한 편은 아니다.

□ 응급

전화로 "03"을 누르면 엠뷸런스가 호출되며 관련비용은 무료이다. 한편 시내의 종합 병원들은 돌아가면서 응급 진료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진료비 또한 기본적으로 무료지만 병원의 시설 및 약품미비 등으로 외국인들은 잘 이용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TIMC(전화: 120-6091/2)의 경우에는 상담비만 약$100정도이며 추가적으로 진료비 및 약품비 등이 청구된다.

□ 팁관행

팁은 아직까지 관행으로 정착한 상태는 아니다. 특히 택시는 미터기가 없이 기사와 승객의 합의에 의해 지불하므로 팁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외국인들 자주 이용하는 식당등은 계산서에 10~15%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청구된다. 한편 호텔 등의 경우 10%의 서비스 요금이 부과되므로 별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가방을 옮겨준 Bell Boy에게는 1,000~2000soum, 방 청소부에게는 3,000soum 정도를 지불하는 것이 적당하다.

□ 식수

수돗물은 현지인들은 정수하지 않고 마시고 있으나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고 석회분이 많아 식수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미네랄 워터를 마시는게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고급식당들은 정수기로 처리한 식수를 제공하므로 그대로 마셔도 무방 하지만 현지식당 등에서는 반드시 미네랄워터(Bottle Water)를 주문해야 한다.

□ 이발소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이발소가 두 군데 있으며 요금은 커트의 경우 남자는 12,000 soum, 여자는 12,000soum내지 14,000soum 정도이며 남자 어린이는 9,000soum 정도이다.

□ 구두닦이

구두닦이는 전혀 찾기가 불가능 한바 자기가 직접 닦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쇼핑

□ 물가

농산물등 전반적인 물가는 매우 싼 편이지만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살만한 물건은 찾기가 힘들고 가끔씩 발견되는 외국에서 수입된 유명상표의 제품들은 가격이 한국보다도 비싼 편이다.

□ 쇼핑장소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취약하고 외환부족으로 상품의 수입이 거의 제한되다시피 하여 쇼핑가 등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다. 구소련권 국가들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Zum"(중앙백화점)이 있으나 이곳에서도 외국인 살만한 물건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 특산품

오랜 사회주의 경제의 영향으로 특별한 특산품도 개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한국인 여행객들은 벌꿀 (천연꿀)이나 호두 깐 것, 건포도 등을 많이 구매하고 있다.

□ 위험 지역

인적이 드문 밤길 등은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되도록 2인 이상 단체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문화적 금기 사항

이슬람 문화권이며 다종교 국가이므로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금기시된다.

4) 기타

엄격한 외환관리 정책으로 출입국시 외화 반출입을 제한하는바, 입국 시 작성했던 세관 신고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출국 시 제출해야 한다. 입국 시 신고한 금액 한도 내에서 외환을 반출할 수 있다.

카. 유용한 연락처

현지 관공서

기관 명	주 소	전 화	팩 스
외무부 비자과		(998-71)233-4501	(998-71)239-1410
대외경제부	Taras shevchernko Street 1	(998-71)23 8-5000	(998-71)238-5200
외국인투자유치청	Taras Shevchernko Street 1.,	(998-71)238-9100	(998-71)238-9200
국가사유화 위원회	Uzbekistan Avenue 55	(998-71)259-2090	(998-71) 150-7212
내무부	Yu. Rajabiy Steet.1	(998-71)233-3882	
재무부	Mustakilik sq.,5 Tashkent	(998-71)233-7073	(998-71)244-5643
국세청	Uzbekistan Avenue 3	(998-71)120-7631	(998-71)120-7641
타슈켄트시청	Movarounnakhrstr.,6,Tashkent	(998-71)233-9069	(998-71)233-6588

경제단체

기관명	주 소	전화	팩스	상세정보
상공회의소	1A, Usman Yusupov str.	(998-71)233-0699	(998-71)233-3799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sinessmen	Amir Tumur Street.2A	(998-71)234-9679	(998-71)234-9679	
NBU	101, Amir Temur str.	(998-71)233-6070	(998-71)233-3200	국영은행

한국기관

기관 명	위 치	전 화	팩 스
대사관	Afrosiab7,Tashkent	(998-71)252-3151/3	(998-71)120-7248
KOTRA	Amir Temur 107B,Tashkent	(998-71)140-0215/6	(998-71)140-0217
한국교육원	타슈켄트 시내	(998-71)191-8183	(998-71)120-6434

콜택시

회사 명	전화
TAXI	052
TAXI EKIPAT	082
KALAMAT	063
TAXI VOVAT	239-2222
TAXI LUKS	120-1111
TAXI EXPRESS	239-9999

□ 유용한 현지어 표현 (사용언어)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벡어라는 자체 언어를 가지고 있고 구 소련 시절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다가 '92년 독립 후 민족주의 운동과 더불어 우즈벡어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o 우즈벡어
- 아쌀람말레이쿰. (안녕하세요.) - 우즈벡어로서 일반적 표현
- 약스므쓰즈 (잘지내셨어요?)
- 소그볼링, 하이르 (안녕히가세요) - 헤어질 때

- 일트모스 (실례합니다)
- 라흐맛 (감사합니다)
- 네치 풀? (얼마입니까)
- 유즈르, 케치라쓰즈 (죄송합니다)

○ 러시아어
- 즈드라스트브이쩨. (안녕하세요.) - 러시아어로서 일반적 표현
- 도브러에 우뜨러. (안녕하세요.) - 아침인사
- 도브리 젠. (안녕하세요.) - 낮 인사
- 도브리 베체르. (안녕하세요.) - 저녁 인사
- 도브라야 노치. (안녕하세요.) - 밤 인사
- 스콜까 스토잇? (얼마입니까?)
- 스파씨바.(고맙습니다.)
- 이즈비니쩨. (미안합니다.)

타. 관광명소

1) 관광명소

□ 부하라

○ 중세적인 분위기
○ 둥근 지붕의 시장 타키
○ 물가의 차이호나에서 쉬기도 하는 랴비 하우스
○ 사막 속에서 발굴된 마고키 아타리 사원
○ 사막의 등대 칼랸 미니레트
○ 구 소련에 남아있는 유일한 이슬람 신학교 미르 아라프 메드레세 (1429년설립)
○ 부하라 왕의성 아르크
○ 독특한 건축 양식이 돋보이는 발라 아우스 사원
○ 4개의 미나레트가 있는 차르 베크 메드레세
○ 부조장식이 훌륭한 이스마일 사마니묘(900년 건설, 사마니 왕조 왕의 묘)
○ 샘이 솟아나는 영묘 차슈마 아유프 묘(챠슈마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예언자 욥)
○ 정감 어린 풍경이 있는 키로프 공원
○ 시토라 이 마히 호사 궁전
○ 세이페딘 보하르지 묘와 부얀 쿨크칸 묘 (13~14세기 건물)

□ 타슈켄트

○ 이슬람교의 근원지로서 오아시스 도시의 역사를 지님.
○ 도시의 중심은 혁명광장
○ 지금도 활동중인 이슬람교 본청, 바라크 칸 메드레세 (1531년 창건)
○ 바자르를 장식하는 소중한 꽃들
○ 우즈벡인 최대의 영웅 Amir Tumir 박물관
○ 우즈베키스탄 방송 탑에서 도시 전체 조망
○ 중앙아시아에서 발레를 볼 수 있는 나보이 극장
○ 1시간 거리의 "침칸"산에서의 스키(11-3월)

□ 히바

o 사막의 오아시스 도시
o 노예 시장이었던 바로타 활발 다르바자 (판만의 문)
o 바로타 타슈 다르바자 (타슈의 문)
o 최초로 세워진 히바의 학교, 이슬람 호자 메드레세와 미나레트
o 미완성의 미학, 마흐무크 아민 칸 메드레세와 미나레트 칼타 미나르
o 어떤 시인의 죽음, 파흘라반 마흐무트 묘
o 선망과 두려움이 뒤섞이는 하렘의 나날, 타슈 하울리
o 오래된 요새, 쿠냐 아르크
o 대상들의 숙소였던 콤플렉스 아라쿨리 칸 메드레세
o 지하에 저수지가 보관되어 있는 쿠틀루크 무라트 이라크 메드레세(1804～12년에 건설)
o 속인의 이해를 초월한 직인예술, 주마 사원
o 내성에 있는 건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세이트 알라우딘 묘 (14세기 묘)

□ 페르가나와 코간트

o 페르가나
- 약초가 풍성한 바자르
- 휴식 장소로 적합한 고리키 공원

o 코간트
- 향토 자료관이 있는 후도야르 칸 궁전
- 서로 돕는 정신이 만들어진 페르가나 운하
- 미이라가 안치되어 있는 마르달리 칸의 묘
- 쟈미 모스크 (1810～12년)
- 날레부다비의 모스크바와 메드레세

2) 주요 쇼핑센터

o '쭘' 마가진 (타슈켄트 중앙백화점)
- 위치: 나보이 극장 옆
- 시간: 09:00 - 19:00(평일),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은 휴무
- 우즈베키스탄을 대표하는 백화점으로'쭘'이라는 말은 러시아어로 중앙 백화점을 의미하는 머리글자 모음이다. 구 소련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지만 한국인의 관점에서 보면 한적한 소규모 백화점 정도로 볼 수 있다.

o 미르 마가진(MIR Supermarket)
- 위치: 브로드웨이 내 위치.
- 시간: 연중 무휴, 10:00 - 20:30
- 우즈베크와 터키의 합작회사로 주로 터키산이 많다. 일반 식료품 및 잡다한 생활용구를 구비하고 있으며 고기가 싱싱하고 좋다. 슈퍼 외에도 1층과 2층에 옷, 가구, 신발, 스포츠 용품점 등이 있다. 한국인 및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대표적인 가게이다. 술과 돼지고기 종류는 판매하지 않는다.

o 컨티넨트(Kontinent)
- 위치: 그랜드미르 호텔 옆
- 시간: 연중무휴, 09:00-23:00
- 러시아에서는 고급 백화점으로 유명한 회사인 “컨티넨트”가 2009년타슈켄트에 오픈한 소형 고급백화점이다. 1층에는 의류, 가전제품, 화장품등이 있으며 2층에는 고급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이 있다. 지하1층에는 식료품을 판매하는 대형매장이 있다.

o 까르진까 슈퍼마켓(Korzinka Supermarket)
- 위치: 한국관 뒤, 쭘마가진 근처, 알라이스키 바자르 근처 등
- 시간: 연중무휴, 08:00~23:00(연중무휴)
- 최근에 타슈켄트 여러 지역에 오픈을 한 대형 슈퍼마켓이다. 식료품, 잡화 등 거의 모든 품목을 판매하고있다.

o 아르두스(Ardus Supermarket)
- 위치: 브로드웨이 내 위치.
- 시간: 월-토 10:00 - 20:00, 일요일은 휴무
- 우즈벡과 독일 합작회사로 다양한 식료품과 시계, 옷, 생필품 등을 구비하고 있다. 알라이스키 바자르 옆에도 있다.

o 미라받(MIROBOD)
- 위치: 카스마나프타 지하철 역 앞
- 시간: 연중 무휴, 09:00 - 21:00
- 미르와 아르두스에 있는 모든 상품들을 진열하고 있다. 세탁소, 사진관, 환전소도 있다.

o 우즈베김(Uzbegim)
- 위치: 한국 대사관 옆 각종 생필품 및 소시지, 유제품 판매. 러시아 물건이 많다.

o 나보이 전자상가(Navoy Market)
- 위치: 나보이 거리를 따라 약 2킬로미터 정도 줄지어 있으며 거의 모든 종류의 전자제품을 취급한다. 한국의 용산 전자상가를 연상하게 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영세한 편이다. 각 가게마다 비슷한 제품을 진열하고 있으나 가격 흥정이 가능하고 가격차는 심한 경우 2배까지 날 수도 있다.

3) 기념품, 특산물 등

기념품으로는 우즈벡 특유의 문양을 넣은 접시와 이슬람 풍의 인형 등이 있으나 포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산물로는 상황버섯, 석류 생즙, 천연 꿀 등이 있으며 러시아에서 수입되지만 차가 버섯, 녹용 등도 있다. 상황버섯의 경우 국내에 반입할 경우 1-2킬로그램 이내에서 허용되는 편이다.

7.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전시회	날짜	홈페이지
UZ BUILD 2011 제12회 국제 건축자재 전시회	03. 15 - 03. 18	www.uzbuild.uz
Worldfood Uzbekistan 2011 제11회 국제 식음료품 전시회	03. 29 - 03. 31	www.worldfood.uz
Aptekaexpo 2011 제6회 국제 의약품 전시회	04. 27 - 04. 30	www.parmacy.tihe.uz
OGU 2011 제15회 국제 석유가스 전시회	05. 17 - 05. 19	www.oilgas.uz
PROMUPAK UZBEKISTAN 2011 국제 건설·중장비 전시회	06. 07 - 06. 09	www.promupak.ite-uzbekista.uz
MiningWorld Uzbekistan 2011 제6회 국제 광물자원 전시회	10. 05 - 10. 07	www.nining.uz
Trans Uzbekistan 2011 제8회 국제 운송 전시회	11. 02 - 11. 04	www.trasn.ite-uzbekistan.uz
Auto&Pasrts Uzbekistan 2011 제7회 국제 자동차 부품 전시회	11. 02 - 11. 04	www.autoparts.ite-uzbekistan.uz
CAIPS 2011 제5회 국제 보안 및 안전장치 전시회	11. 02 - 11. 04	www.caips.ite-uzbekistan.uz

Textile Expo Uzbekistan 2011 제8회 섬유 및 의류 전시회	11. 16 - 11. 18	www.textileexpo.uz
Plastex Uzbekistan 2011 제2회 플라스틱 제품 전시회	11. 16 - 11. 18	www.plastex.ite-uzbekistan.uz
chemie Uzbekistna 2011 제5회 화학가공품 전시회	11. 16 - 11. 18	www.chemplast.ite-uzbkekistan.uz

8. 유관기관 웹사이트

투자관련 현지정보 취득관련 기관	웹사이트
Uzinfoinvestment Agency(대외경제부소속 투자유치청)	www.uzinfoinvest.uz
The Central Bank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중앙은행)	www.cbu.uz
Tashkent city administration(타슈켄트시청)	www.tashkent.uz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상공회의소)	www.chamber.uz
Agency on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정보통신청)	www.aci.uz
State Committee on Geology and Mineral Resources of Uzbekistan (지질위원회)	www.uzgeolcom.uz
투자진출 지원 컨설팅 기관	**웹사이트**
PricewaterhouseCoopers	www.pwc.com
Deloitte&Touch LLC	www.deloitte.uz
Donaev Management Consulting	www.donaev.uz
Council	www.advocate.uz
Tolegro	www.tolegro.uz